

연구보고서 2024-01

인구고령화 시대 범죄 특성과 사회정책 대응방안 모색

- 고령 피해자를 중심으로

황남희

변재욱·박소은·최경덕·임준경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변재욱	순천대학교 교수
	박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경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준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01

인구고령화 시대 범죄 특성과 사회정책 대응방안 모색 - 고령 피해자를 중심으로

발행일 2024년 1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ISBN 978-89-6827-998-0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4.01>

발|간|사

2000년 고령화사회(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 7.2%)에 진입한 한국은 이어 2018년에 고령사회(14.3%)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 초고령사회(20.6%)가 될 예정이다. 이러한 인구고령화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범죄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범죄피해자의 연령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고령자는 과거와 달리 은퇴하지 않고 더 늦은 나이까지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범죄피해에 대한 노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고령자의 투자사기, 금전취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간 학대와 자기방임 등도 최근 확대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기대수명 연장은 인지기능의 약화로 인한 사기범죄 피해, 신체기능의 약화로 인한 폭력범죄 피해 등 범죄 노출기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이 클 뿐만 아니라 회복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식 범죄피해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최근 10년 간(2011~2020년) 범죄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의 범죄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범죄피해자에서 고령층의 구성비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 범죄피해자의 증가는 청·중년 범죄피해자의 감소와 비교하여 눈에 거볼 지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보고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최근 고령층 범죄피해의 특성을 양적 분석한 후 고령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제도 현황 분석과 질적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사회정책 관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령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황남희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본원의 박소은 부연구위원, 최경덕 부연구위원, 임준경 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으며, 순천대학교 변재욱 교수가 외부 필진으로 집필에 참여하였다.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유익한 의견을 주신 김세진 부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남희 연구위원, 그리고 익명의 평가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2024년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	21
제1절 인구고령화와 범죄	23
제2절 범죄피해와 고령자	33
제3절 소결	51
제3장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에 관한 양적 분석	55
제1절 양적 분석 개요	57
제2절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추이: 범죄 대분류 기준	65
제3절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징: 주요 범죄 기준	90
제4절 고령자 범죄피해 순위	120
제5절 소결	126
제4장 범죄피해 보호 지원 제도 현황	129
제1절 법적 근거 및 제도 개관	131
제2절 지원 제도별 보호 지원 내용	138
제3절 통합지원체계 및 이슈별 범죄피해 지원	154

제4절 소결	172
제5장 고령자 범죄피해 보호 지원 문제와 개선에 관한 질적 분석	175
제1절 질적 분석 개요	177
제2절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180
제3절 범죄피해 지원 전반의 문제와 개선	194
제4절 서비스 연계 등의 문제와 개선	206
제5절 소결	223
제6장 결론	22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27
제2절 정책 대응방안	235
참고문헌	253
부 록	261
[부록 1] 심층면접조사표	261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재산범죄 피해자 비율(2012~2020년)	11
〈표 1-2〉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13
〈표 2-1〉 한국의 인구고령화 현황	24
〈표 2-2〉 OECD 가입국의 인구고령화 현황	25
〈표 2-3〉 한국 고령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 현황	26
〈표 2-4〉 독거노인 가구 비율 현황	27
〈표 2-5〉 노인인구 소득분배지표 현황	28
〈표 2-6〉 노인인구의 연령별 신체적 및 인지적 건강 현황	29
〈표 2-7〉 노인인구 범죄피해 현황(2001~2020년)	30
〈표 2-8〉 성별 및 연령집단별 범죄피해 두려움(2013~2021년)	32
〈표 2-9〉 피해자 유형과 고령자	41
〈표 2-10〉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2018~2022년)	50
〈표 2-11〉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2018~2021년)	51
〈표 3-1〉 범죄 유형별 발생비의 기간별 수치	64
〈표 3-2〉 전체 범죄 연령별 피해자 인원(2000~2021년)	65
〈표 3-3〉 일반범죄 연령별 피해자 인원(2000~2021년)	74
〈표 3-4〉 행정범죄 연령별 피해자 인원(2000~2021년)	82
〈표 3-5〉 재산범죄 연령별 피해자 인원(2000~2021년)	91
〈표 3-6〉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102
〈표 3-7〉 강력(흉악)범죄 연령별 피해자 인원(2000~2021년)	103
〈표 3-8〉 강력(폭력)범죄 연령별 피해자 인원(2002~2021년)	112
〈표 3-9〉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중분류 순위(2021년 기준)	121
〈표 3-10〉 남자의 연령별 범죄피해 소분류 1~15위(2021년 기준)	123
〈표 3-11〉 여자의 연령별 범죄피해 소분류 1~15위(2021년 기준)	124
〈표 4-1〉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기관	134
〈표 4-2〉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및 보호 수단 지원 건수	141
〈표 4-3〉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의 지원 정보	143



〈표 4-4〉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144
〈표 4-5〉 진술조력인 지원 절차 안내	145
〈표 4-6〉 경제적 지원 제도의 지원 범위	147
〈표 4-7〉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의 지원 내용	148
〈표 4-8〉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 실적(2019~2021년)	149
〈표 4-9〉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22년 기준) ...	153
〈표 4-10〉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161
〈표 5-1〉 개인심층면접 주요 내용	179
〈표 5-2〉 개인심층면접 조사 참여자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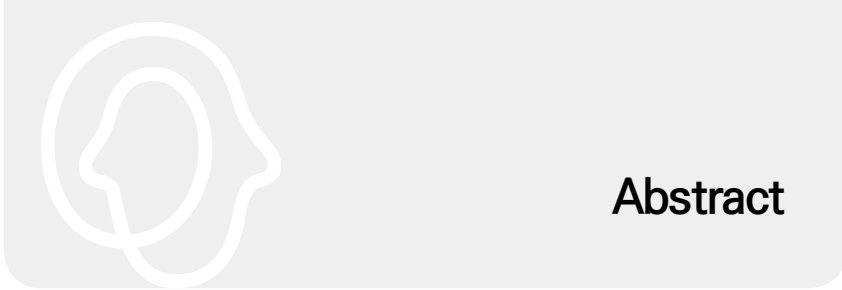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1] 범죄피해자의 연령 분포 추이(2011~2020년)	10
[그림 1-2] 연구 구성 및 내용	19
[그림 2-1] 성별 및 연령별 사회 안전 인식	31
[그림 2-2] 고령자 학대 피해 경험률 추이(2017~2021년)	49
[그림 3-1] 대검찰청 범죄분석 기준 범죄 유형	60
[그림 3-2]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현황: 전체 범죄	67
[그림 3-3]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전체 범죄	69
[그림 3-4] 성별 고령 범죄피해자: 전체 범죄	70
[그림 3-5]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자 규모: 전체 범죄	71
[그림 3-6]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전체 범죄	73
[그림 3-7]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현황: 일반범죄	76
[그림 3-8]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일반범죄	77
[그림 3-9] 성별 고령 범죄피해자: 일반범죄	78
[그림 3-10]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현황: 일반범죄	79
[그림 3-11]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일반범죄	81
[그림 3-12]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현황: 행정범죄	84
[그림 3-13]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행정범죄	85
[그림 3-14] 성별 고령 범죄피해자: 행정범죄	86
[그림 3-15]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현황: 행정범죄	87
[그림 3-16]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행정범죄	89
[그림 3-17]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현황: 재산범죄	92
[그림 3-18]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재산범죄	93
[그림 3-19] 성별 고령 범죄피해자: 재산범죄	94
[그림 3-20]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현황: 재산범죄	95
[그림 3-21]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재산범죄	97
[그림 3-22] 재산범죄의 하위유형이 차지하는 비중	98
[그림 3-23] 재산범죄 하위분류 고령 범죄피해 비율	99

[그림 3-24]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현황: 사기, 횡령, 배임	100
[그림 3-25]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사기·횡령·배임	101
[그림 3-26] 연령별 범죄피해 현황: 강력(흉악)범죄	105
[그림 3-27] 성별 고령 범죄피해자: 강력(흉악)범죄	106
[그림 3-28] 성별 및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현황: 강력(흉악)범죄	108
[그림 3-29]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강력(흉악)범죄	109
[그림 3-30] 강력(흉악)범죄 하위분류 고령자의 범죄피해 비율	111
[그림 3-31]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현황: 강력(폭력)범죄	113
[그림 3-32]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강력(폭력)범죄	115
[그림 3-33] 성별 고령 범죄피해자: 강력(폭력)범죄	116
[그림 3-34]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현황: 강력(폭력)범죄	117
[그림 3-35]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강력(폭력)범죄	119
[그림 4-1] 헌법의 범죄피해자 권리 규정	131
[그림 4-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연혁	132
[그림 4-3]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종류	134
[그림 4-4] 형사소송절차와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137
[그림 4-5]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의 지원 정보 범위	142
[그림 4-6]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의 이용 절차 및 지원 내용	149
[그림 4-7]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체계	155
[그림 4-8]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	156
[그림 4-9]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진행절차	164
[그림 4-10]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168



Abstract

Support and Protection for Elderly Crime Victims in Aging Korea: Policy Implications

Project Head: Hwang, Namhui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 elderly crime victims in an aging Korea and explores ways to improve support and protection for elderly crime victims.

According to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s *Statistical Analysis on Crime*, an official crime database, the proportion of those aged 50 and older among all crime victim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for both men and women over the past 20 years. For both men and women over the age of 40, property crimes such as fraud, theft, damage, and embezzlement, as well as violent crimes such as assault and injury, topped the 2021 list of frequent crimes. Crime victims aged over 61 were more often victims of residential burglary than those younger. Sexual assault was also high on the list of frequent crimes for women aged over 61.

The current legal basis and system for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in Korea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elderly as a group with a wide age range and diverse characteristics. The system of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as it stands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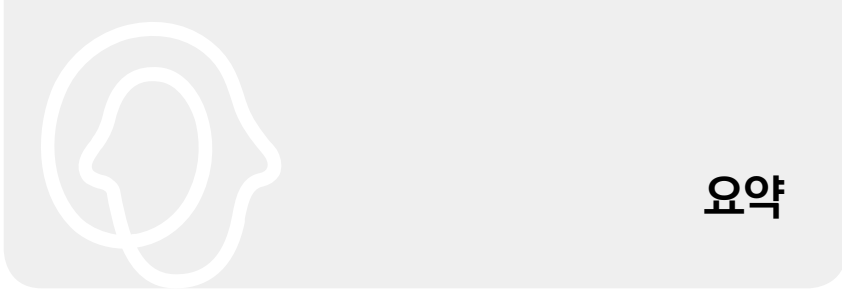
2 인구고령화 시대 범죄 특성과 사회정책 대응방안 모색-고령피해자를 중심으로

focused mostly on victims of violent crime, or, from a demographic perspective, on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abuse against women, childr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analysis of 19 interviewees from agencies involved in the support and protection of elderly crime victim. The results showed that age-related decline in physical and cognitive functioning not only increases the likelihood of victimization but also creates difficulties in accessing protection support after victimiz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 policy responses for older victims of crime.

Key words: Crime victimization, Crime victim protection, Elder abuse, Voice phishing, Population Aging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 고령화사회(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 7.2%)에 진입한 한국은 이어 2018년에 고령사회(14.3%)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 초고령사회(20.6%)가 될 예정이다. 이러한 인구고령화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범죄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범죄피해자의 연령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최근 고령층 범죄피해의 특성을 분석한 후 고령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사회정책 관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령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결과

선행연구에서는 범죄피해 요인에 대해 잠재적 범죄가해자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개인과 가구의 특성에 주목하는 미시적 접근이 대부분이며, 범죄를 유발하거나 억제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는 거시적 접근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범죄피해 취약성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고령자의 신체적, 정서적 취약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성용은, 2018; 박강우, 2017; 이승현 외, 2017). 그러나 고령자의 범죄피해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고, 범죄피해율을 설명하는 요소인 범죄 대상의 매력성 등이 낮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범죄피해 취약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고령자의 낮은 수준의

사회활동과 긴 자택 거주 시간, 단축된 사회관계 속에 범죄자와의 낮은 밀접성, 인신범죄 중 강간범죄의 경우 젊은 여성에 비해 낮은 매력도 등으로 이를 설명한다(박강우, 2017). 그러나 무엇보다 고령층의 범죄피해에 관한 국내의 양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현세대 노인보다 경제상태와 건강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윤경 외, 2020), 또 고령층은 청장년층보다 범죄로 인해 받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는 점(Gay & Thomas, 1975; 박강우, 2017에서 재인용) 등에서 향후 고령자의 범죄 대상으로서의 매력성과 취약성이 확대될 것이 분명하므로, 고령자의 범죄피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 범죄 관련 공식 통계자료인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2000~2021년을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형법상의 범죄인 일반범죄에서 전체 피해자 중 50대와 61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남녀 모두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일반범죄의 하위범주 중 경제적 동기 범죄인 재산범죄 역시 50대와 61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 비율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성별로 보면 특히, 여성 고령자의 피해 비율 증가세가 남성 고령자에 비해 뚜렷했다. 강력(흉악)범죄 및 강력(폭력)범죄에서도 고령층의 피해 비율은 증가세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44개의 범죄피해 소분류를 기준으로 성별 및 연령별 1~15위를 살펴본 결과, 40대 이상 범죄피해자의 경우 성별 및 연령에 상관없이 사기, 절도, 손괴, 횡령 등의 재산범죄의 피해 순위가 높았으며, 폭행, 상해 등의 강력(폭력)범죄 역시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고령자는 성별에 상관없이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다른 연령대에서 1~15위 순위에 없는 실

화(과실범죄) 유형이 있었다. 61세 고령자 중에서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 성폭력(강력홍악범죄)이 11위라는 점에서 여성 고령자 역시 성폭력의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고령자의 범죄피해 상위 순위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령자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기범죄, 폭행·상해·협박 등 강력(폭력)범죄와 관련 있는 학대와 함께 주거침입, 성폭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 보호 지원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령 범죄피해자를 배려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범죄피해 보호 지원 제도는 범죄 유형별로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여성과 아동,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학대에 대응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고령자 보호 및 범죄피해 보호 지원 기관 종사자 19명을 대상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 고령층의 신체적, 정서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범죄피해자 중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신고에 대한 거부감,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 민사에 저촉되는 피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범죄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고령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령자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낮은 범죄피해 신고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범죄 유형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강력(홍악)범죄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는데, 고령자가 가장 많이 당하는 범죄피해는 문헌검토 및 양적 접근 결과와 같이 재산상의 사기범죄(보이스피싱 등)와 함께 학대 피해로 확인되었다. 보이스피싱과 학대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고, 범죄의 양상과 피해 수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슈별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노화에 따른 신체·인지 기능의 약화는 고령층의 범죄피해 가능성 자체를 높이기도 하지만, 범죄피해 이후 보호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령층의 어려움을 보완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전반적인 고령 범죄피해자 대상 정책 대응방안과 이슈별 정책 대응방안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전반적 고령 범죄피해 대응방안은 ‘효과적인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관련 법제 정비, 종사자 대상 고령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보편적 교육 제공, 법률·심리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고령층 주거 개선 지원, 사회복지정책 연계 고령자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고령 범죄피해 관련 체계적인 통계 생산 및 관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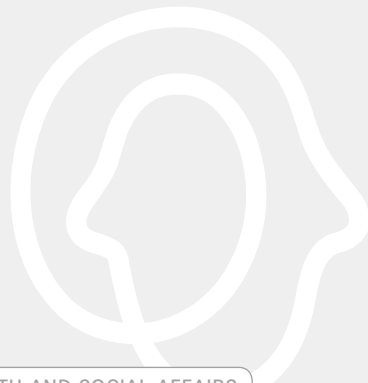
이슈별 범죄피해 대응방안 중 노인학대 관련 방안은 ‘범죄피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쉼터 서비스의 다양화, 노인학대 행위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정비, 요양병원의 시설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가족센터의 역할 확대를 통한 노인학대 예방 가족 프로그램 제공, 노인학대처벌 특별법 도입을 통한 처벌 규정 강화’이다. 보이스피싱 관련 방안은 ‘피싱 사기에 대한 고령층의 인식 전환을 통한 신고율 제고, 디지털 환경 노출에 따른 다양한 피싱 유형에 대한 신속한 대응, 보이스피싱 예방사업의 고령친화성 제고, 사기범죄의 처벌 강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예방’이다.

주요 용어: 범죄피해, 보호 지원, 노인학대, 보이스피싱, 인구고령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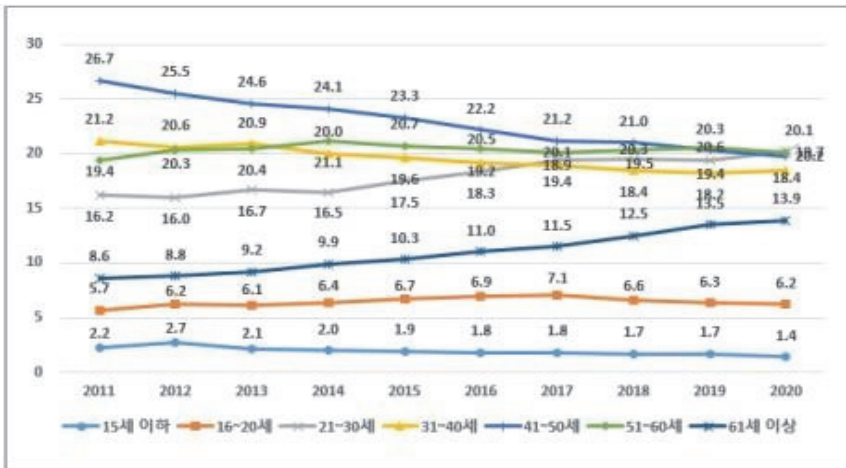
2000년 고령화사회(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 7.2%)에 진입한 한국은 이어 2018년에 고령사회(14.3%)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 초고령사회(20.3%)가 될 예정이다(통계청, 2023a). 이러한 인구고령화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범죄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범죄피해자의 연령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고령자는 과거와 달리 은퇴하지 않고 늦은 나이까지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범죄피해에 대한 노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고령자의 투자사기, 금전취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대검찰청, 2023), 코로나19 이후 노인학대도 확대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3). 또한 고령자의 기대수명 연장은 인지기능의 약화로 인한 사기 범죄 피해, 신체기능의 약화로 인한 폭력범죄 피해 등 범죄 노출기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이 클 뿐만 아니라 회복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법무부 인권구조과, 2021, p.45). 최근 한국보다 고령화가 진전된 일본에서 가족의 노인 간병 스트레스로 간병살인 등 강력(흉악)범죄에서 고령인구가 위협에 새롭게 노출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이에 대한 사전적 대응이 요구된다(정열, 2022.1.20.).

공식 범죄피해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최근 10년간(2011~2020년) 범죄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 범죄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범죄피해자에서 60대 이상의 구성비는 최근 크게 증가하였다. 고령 범죄피해자의 증가는 청·중년(30~40대) 범죄피해자의 감소와 비교하여 눈여겨볼 지점이다.

[그림 1-1] 범죄피해자의 연령 분포 추이(2011~2020년)



자료: 윤정숙 외(2022, p.41)

범죄학자들은 21세기 범죄의 중심에는 재산범죄의 세부 분류 중 하나인 사기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김병완, 2021; 박형민·김연수·유효은, 2019), 만 14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20년 재산범죄 피해자 수는 숨은 범죄를 포함하여 1,300,565명으로 추정되며 재산범죄 피해자율은

2020년 2.83%이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0).

최근 약 10년간 재산범죄의 연령별 피해자 경향성을 살펴보면, 2012년과 2014년은 30대~50대의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뚜렷하게 높았던 반면, 2016년부터는 차이가 매우 작거나 역전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표 1-1〉). 2020년 자료를 보면 50대가 24.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 21.50%, 60대 이상 20.73% 순이다. 1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재산범죄 피해 비율도 높아진다. 60대 이상의 재산범죄 피해 비율은 40~50대에 비해 낮지만, 20~30대보다 높다.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전체 재산범죄 피해자 중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각 연도).

〈표 1-1〉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재산범죄 피해자 비율(2012~2020년)

(단위: %)

연령	연도				
	2012	2014	2016	2018	2020
10대 (14~19)	8.40	3.61	3.31	4.46	5.00
20대 (20~29)	12.34	15.29	8.25	18.54	13.66
30대 (30~39)	26.68	18.96	21.25	21.23	14.68
40대 (40~49)	20.47	23.96	20.12	18.82	21.50
50대 (50~59)	18.87	22.59	27.64	17.18	24.42
60대 이상	13.25	16.19	19.42	19.77	20.73

주: 재산범죄의 범죄피해자 수 및 범죄피해자율은 기초조사표 응답 결과에 기초함 (사건조사표 작성 거절 포함)

자료: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이와 같이 인구고령화는 고령인구 수를 늘리며 고령 범죄피해자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 고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지 않고 특히 피해자에 초점을 둔 논의는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고령 범죄피해자에 초점을 둔 사회적 관심이나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 고령 범죄피해자들은 피해자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하고 기존의 전형적인 복지 대상으로 소득보장이나 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자 범죄자에 대한 연구는 범죄경력, 교통사고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나(박형민 외, 2019; 최수형·박미랑, 2021) 고령 범죄피해자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고령자 범죄 연구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심 부족,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 범죄피해율-특히 낮은 고령자 대상 강력범죄 피해 비중-등을 들 수 있다(박강우, 2017). 그럼에도 이승현·권수진·김재현·이정주·이인상(2017)은 고령자 범죄피해 및 가해에 대해 다학제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체계적인 범죄피해 및 가해의 예방·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승현 외, 2017, pp.3-4).

최근 정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서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포함하고 있으나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 범죄의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은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범죄피해자 중심으로 원스톱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법률구조기구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우선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대한민국정부, 2022, p.112).¹⁾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22~2026년)에서는 심리지원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 해소 및 방식 다양화, 자립·자활지원의 활성화, 피해자 특성 및 피해 유형별 맞춤

1) 이외에도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형 지원을 세부 추진과제에 포함하였고,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정책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법무부 인권구조과, 2021, pp.43-47).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의료복지 소외 지역의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확보 방안 마련,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전문화이다. 자립·자활 지원 방안 마련, 피해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대상 확대를 포함한다. 또한 살인범죄 피해 유가족을 위한 피해회복 지원 강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즉 인구고령화 시대 고령자에 대한 특화된 보호 지원은 노인학대 영역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 1-2〉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구분	내용
주거 지원	범죄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우선 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경제적 지원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
형사절차 참여보장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 요청 시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정보제공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제도
신변보호	신변보호조치; 이전비(이사 실비) 및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지원
범죄피해 구조금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형사조정	재산범죄사건 등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윤정숙 외(2022, p.361)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 배경에 따라 인구고령화 시대 고령자의 범죄 등에 따른 보호 피해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고령화는 고령인구의 절대적인 수를 증가시켜 고령 범죄피해자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고령의 범죄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사회정책적 개입의 지점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사회는 취약노인의 증가와 함께 부유한 노인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고령자의 범죄 취약성이나 범죄 대상의 매력성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의학의 발전과 영양상태의 개선 등으로 길어진 노년기는 건강수명의 연장을 담보하지 못하기에 인지 기능 저하 또는 치매노인의 수를 증가시키며 범죄피해의 취약성을 높인다. 또한 성별 기대여명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지만,²⁾ ‘남성 연상-여자 연하’의 고령부부 가구는 남성 배우자와의 사별 후 여성 독거가구로 가구형태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때 범죄피해에 취약할 여지가 크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단계적으로 고령인구에 편입되면서 고령집단 내 이질성이 커지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부터 그 이전 세대가 후기노인 노인이 되면, 취약노인의 절대 수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하며 부동산 투자의 혜택을 본 베이비붐 세대 등 젊은 고령인구는 기존 고령인구에 비해 부유한 인구의 수도 많다는 점에서 범죄 대상으로서 매력성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개인화된 가치관과 빠른 정보화, 사회의 복잡성 증가 등으로 인해 고령자가 현대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범죄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화로 자녀를 사

2) 출생 시 기대여명은 여성 85.6세로 남성 79.9세보다 약 6세 높다(통계청, 2024).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6&conn_path=I2에서 2024.1.15.인출)

칭하여 고령자의 금품을 갈취하던 보이스피싱은 더욱 지능화되어 정보취약층인 고령자가 문자메시지의 URL이나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금융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화와 사회의 복잡성은 기술의 발달로 더욱 급속하게 진전될 것이며, 생애주기상 새로운 기술과 정보 습득의 취약성이 있는 고령자는 범죄피해 취약성을 높일 수 있는 지점이다.

넷째, 현재 노인학대에 집중된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관심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법 개정 등으로 의료인 및 돌봄 종사자, 사회복지사 등의 노인학대 신고가 의무화되고 공식적으로 노인학대 통계가 관리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여전히 아동학대에 비해 노인학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낮은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용시설에서 보이스피싱을 호소하는 고령층의 상담이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 역시 보이스피싱은 강력범죄가 아니기에 피해 지원을 하기 어렵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최근 고령 범죄피해의 특성을 분석한 후 고령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제도의 개선 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사회정책 관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령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자는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귀결되는 전반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가해자의 대상으로서 그의 행위로부터 나타난 손실 또는 피해가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범

죄가해자와의 관련, 관계 등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정주호, 2020, p.15). 따라서 이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범죄 발생 추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 후 범죄피해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이후 범죄피해자 대상 범죄 유형 등의 변화 추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한 후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에 초점을 두고 범죄 특성과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 중 고령자에 주목하여, 사회보장정책적 관점에서 보호 지원 수준을 검토하고 고령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 지점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기존 연구는 주로 전 국민 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양적조사나 현상 파악 등에 머물러 있으며 범죄피해 정책 대상을 세분화한 경우 여성, 아동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령자는 연구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한 경향이 있다(박형민·최수형·김남희·이선형·조제성, 2021; 윤정숙 외, 2022). 다만 최근 들어 고령자의 경우 가해자로서 범죄경력 등에 대한 질적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박형민 외, 20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범죄 특성 변화를 분석한다. 2000년대 이후 범죄 발생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고령자 대상 범죄 현황 및 범죄피해자 특성을 선행연구와 양적 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중 최근 이슈가 되는 범죄피해로 노인학대와 보이스피싱

을 선정하여 피해 발생 현황과 보호 지원 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회정책 현황을 파악한다. 사회정책의 범위는 경찰청, 법무부·대검찰청(스마일센터)의 보호 지원 현황과 함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연계 지원하는 범죄피해자 전반의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서 고령 범죄피해자 대상의 특화된 서비스 지원이 있는지를 파악하며, 피해 지원 관련 업무종사자를 심층면접조사하여 고령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과정에서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셋째, 고령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사회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범죄피해 경향과 고령인구 특성을 반영하여, 피해 보호 지원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범죄 발생 이전에 사전예방적 차원의 정책적 개입을 포함한다.

한편 이 연구는 고령자에 대한 용어, 연령 범위, 범죄 개념, 고령 범죄피해자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먼저, 고령자에 대한 용어는 노인, 노년, 어르신 등과 함께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어르신 등의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지만, 인구고령화 시대 전통적인 노인이라는 용어보다 고령자라는 용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통계청과 고용노동부는 행정 통계 및 자료에서 고령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연령 범위는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에 맞춰 다양하게 적용한다. 연구진은 다양한 문헌과 행정자료, 통계 등을 활용하는데, 이들 자료들에서는 정책적, 학문적 이유에 따라 고령자나 노인의 연령 범위를 65세 이상이나 60세 이상, 55세 이상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다.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직접 규정하지 않지만 이 법의 복지 대상은 대부분 65세 이상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담당하는 고용노

동부는 노인 대신 ‘고령자’로 부르며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범죄의 개념은 우리나라 형법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들에 대해서만 다룬다. 그 이유는 넓은 의미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 반사회적인 행위’는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정책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범죄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제2장 제2절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고령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범죄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고령자로 한정하며, 범죄피해를 입은 가족으로서 고령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그 이유는 범죄피해 가족으로 고령자 보호 지원은 이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를 폭넓게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기존 문헌고찰 및 연구세미나 개최, 양적 및 질적 분석,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기존 문헌고찰은 학술지, 행정자료, 사업지침, 기사, 웹자료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선행연구자의 발표세미나를 통해 연구 및 정책 쟁점 등을 파악한다.

양적 분석은 범죄피해 관련 대표적인 자료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DB를 이용하여 최근 20년간 범죄피해 현황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본다. 또한 연령과 성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고령층의 범죄피해 특성을 포착한다.

질적 분석은 전문조사업체와 협력하여 범죄피해 지원 제도의 서비스 제공자 19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병행의 1 대 1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질적 분석에서는 범죄 유형별 혹은 지

역 단위의 범죄피해 보호 지원이 제공되는 체계에 맞춰 관련 기관의 면접 대상자를 모집하고, 고령 범죄피해의 특성 및 정책 개선 필요성,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청취한다.

전문가 자문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 수시 자문을 통해 범죄 현황과 변화를 파악한다. 전반적인 범죄 현황 및 고령자 관련 범죄피해 특성에 대한 자문, 양적 및 질적 분석의 해석과 정책 도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반적인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상 이 연구의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은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연구 구성 및 내용

서론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내용 소개	
	연구 내용	연구 자료(방법)
문헌검토	- 인구고령화 현황과 범죄 - 범죄피해와 고령자 - 이슈별 범죄피해 현황: 학대, 보이스피싱	행정자료, 통계연보, 학술연구지 및 보고서, 홈페이지 자료 등
양적 분석	- 범죄 발생 추이 - 전반적인 범죄피해 현황 - 연령별 범죄피해 변화 추이 - 고령자의 성별 범죄피해 특성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
정책 분석	- 범죄피해 보호 지원 제도 - 이슈별 범죄피해 대응: 학대, 보이스피싱	행정자료, 보고서, 홈페이지 자료 등
질적 분석	-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 고령자 범죄피해 보호 지원 문제점 - 고령자 범죄피해 보호 지원 개선사항	종사자 대상 온·오프 개인 심층면접조사
결론	고령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도출	

자료: 연구진 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

제1절 인구고령화와 범죄

제2절 범죄피해와 고령자

제3절 소결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

제1절 인구고령화와 범죄

1. 한국의 인구고령화 현황

한국은 출산율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겪고 있다. 2000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를 기록하여 고령화사회³⁾로 진입하였으며, 이후 고령화 추세는 고착화되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5.7%를 기록하였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를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는 2000년 34.3에서 2020년 129.3으로 약 4배 상승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33.1세에서 42.7세로 약 10세 상승하였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표 2-1>과 같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70년 3,766만 명으로 감소하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815만 명에서 1,747만 명으로 증가하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6.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24 인구고령화 시대 범죄 특성과 사회정책 대응방안 모색-고령피해자를 중심으로

〈표 2-1〉 한국의 인구고령화 현황

(단위: 만 명, %, 세)

연도	총인구(A)	65세 이상 인구(B)	65세 이상 인구 비율(A/B)	노령화 지수 ¹⁾	평균 연령
2000	4,701	339	7.2	34.3	33.1
2005	4,818	432	9.0	46.8	35.5
2010	4,955	537	10.8	67.2	37.9
2015	5,101	654	12.8	93.0	40.2
2020	5,184	815	15.7	129.3	42.7
2030	5,120	1,306	25.5	301.6	48.1
2040	5,019	1,724	34.4	389.5	51.9
2050	4,736	1,900	40.1	456.2	54.8
2060	4,262	1,868	43.8	570.6	56.7
2070	3,766	1,747	46.4	620.6	57.5

주: 1) [고령인구(65세 이상)/유소년인구(0~14세)]×100
2) 2021년 12월 공표된 자료로 2000~2020년은 확정인구, 2021년부터는 잠정인구임
3) 인구변동 요인별(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중위가정은 조합한 중위추계임
자료: 통계청(2023a).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onn_path=I2에서 2023.8.3. 인출

이러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가입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수준이다. 〈표 2-2〉에 제시된 OECD 가입국 중 2000년부터 2020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상승폭이 한국보다 큰 국가는 일본(11.2%p)이 유일하며, 상승률 기준으로는 한국이 118.1%로 가장 높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고령인구는 4.5%p 증가했고, 증가율은 35.2%로 각각 한국 대비 1/2,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국의 인구고령화 정도가 서로 상이하므로 〈표 2-2〉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표 2-2〉 OECD 가입국의 인구고령화 현황

(단위: %, %p)

국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				국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00년 (A)	2020년 (B)	증감			2000년 (A)	2020년 (B)	증감	
			규모 (C=B-A)	비율 (C/A)				규모 (C=B-A)	비율 (C/A)
네덜란드	13.6	19.6	6.0	44.1	일본	17.4	28.6	11.2	64.4
독일	16.4	21.9	5.5	33.5	칠레	7.7	12.1	4.4	57.1
멕시코	5.0	7.6	2.6	52.0	캐나다	12.6	18.0	5.4	42.9
미국	12.4	16.4	4.0	32.3	콜롬비아	5.7	8.5	2.8	49.1
벨기에	16.8	19.3	2.5	14.9	포르투갈	16.2	22.3	6.1	37.7
스웨덴	17.3	20.1	2.8	16.2	폴란드	12.2	18.4	6.2	50.8
영국	15.8	18.6	2.8	17.7	프랑스	15.9	20.5	4.6	28.9
오스트리아	15.4	19.2	3.8	24.7	한국	7.2	15.7	8.5	118.1
이스라엘	9.8	12.1	2.3	23.5	호주	12.4	16.3	3.9	31.5
이탈리아	18.3	23.4	5.1	27.9	OECD 평균	12.8	17.3	4.5	35.2

주: OECD 가입국 중 절반을 임의로 선정하여 한글 자음 순으로 나열함
 자료: OECD(2023). Historical population. <https://stats.oecd.org/>에서 2023.8.3. 인출

한편 인구고령화 현상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집단 내의 인구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65~74세는 2000년 67.8%에서 2020년 57.1%로 약 10%p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65~74세는 2070년 33.8%로 2000년의 2분의 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75~84세는 2000~2020년 동안 27.0%에서 33.3%로 6.3%p 증가하였으나 향후 30%대의 구성비를 유지하며 2070년에는 35.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85세 이상 후기노인인구는 2000년 5.1%에서 2020년 9.6%로 구성비가 낮았으나, 향후 크게 증가하여 2050년 23.2%, 2070년 31.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3〉 한국 고령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 현황

(단위: %)

연도	65세 이상 전체				
		계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2000년	7.2	100.0	67.8	27.0	5.1
2010년	10.8	100.0	63.7	29.7	6.7
2020년	15.7	100.0	57.1	33.3	9.6
2030년	25.5	100.0	57.9	30.0	12.1
2040년	34.4	100.0	47.3	38.1	14.7
2050년	40.1	100.0	38.6	38.2	23.2
2060년	43.8	100.0	35.3	35.7	28.9
2070년	46.4	100.0	33.8	35.1	31.1

주: 1) [해당 연령/고령인구(65세 이상)]×100
2) 2021년 12월 공표된 자료로 2000~2020년은 확정인구, 2021년부터는 잠정인구임
3) 인구변동 요인별(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중위가정은 조합한 중위추계임
자료: 통계청. (2023a).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onn_path=I2에서 2023.8.3. 인출

2. 인구고령화 시대 고령층의 특성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인구고령화와 관련해서는 독거노인 가구 증가, 고령인구의 빈곤과 노인인구 집단 내 빈부격차, 후기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능상태 악화와 인지기능의 저하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독거노인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일반가구 수가 2000년 대비 46.3% 증가(1,431만 가구 → 2,093만 가구)하는 동안 65세 이상 1인 가구 수는 207.4% 증가(54만 가구 → 166만 가구)하여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2000년 3.8%에서 2020년 7.9%로 상승하였다. 독거노인 가구는 노인부부 가구, 자녀동거 가구 등에 비하여 경제문제, 건강문제, 소외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정경희, 2015), 충분한 사회적 관심 및

적절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표 2-4〉 독거노인 가구 비율 현황

(단위: 만 가구, %)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독거노인 가구(A)	54	78	107	122	166 (207.4)
전체 일반가구(B)	1,431	1,589	1,734	1,911	2,093 (46.3)
독거노인 가구 비율(A/B)	3.8	4.9	6.1	6.4	7.9 (107.9)

주: 괄호 안의 수는 2000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2023b), e-지방지표. <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index/index.do>
 에서 2023.8.3. 인출

인구고령화는 고령인구의 소득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공적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은 우리나라는 노인의 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1년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14.0%에서 2020년 10.6%로 하락하여 10%대 수준을 보인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같은 기간 46.5%에서 38.9%로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근로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의 약 4배 수준이다.

노인인구 내의 소득격차는 타 연령대 내의 소득격차에 비하여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팔마 비율 등 3가지 소득분배지표 모두 노인인구 내 소득격차가 근로연령인구 내 소득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따라서 노인인구의 소득빈곤 문제와 함께 노인인구의 소득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인구 내의 저소득 자뿐 아니라 고소득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집단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표 2-5〉 노인인구 소득분배지표 현황

구분		2011년		2015년		2020년	
		시장 소득 ¹⁾	처분가능 소득 ²⁾	시장 소득	처분가능 소득	시장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연령인구 (18~65세)	상대적 빈곤율 ³⁾	14.1	14.0	13.5	12.9	14.1	10.6
	지니계수 ⁴⁾	0.391	0.370	0.367	0.337	0.365	0.312
	소득 5분위 배율 ⁵⁾	8.48	7.19	7.56	6.09	7.55	5.19
	팔마(Palma) 비율 ⁶⁾	1.76	1.58	1.53	1.31	1.52	1.16
은퇴연령인구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57.8	47.8	57.8	44.3	60.2	40.4
	지니계수	0.560	0.460	0.564	0.427	0.554	0.376
	소득 5분위 배율	40.14	11.43	46.71	9.27	43.13	6.62
	팔마(Palma) 비율	5.18	2.58	5.63	2.15	5.18	1.62
노인인구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56.9	46.5	56.6	43.2	58.6	38.9
	지니계수	0.555	0.457	0.561	0.427	0.551	0.376
	소득 5분위 배율	38.21	11.35	45.06	9.35	41.46	6.67
	팔마(Palma) 비율	5.01	2.54	5.50	2.16	5.06	1.63

주: 1)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 사적 이전지출

2)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

3)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

4)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함

5)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6)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

7) 동 자료는 2011년 수치부터 제공됨

자료: 통계청(2023c).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01&conn_path=12에서 2023.8.3. 인출

인구고령화에 따른 후기노인인구의 증가는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수준이 나쁜 인구의 규모를 확대시킨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한 응답 비율의 경우 65~69세는 68.7%인 데 반해 80세 이상(80~84세 26.9%, 85세 이상 24.8%)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5~27%에 불과하다. 또한 노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비율은 65~69세의 경우 4.3%이나 80~84세는 21.8%, 85세 이상은 42.0%로 크게 증가한다. 기능제한자 비율은 노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신체적 기능상태(일상생활수행능력)나 집안일이나 돈 거래 등 수단적 기능상태(수단적 일상생

활수행능력)에서 제한이 있는지를 의미한다. 인지적 건강 측면에서는 65~69세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비율이 20.6%이나 85세 이상은 34.0%로 크게 증가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추정 치매유병률은 10.3%(약 84만 명)이며, 향후 인구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15.9%(약 30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중앙치매센터, 2022).

〈표 2-6〉 노인인구의 연령별 신체적 및 인지적 건강 현황

연도		(단위: %)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한 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보통	68.7	53.2	37.4	26.9	24.8
	(매우) 건강이 나쁜 편	23.4	32.4	37.2	35.2	30.3
기능제한자 비율 ¹⁾		7.9	14.4	25.4	37.9	44.9
인지기능저하자 비율 ²⁾		4.3	8.1	13.5	21.8	42.0
		20.6	25.7	28.0	27.8	34.0

주: 1)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또는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에서 제한이 있는 65세 이상 비율

2)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DS)의 총 30점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계산된 일정 점수 미만의 경우 치매의심의 인지저하자로 판정

자료: 이윤경 외(2020, p.263, p.326, p.329)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이와 같이 인구고령화 시대에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 노인인구의 소득 격차 확대, 후기노인의 증가와 이들의 낮은 건강수준은 범죄피해 발생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빈곤 노인의 일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혜자인데, 이 연구 진행결과 소득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생계 급여 갈취 등의 범죄피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고령 범죄피해는 경제수준과 상관없으며 오히려 범죄피해 대책 마련이 힘든 저소득 고령자에게서 발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에 따라 범죄의 대상이 노인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체

범죄 수 대비 피해자가 61세 이상인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2001년 2.3%에서 2020년 11.1%까지 상승하였다(표 2-7). 범죄피해와 노인인구에 관하여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표 2-7〉 노인인구 범죄피해 현황(2001~2020년)

(단위: 천 건, %)					
연도	2001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피해자 연령 61세 이상 범죄 수(A)	43	73	106	147	177
전체 범죄 수(B)	1,861	1,733	1,785	1,862	1,588
전체 범죄 대비 피해자 연령 61세 이상 범죄 비율(A/B)	2.3	4.2	5.9	7.9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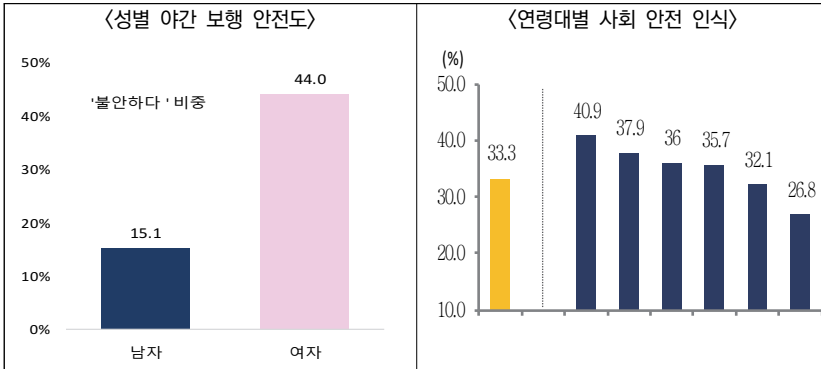
주: 동 자료는 2001년 수치부터 제공됨
자료: 통계청(2023d). 경찰청범죄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TX_132_2009_H1033&conn_path=I2에서 2023.8.3. 인출

3. 인구 특성과 사회 안전

인구 특성에 따라 범죄피해 등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자, 고령자는 신체적 및 인지적 특성에 의해 범죄피해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의 경우 여자(44.0%)가 남자(15.1%)에 비해 28.9%p 높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하다는 인식 역시 여자(24.4%)가 남자(19.0%)보다 5.4%p 높다(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2022.11.16.). 연령별로 살펴보면 야간 보행 안전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지만, 사회 안전 인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뚜렷하게 낮은 경향을 보인다(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2023.3.23.).

[그림 2-1] 성별 및 연령별 사회 안전 인식



자료: 1)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2022.11.16.), p.39.
 2)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2023.3.23.), p.6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격년으로 실시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는 성별 및 연령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인식에서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객관적인 범죄피해를 의미하지 않지만, 범죄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주관적인 심리 상태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개인의 일상활동이 위축되며 웰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을 기준으로 여자(23.1%)가 남자(5.5%)에 비해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17.6%p 높아서, 성별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 주요국과 비교하면 매우 흥미롭다. 한국은 객관적인 범죄피해율은 낮지만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또한 여성과 노인 등 위기 대처 능력이 취약한 계

층의 범죄피해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낮고, 35세 이하 청년층이 가장 높은 특징이 확인되었다. 범죄피해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짓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연령은 범죄피해 인식의 취약성이 아닐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었다(우선희, 2018, p.75). 우리나라 고령층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연령에 비해 낮은 것은 OECD의 주요 국가와 두드러진 차이인데 이는 전통적으로 노부모, 고령자, 연장자를 존중하는 유교문화가 고령층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김지영, 2023.6.2.)

〈표 2-8〉 성별 및 연령집단별 범죄피해 두려움(2013~2021년)

(단위: %)

연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전체		30.3	22.1	20.7	19.8	14.3
성	남성	12.1	9.8	7.2	8.1	5.5
	여성	48.6	34.3	33.7	31.4	23.1
연령집단	10대	39.0	28.4	29.1	28.2	18.4
	20대	37.6	25.1	26.6	23.0	17.4
	30대	34.9	25.4	22.5	22.3	14.9
	40대	27.8	20.4	18.7	18.2	13.8
	50대	28.9	20.6	17.2	17.3	11.9
	60대	21.3	18.6	15.9	18.4	12.1
	70대 이상	18.5	16.5	18.8	14.8	13.9

주: 1) 범죄피해 두려움은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매우) 두려운 편이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2) 성별 자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내부자료 분석결과임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각 연도; 국가지표체계(2023)에서 인출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인 인식을 토대로 한 것이며, 실제 범죄피해에서 고령자의 취약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절 범죄피해와 고령자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령인구의 증가, 후기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향후 인지기능 저하를 넘어선 치매유병률 증가가 예상되고 안전 인식 및 범죄피해에 대한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인식 차이가 확인되는 만큼 고령자와 범죄피해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문헌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1. 범죄피해와 요인

가. 범죄의 개념

범죄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 중 이를 처벌하기 위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2023).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으로 인해,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반사회적 행위는 지속적으로 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 추진과정에서 범죄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범죄는 시대의 트렌드를 따른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했는데, 사회 변화가 새로운 반사회적 행위를 만들고 이로 인한 피해가 표면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면 법에 규정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범죄는 시대별로 그 범위가 다르고 국가별로도 다를 수밖에 없다.

법학과 범죄학에서 범죄의 개념을 형식적 범죄와 실질적 범죄로 구분하는데, 형식적 범죄는 “형벌 법규에 의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만으로 제한적으로 범죄를 보는 시각이며, 실질적 범죄는 “형벌 법규를 떠나

서 인간의 행위 중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적으로 범죄를 보는 시각이다(네이버 지식백과, 2023). 그러나 실질적 범죄의 경우 범죄의 개념이 사법기관의 주관에 의해 결정·처벌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실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는 형식적 범죄의 개념을 따르며, 형벌 법규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피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현행 형법에서는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신앙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의 죄,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교통방해의 죄, 먹는 물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기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인장에 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 낙태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손괴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법무연수원의 2022년 범죄백서에서는 범죄를 강력(흉악)범죄, 강력(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마약류범죄, 경제범죄, 지식재산권범죄, 사이버범죄, 선거범죄, 명예범죄 등으로 구분하여 범죄 동향을 보고하고 있다(법무연수원, 2023).

한편 범죄 중에서는 사회적으로 주요하게 다루는 유형이 있다. 범죄는 크게 형법에 적용을 받는 범죄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구분되는데 전자를 (일반)범죄, 후자를 특별범죄라 한다. 여기서 형법의 적용을 받

는 범죄는 특별범죄와 구분하기 위해 일반범죄로 칭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범죄의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일반범죄에서는 일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이다. 강력범죄는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하며, 폭행·살인·방화·금품갈취(강도)·절도·성폭력 등이 해당된다(위키백과, 2023). 강력범죄는 경범죄에 반대되는 중범죄라는 의미이며, 이 중 살인·강간·강도·방화를 강력(흉악)범죄로 본다(나무위키, 2023).

나. 범죄피해⁴⁾

범죄의 피해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행 등의 강력범죄의 피해를 생각할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사기범죄의 일종인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 위험이 높을 수 있으며, 가정 내 노인학대의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히 고령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에 종사하는 현장 종사자와의 심층면접 과정에서 고령자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피해를 입더라도 보호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발생 장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는데,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뿐 아니라 요양시설, 더 나아가 요양병원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학대 피해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범죄피해에서 고령자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되기도 한다. 살인 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고인이 되었으므로 살인 범죄

4) 이 연구 수행 중 2023년 6월 2일에 개최한 연구세미나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지영 연구위원이 발표한 “노인의 범죄피해와 피해자지원에 관한 고찰”(김지영, 2023.6.2.)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가족이다. 그러나 강도, 강간, 방화 등 일반적인 강력범죄에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입게 되므로 고령자의 범죄피해는 고령자 자신의 범죄피해와 범죄피해자 가족으로서의 고령자라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제1장에서 밝힌 것처럼 범죄피해자로서 고령자만을 다루기에 가족으로서의 고령자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

강도범죄는 경제적 손실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고령 여성에 대한 강간범죄는 젊은 여성에 대한 강간범죄보다 더 드러나지 않는다. 방화는 강도, 강간보다 발생률이 낮고 살인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방화범죄의 피해는 주거지 소실과 화상흉터 후유증 등으로 남는다.

보이스피싱은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사기를 당했다는 정신적 피해 역시 발생하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령자의 경우 은퇴 이후 노동소득 창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적 손실의 충격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도 인정하기 어려운데, 자녀를 사칭하거나 거짓으로 자녀의 위험 상황을 설정하여 긴박하게 금품갈취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심리적 충격 역시 작지 않다.

노인학대는 아동과 비슷하게 보살핌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할 때 발생하지만, 아동과 달리 재정적 착취와 자기방임으로 인한 형태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큰 경제적 손실까지 입을 수 있다. 재정적 착취(financial exploitation)는 고령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호자나 후견인, 요양보호사, 의료인력들이 고령자를 대신하여 행동 능력을 부여하는 법적 문서로 위임장을 남용(power of attorney abuse)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 자기 방임(self-neglect)은 노인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안전이나 보호를 취

하지 않는 것이다(Daigle, 2022, pp.278-280).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첫째, 정신적 피해가 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이나 본인의 상해로 인해 불안, 우울, 언어장애, 수면장애, 기억력 상실, 자살 시도,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을까하는 추가 범행의 두려움, 가해자에 대한 분노 등도 피해자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두 번째 사회적 관계의 파괴이다. 범죄 발생 이후 피해자들은 기존에 살던 동네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가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를 알고 있는 경우 출소 후 집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과 끔찍한 기억이 있는 장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도 있으나 이웃으로부터 받는 2차 피해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고 싶어 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성폭력범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살인, 강도, 방화, 학대, 보이스피싱에서도 이웃들의 수군거림, 피해자 유발론의 담론에 포위되어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처럼 손가락질받는 상황이 펼쳐진다. 친척, 친구, 직장동료, 동창회, 친목회, 그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를 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사회적 관계가 파괴된다.

세 번째 신체적 피해이다. 강도, 방화, 폭행, 학대 등의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치료 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면 경미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체적 피해도 심리적 피해와 같이 범행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악화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강도상해를 당했는데 치료 과정에서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장애인이 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가 범죄 발생 직후에 나타나지 않아 치료 중 병사로 처리되기도 한다. 본인이나 가족의 영구적 손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입원비와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고 가족들은 환자를 돌보게 되면서 가장뿐

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직장을 잃게 되면서 가족 전체가 생계에 곤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얼굴과 손발 등에 화상흉터가 남아 우울감, 대인기피증, 자살 상념 등 정신장애를 겪기도 한다.

네 번째 경제적 피해는 정신적·신체적 피해와 맞물려 있다. 상해로 인한 장애, 정신과 치료비, 입원 및 통원 치료로 인한 병원비, 가장의 실업, 피해자 돌봄으로 인한 실업 등이 모두 경제적 피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김지영·박형민, 2009).

이러한 범죄피해를 당한 고령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이 클 뿐만 아니라 회복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거나 회복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법무부 인권구조과, 2021, p.45).

다. 범죄피해 요인⁵⁾

선행연구에서는 범죄피해 요인에 대해 주로 미시적 관점에서 잠재적 범죄가해자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개인과 가구의 특성에 주목하며, 거시적 관점에서 범죄를 유발하거나 억제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대표적인 미시적 관점의 이론으로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생활양식-노출이론(lifestyle-exposure theory), 기회이론(opportunity theory)이 있다. 일상생활이론은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와 적절한 범행 대상(suitable target)의 존재, 감시자의 부재(lack of guardianship)의 세 가지를 꼽으며, 이들 세 가지 요인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할 때 범죄 가능성이 높아져서 개인의 일상 활동을 변화시키

5) 주로 강지현(2017)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고 범죄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Cohen & Felson, 1979). 이때 신체적 활동능력이 취약하여 외부활동이 많지 않은 고령자의 경우 범죄피해 가능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사회활동이 활발한 30~50대의 범죄피해율이 높다(박강우, 2017, p.13).

생활양식-노출이론은 개인의 특정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생활습관이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노출, 범죄자와의 근접성과 연관되어 범죄피해 유발이나 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회이론도 생활양식-노출이론과 유사하게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노출되고(exposure) 범죄자와의 물리적 근접성이 높을 때(proximity), 범죄로 인한 이익이 크거나(attractiveness) 피해자의 보호능력(guardianship)이 낮은 경우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Cohen, Kluegel, & Land, 1981)

개인 및 가구 특성으로 범죄피해 영향요인을 밝힌 경험적 연구에서는 가구 규모(1인 가구 여부), 가구 수입, 주거 형태 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구유형별 범죄피해 영향요인을 밝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강지현(2017)에 따르면,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모두 취약성에 대한 자기인식이 높을수록, 노출 정도가 심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범죄로부터의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 달리 성별, 가구소득, 지역 특성 변수가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인 가구를 연령으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범죄피해율이 가장 낮고, 33세 이하 여성 청년 1인 가구의 범죄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독거노인의 낮은 범죄피해율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집을 비우는 시간이 적어) 노출 수준이 낮고, 우리나라의 독거노인들의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매력성이 낮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강지현, 2017; 박강우, 2017).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독거노인들이 더 오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최근의 환경 변화 속에서 범죄 대상으로서의 매력도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 차원의 경험적 방법으로 범죄피해의 관련성을 밝힌 국외 연구에서는 주거안정성, 소득수준, 인종 다양성이 요인으로 밝혀졌다. 장기 거주 주민 비율이 낮을수록, 저소득 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인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가구의 범죄피해율이 높았다(Bursik & Grasmick, 1992; Sampson & Croves, 1989; 강지현, 2017, p.294에서 재인용). 이는 앞에서 우리나라 독거노인들은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범죄 대상으로 매력성이 낮다는 것과 조금 다른 결과이다. 오히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시건장치 미비 등 범죄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여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범죄 유형별로 범죄피해 요인이 상이할 수 있다.

2. 고령자의 범죄피해

여기서는 고령자에 집중하여 범죄피해 취약성과 피해 현황에 대한 문헌을 검토한다.

가. 고령자의 범죄피해 취약성

범죄피해자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에 따르면, 범죄피해는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련 있다. 특히 고령자와 관련하여 신체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이 범죄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된다. 먼저 Hans von Henting은 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 지위를 토대로 피해자 유형을 13개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에는 노인, 여성, 아동 등이 포함된다. 또한 Stephen

Schafer는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피해자 유형을 7개로 범주화하였는데,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피해자(biological weak victim)로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과 같이 신체적 취약성이 범죄의 표적으로 희생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정주호, 2020, pp.26-29). 즉 이들 학자의 주장은 취약성 관점(the vulnerability perspective)에서 노인과 여성 등은 위협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것이라는 이론적 접근(우선희, 2018, p.69)과 맥을 같이 한다 할 수 있다.

〈표 2-9〉 피해자 유형과 고령자

학자	유형
Hans von Henting	(13개) 아동, 여성, 노인, 정신적 결함, 이주민, 소수민족, 낮은 지능, 우울증 환자, 탐욕스러운 자, 바람둥이, 고독비탄에 잠긴 자, 학대자, 고립되거나 특정 업무가 면제된 사람 또는 호전적 기질이 있는 자
Stephen Schafer	(7개) 완전한 무책의 피해자, 유발적 피해자, 촉진적 피해자,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피해자, 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 자기 피해자화, 정치적 피해자화

자료: 정주호(2020)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피해자화 결정 요인을 통해서도 고령자의 범죄피해 취약성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피해자화(victimization)는 “어떤 특정 범죄 행위 혹은 인권침해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나 “피해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심리적·행태적인 형태의 상처이자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에게 부정적 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의도적으로 부가된 외상”으로 개념화된다(김재민, 2021, pp.76-77).

김재민(2021)은 피해자화 결정 요인으로 범죄와의 근접성, 범죄에의 노출, 표적의 매력성, 보호능력이라는 네 가지를 꼽고 있다. 범죄와의 근접성(proximity to crime)은 범죄가해자의 거주지 또는 범죄 빈발 지역

과 가까울수록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에의 노출(exposure to crim)은 범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자주 노출될수록 범죄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표적의 매력성은 범인이 범죄의 대상과 대상자를 물색할 때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범행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 실제 범행 결단으로 이어지기 쉽고, 범죄의 실행이 쉬운 대상을 범행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보호능력은 범인이 범행 대상을 결정할 때 낮은 물리적 저항성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보호능력의 취약성을 의미한다(김재민, 2021, pp.79-81).

박강우(2017)는 고령층은 체력이나 시력, 기억력 등 신체·인지적 기능이 낮아 범죄에 대한 보호능력이 취약하여 과실범죄(교통범죄 등)와 위조범죄(통화위조, 문서위조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박강우, 2017, pp.8-9). 이승현 외(2017)도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의 취약성이 있으며 가족관계 단절,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사회활동 참여나 소외 경험으로 누적된 욕구불만 등으로 범죄의 가해와 피해에 대한 노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았다(이승현 외, 2017, p.3).

고령자의 범죄피해 취약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체로 고령자의 신체적, 정서적 취약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성용은, 2018). 그러나 고령자의 범죄피해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고, 범죄피해율을 설명하는 요소인 범죄 대상의 매력성 등이 낮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범죄피해 취약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고령자의 낮은 수준의 사회활동과 긴 자택 거주 시간, 단축된 사회관계 속에서 직업적 등의 측면에서 범죄자와 낮은 밀접성, 인신범죄 중 강간범죄의 경우 젊은 여성에 비해 낮은 매력도 등으로 이를 설명한다(박강우, 2017).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현세대 노인보다 경제상태와 건강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고 있다

는 점(이윤경 외, 2020), 또 일반적으로 고령층은 청장년층보다 범죄로 인해 받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는 점(Gay & Thomas, 1975; 박강우, 2017에서 재인용) 등에서 고령자의 범죄 대상으로서의 매력성과 범죄 취약성이 증가할 것이 분명하므로, 고령자의 범죄피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고령층의 범죄피해에 관한 국내 양적 연구

고령층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수행되었다(예: 구자숙·이현희·원영희·전영실, 2003; 허경미, 2004; 장준오·유홍준·정태인·이완수·노용준, 2008; 팍대경·송일호, 2012; 고제원, 2017; 박강우, 2017; 심혜인, 2022 등). 기존 연구는 형사사법기관의 공식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거나 노인의 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가령, 허경미(2004)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이용하여 형법과 특별법의 고령층 범죄피해 수준을 살펴보았다. 우선 형법에 따른 노인 범죄피해에서는 재산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강력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심혜인(2022)은 ‘전국범죄피해조사(2018년 기준)’의 2차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만 65세 이상의 노인 2,76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층 범죄피해는 재산범죄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심혜인(2022)은 재산범죄와 주거침입범죄 피해 예측요인을 개인 수준, 가구 수준, 지역 수준의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노인 인구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 대표성의 문제와 횡단연구의 한계가 있다.

한편 고령자 대상 주요 범죄 유형에 대해 범죄피해 예측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재산범죄 피해 요인은 학력, 개인의 위험노출 요인, 가구방범 수준이었고, 주거침입범죄 피해 요인은 가구 노출과 방범활동으로 확인되었다. 즉 상대적으로 고학력의 소득수준이 높은 고령자의 경우 재산범죄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사회활동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고 방범활동 수준이 낮은 고령자의 경우 주거침입범죄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성용은, 2018).

법무연수원(2023)의 2022년 범죄백서에서는 범죄자의 경우 여성, 공무원, 정신장애인, 고령자,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범죄 동향을 보고하지만, 범죄피해자의 경우 형법범죄 피해자, 강력(흉악)범죄 피해자, 강력(폭력)범죄 피해자, 재산범죄 피해자,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로 구분하여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에 대한 분류는 범죄피해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인구학적으로 13세 미만 아동만을 따로 분류할 뿐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범죄 유형별로 성별, 연령별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연령의 경우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1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연령으로 보는 65세 이상이나 60세 이상과는 다른 연령 범주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노인연령 내의 세분화된 통계를 분류하지 않고 있다. 즉 법무적 관점에서 피해자로서 고령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경험 자료의 한계 등으로 고령층 범죄피해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범죄피해 실태는 재산범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관련 연구도 재산범죄 피해에 집중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지역과 고령자 범죄피해⁶⁾

다양한 고령자의 범죄피해 요인 중 지역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kers et al.(1987)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죄피해나 범죄의 두려움은 낮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 범죄피해 또는 범죄 두려움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도 높고 1인 가구 비율도 높다. 즉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이다. 그런데 농어촌은 도시보다 거주지 간 거리가 멀어 자연 감시가 안 되는데,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해 범죄 두려움도 적지 않다. 인구 비율에 따른 지구대, 파출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수를 보면 도시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거주지와 거리가 멀어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이 길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으며 순찰 인력도 부족하다. 여기에 기계적 감시를 위한 CCTV도 적다. 인구밀집도가 낮을수록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이후 수사를 위해 CCTV가 필요하지만 실제 농어촌에서 CCTV가 많은 곳은 관공서가 밀집한 읍내이다. 그 때문에 노인 가구가 드문드문 산재한 지역들에서 농림수산물 절도나 빈집털이, 성폭행 등이 발생하기 쉽다.

외지인들이 트럭을 몰고 다니며 파, 마늘, 고추, 김발 등의 농림수산물을 절도하거나 이웃이 갈등에 대한 보복행위로 작물에 불을 내기도 한다. 농어촌 주민들은 농사일을 하거나 외출할 때, 잠금장치를 하는 등의 개인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낮기도 하지만 거주환경 자체가 열악하여 방범창이나 잠금장치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이 많다. 또한 수입이 월급처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작물 수확기에 현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오

6) 이 연구 수행 중 2023년 6월 2일에 개최한 연구세미나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지영 연구위원이 발표한 “노인의 범죄피해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고찰”(김지영, 2023.6.2.)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다.

는데 은행이 멀어서 현금을 집에 그냥 보관하고 있거나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을 집안에 두는 경우가 많다. 절도범들도 노인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발각되더라도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침입한다.

이웃 간 유대가 높을수록 범죄가 예방된다는 것이 범죄학의 정설이지만 농어촌에서는 이웃 간 유대가 범죄 발생과 은폐의 요인이 된다. 폭행이나 절도가 일어나도 아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경찰조차도 범인 검거와 수사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다. 또한 농어촌 노인들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아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이웃인 경우가 많아 사회적 유대를 깨지 않기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농어촌 지역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의 피해율도 높다. 이는 첫째, 대중교통이 용이하지 않아 음주운전에 관대하고 둘째, 경찰의 단속도 없으며 셋째, 가로등이 없어 캄캄한 길이 많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길도 많기 때문이다(김지영 외, 2020).

3. 이슈별 범죄피해

여기서는 형법에서 분류하는 범죄 유형이 고령자 복지 및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범죄를 학대,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현실감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범죄피해 이슈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와 뉴스 검색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과 연구진의 의견을 종합하여 선정하였다. 통계청에서 매년 10월 노인의 날 전후로 발표하는 고령자 통계에서는 생활환경 부문에서 고령자의 안전 취약성이 높은 학대 피해와 보행 교통사고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2022.9.29.). 그러나 여기서 교통

사고는 매우 특수한 영역으로 암수 범죄의 가능성 역시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연구의 이슈로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은 2010년대에 시작된 이후 새로운 형태로 계속 진화되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속적인 피해 현황 파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초에는 보이스피싱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총괄팀, 2023.4.21.).

가. 학대⁷⁾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배우자 학대와는 발생 원인에서 차이가 있다. 아동학대에서 아동은 일반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피해자이지만 노인학대는 피해자인 노인이 과거 자녀와 배우자에 대해 가해자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노인학대는 노인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가해자의 정신질환, 노인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 등이 원인이 된다. 또한 아동학대와 달리 분리보다는 화해나 중재가 필요한 비율이 더 높다(김지영, 2023.6.2.).

성별로는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학대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높다. 이는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자녀에 의존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또한 80대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들보다 학대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높다.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언어·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이 있는데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보면 노인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경우에도 노인들은 자녀와 살고 싶어하고 자녀와의 중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학대 피해 노인들의 욕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녀의 부양이고 다음이 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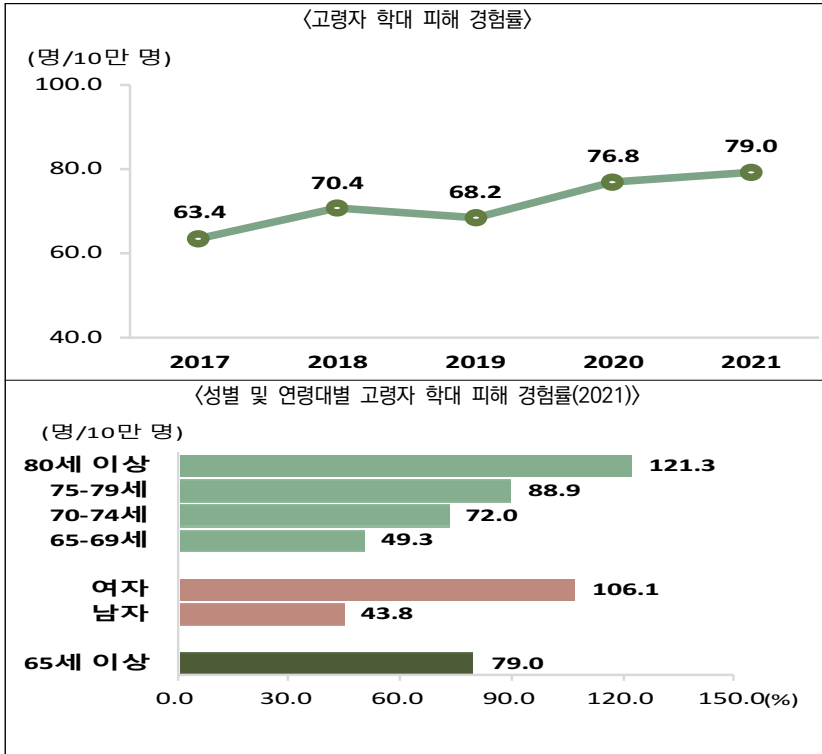
7) 주로 김지영(2023.6.2.)과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2022.9.29.)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자녀의 처벌, 시설 입소, 자녀와의 중재 등이다. 피해 노인이 바라는 바는 많은 경우에 학대 상황을 벗어나거나 자녀의 부양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을 꺼린다.

노인학대는 신체적/언어적 학대, 혹은 신체적 학대/방임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단일한 유형으로 가장 높은 비율은 방임이다. 방임이 신체적 학대나 재정적 학대에 비해 경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물, 식사, 난방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고령의 노인은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다. 또한 신체적 학대가 발생한 상황은 이미 다른 학대들도 상당히 빈번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학대 가해자는 아들과 며느리, 배우자 등이나, 반대로 신고자 또한 본인보다 자녀들이 많다(김지영, 2005). 그러나 노인학대 행위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아들이, 2021년부터는 배우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 노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 29.1%, 아들 27.2%, 딸 7.4%, 본인 2.4%, 손자녀 2.0%, 며느리 1.4% 등의 순이다(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3).

[그림 2-2]에 제시된 것처럼, 65세 고령자의 학대 피해 경험률은 2021년 고령자 10만 명당 79.0명으로 2017년 63.4명에 비해 증가했다. 학대 피해 경험률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가 있으며,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다. 2021년 기준 성별로는 여성 고령자 106.1명으로 남성 고령자 43.8명보다 2배 이상이며,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121.3명으로 65~69세 49.3%보다 2배 이상 높다(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2022.9.29.).

[그림 2-2] 고령자 학대 피해 경험률 추이(2017~2021년)



주: 1)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로 구분되며,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임

2) (성별, 연령대별) 학대 피해 경험률=(성별, 연령대별) 학대 피해 노인 수/65세 이상 추계인구 ×100,000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2022.9.29.), p.49에서 재인용

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2006년 국세청 환급을 빙자한 사건 이후 ‘보이스피싱’이라 혼용되는 전화금융사기가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준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

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사기범죄에 해당되며(경찰청, 2022, p.192), 법률상의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다. 그러나 일반 언론이나 국민은 보이스피싱,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부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자금의 송금 및 이체를 보이스피싱 피해로 집계한 금융감독원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451억 원, 피해자 수는 12,816명이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11,300만 원이다.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총괄팀, 2023.4.21.).

다만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은 계좌이체형에 한정된 결과이며, 최근 2023년 5월 개정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포함하게 된 대면편취형이나 재화·용역을 가장한 사기(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총괄팀, 2023.4.21.)를 포함할 경우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0〉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2018~2022년)

(단위: 억 원, 명, 백만 원, %, %p)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률)
피해금액(A) ¹⁾	4,440	6,720	2,353	1,682	1,451	(-13.7)
환금액(B)	1,011	1,915	1,141	603	379	(-37.1)
환금률 (C=B/A×100)	22.8	28.5	48.5	35.9	26.1	-9.8
피해자 수(D)	48,765	50,372	18,265	13,213	12,816	(-3.0)
1인당 피해금액(D/A)	9.1	13.3	12.9	12.7	11.3	(-11.1)

주: 1) 피해구제 신청접수(1차 계좌) 기준, 이하 동일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총괄팀(2023.4.21, pp.1-3)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건수는 30,982건이며, 피해액은 7,7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받는 수법(계좌이체형)과 피해자를 만나서 전달받는 수법(대면편취형), 피해금을 상품권이나 가상자산으로 환전하여 편취하는 등 신·변종 편취수법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경찰청, 2022, p.192).

〈표 2-11〉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2018~2021년)

(단위: 건, 억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률
발생건수	34,132	37,667	31,681	30,982	-2.2
피해액	4,040	6,398	7,000	7,744	10.6

주: 계좌이체형, 대면편취형, 상품권 및 가상자산 환전 편취법 등을 신·변종 편취수법을 모두 합산한 피해 현황임

자료: 경찰청(2022, p.192)

한편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형법은 사기죄(사기미수,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등), 횡령죄, 문서위조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처벌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인구고령화와 범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범죄피해와 고령자의 관계를 이론과 실증 연구결과들을 통해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은 출산율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겪고 있다. 2000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를 기록하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후 고령화 추세는 고착화되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5.7%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6.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가입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수준이다(통계청, 2023a; OECD, 2023).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인구고령화와 관련해서는 독거노인 가구 증가, 고령인구의 빈곤과 노인인구 집단 내 빈부격차, 후기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능상태 악화와 인지기능의 저하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의 범죄 취약성과 매력성을 높이며 범죄피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다.

범죄피해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행, 학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들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피해 유형은 정신적 피해, 사회적 관계 파괴, 신체적 피해, 경제적 피해 등이 있다. 생애주기상 다른 사람의 보살핌에 의존할 수 있는 시기인 아동과 노인은 상대적으로 학대의 위험이 높을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들의 학대를 동일하게 바라보거나 아동학대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와 달리 재정적 착취와 자기 방임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최근 노인학대는 요양병원, 의료기관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한 지점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한 피해의 경우 고령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적·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이 클 뿐만 아니라 회복 역시 더딜 수 있다는 점에서 특화된 배

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범죄피해 요인에 대해 주로 미시적 관점에서 잠재적 범죄가해자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개인과 가구의 특성에 주목하며, 거시적 관점에서 범죄를 유발하거나 억제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펴본다. 특히 고령층의 범죄피해 취약성과 관련해서 대체로 고령자의 신체적, 정서적 취약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성용은, 2018; 박강우, 2017; 이승현 외, 2017). 그러나 고령자의 범죄피해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고, 범죄피해율을 설명하는 요소인 범죄 대상의 매력성 등이 낮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범죄피해 취약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고령자의 낮은 수준의 사회활동과 긴 자택 거주 시간, 단축된 사회관계 속에서 직업적 등의 측면에서 범죄자와 낮은 밀접성, 인신범죄 중 강간범죄의 경우 젊은 여성에 비해 낮은 매력도 등으로 이를 설명한다(박강우, 2017). 고령층의 범죄피해에 관한 국내의 양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며, 고령층의 범죄피해 실태는 재산범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현세대 노인보다 경제상태와 건강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윤경 외, 2020), 또 고령층은 청장년층보다 범죄로 인해 받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는 점(Gay & Thomas, 1975; 박강우, 2017에서 재인용) 등에서 고령자의 범죄 대상으로서의 매력성과 취약성이 증가할 것이 분명하므로, 고령자의 범죄피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고령자의 안전 이슈와 함께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학대, 보이스피싱을 이슈별 범죄피해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최근 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 행위자의 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호

름이 포착되었다. 보이스피싱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며, 그 발생건수는 감소 추세인 반면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제3장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에 관한 양적 분석

제1절 양적 분석 개요

제2절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추이: 범죄 대분류 기준

제3절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징: 주요 범죄 기준

제4절 고령자 범죄피해 순위

제5절 소결

제 3 장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에 관한 양적 분석

제1절 양적 분석 개요

1. 분석 배경

한국은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직전에 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사회보험 방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고 노인 대상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새로운 제도 도입과 다양한 정책 개발을 진행하였다. 특히,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빈곤 문제와 노인돌봄 문제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왔다. 또한, 최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양적 확대,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향상 등을 통해 노인의 경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황남희, 2021).

그렇지만, 노인의 범죄 안전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최근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스미싱(SMS 결제사기) 같은 경제적 범죄를 언론보도에서 빈번히 접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노인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여 경제 및 여가 등의 이유로 외부활동이 많아졌고, 이에 따른 노인의 범죄피해 증가 현상은 연구자, 정책입안가, 일반시민 등 많은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인구고령화로 인한 고령자의 범죄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져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만 이에 관한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더욱 주목받을 만한 이슈이므로, 현재 고령자의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최근 고령층의 범죄 발생과 다양한 종류의 범죄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형사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⁸⁾

2. 분석 자료

제3장에서는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고령자⁹⁾ 범죄피해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이용하여 전국 단위에서 전체 범죄, 특별법범죄 및 형법범죄, 나아가 형법범죄의 하위유형 중 재산범죄, 강력(홍악)범죄, 강력(폭력)범죄 등 주요 형법범죄를 대상으로 고령자의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범죄 발생 및 피해자 현황 관련 통계자료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과 경찰청의 『경찰청범죄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 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중 인지사건을 단위로 작성되

8)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둔 현재, 고령자는 신체적·인지적 등 다양한 이유로 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생활비 마련 및 사회적 유대의 약화 등의 이유로 고령자는 범죄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이 장에서는 피해자 측면을 살펴보고 피해 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향후 가용 가능한 데이터가 구축되는 대로 고령자의 범죄피해와 함께 범죄의 가해자 측면까지 포괄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9) 이 장에서는 자료의 제약상 '61세 이상 인구'를 고령자로 정의하며 맥락에 따라서 노인 등의 용어로 혼용한다.

는 발생통계원표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 관련 항목을 기초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법무연수원, 2023).¹⁰⁾ 따라서 대검찰청 자료는 모든 수사기관의 범죄통계원표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비해 보고되지 않은 범죄 발생 현황에 대한 편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장에서는 대검찰청의 공식자료를 우선으로 활용한다.¹¹⁾

구체적으로, 대검찰청은 범죄피해자에 관한 공식통계를 전국 단위에서 성별·연령, 피해 시 상황, 범죄가해자와의 관계를 공표하고 있다.¹²⁾ 특히,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연령’은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로 구분하여 범죄피해자의 연령별 현황을 성별로 보고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노인은 65세 이상을 의미하지만, 가용자료의 연령 범위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 ‘고령자’는 61세 이상 인구를 지칭한다.

3. 분석 방법

대검찰청 공식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단위의 전반적인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고령자 범죄피해의 특성을 범죄 유형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된 피해자 성별·연령

10) 대검찰청에 따르면, 발생통계원표에서 피해자에 관한 항목 수집 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중한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작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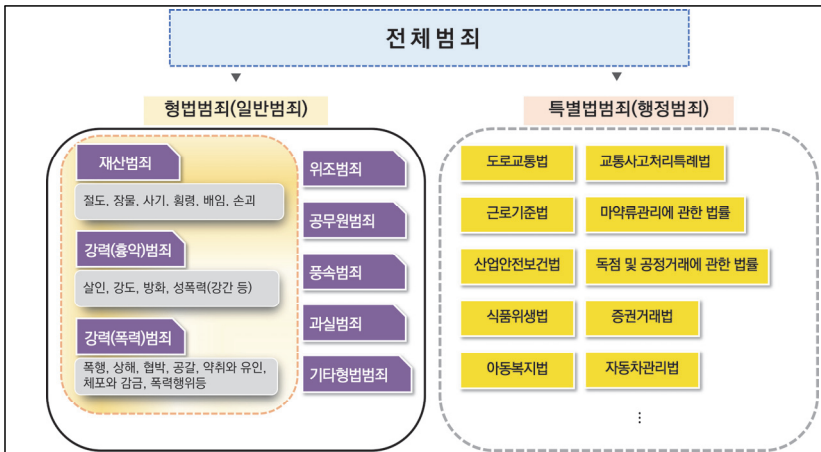
11) 대검찰청 범죄분석 DB는 국가통계포털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였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 다운 경로는 ‘국가통계포털-범죄안전-범죄통계분석-피해자 특성 및 피해결과-피해자 특성-피해자 성별연령’이다.

12) 이때 자료 단위는 인원(명)이다. 이와는 다르게 경찰청 자료에서 피해자 통계는 ‘건수’를 기준으로 공표한다.

인원 통계 자료만으로는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에 대한 간접적인 파악만 가능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분석에 앞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서 규정한 범죄 유형 및 정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1]에서 보듯이, 『범죄분석』에서는 범죄를 크게 형법범(일반범죄)과 특별법범(행정 범죄)으로 구분하는데, 일반범죄는 전형적인 형법상의 범죄로 재산범죄, 강력(흉악)범죄, 강력(폭력)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 형법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사회적 심각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강력(흉악)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강간 등)으로 구성되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범죄에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가 포함된다.

[그림 3-1] 대검찰청 범죄분석 기준 범죄 유형



주: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에 사용한 범죄 분류체계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구분됨. 매년 공표되는 범죄분석 자료는 새롭게 신설된 법률이 포함되거나 죄명 변경 등의 이유로 세부 분류 항목의 변경 등이 있음
자료: 김도원·변재욱(2021), <그림 III-18>, p.54을 이용하여 연구진 재구성

특별법범죄는 각종 행정규제 위반 행위 중 형사 처벌이 부과된 것들이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저작권법 위반행위,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 있다. 특히 특별법 가운데 형법이 직접 준용되는 일부 특별법들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해당 형법죄명에 편입시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 ‘행정범죄’라 함은 형법준용죄명을 제외한 특별법들의 위반 행위를 의미한다(김일중·변재옥, 2012).

이 장에서는 전체 범죄, 일반범죄와 행정범죄, 일반범죄 중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강력(흉악)범죄를 비롯하여 또 다른 중요범죄인 재산범죄와 강력(폭력)범죄에 대한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재산범죄와 강력(흉악)범죄는 세부 범죄 유형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기간은 범죄 발생이 이전 시기보다 양적으로도 많아졌고, 질적으로도 악화된 2000년 이후부터 가장 최근인 2021년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2000년대부터 한국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령자의 범죄피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① 범죄피해자 인원, ② 61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노인 피해자 인원, ③ 범죄 전체 피해자 중 61세 이상 피해자의 비율 통계를 활용할 것이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령자 피해의 절대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령인구 증가를 통제하는 측면에서 61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고령 피해자 인원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범죄 유형마다 발생 정도가 다르므로 피해 인원 역시 범죄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일반범죄 전체 피해 중 재산범죄 피해가 63%를 차지하는 반면, 강력(흉악)범죄피해는 전체 피해자의 단 4% 수준에 불과하다(대검찰청, 2023, p.576).¹³⁾ 이처럼 범죄 유형별

로 피해자 인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 유형별 전체 피해자 인원 중 고령 피해자 비중도 살펴볼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세 가지 통계치를 이용하여 성별 및 범죄 유형별 고령 범죄피해자 실태를 확인할 것이다. 이 장의 고령자 범죄피해 분석은 기존 연구에 비해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고령자 범죄 실태를 파악한 기존 연구에 비해 피해자 절대 수준을 비롯하여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인원, 전체 피해자 대비 고령 피해자 비율 등 다양한 통계치로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일반범죄와 행정범죄를 비롯하여 일반범죄의 하위범주인 재산범죄, 강력(홍악)범죄, 강력(폭력)범죄, 그리고 재산범죄와 강력(홍악)범죄의 세부 범죄 유형까지 다룸으로써 어느 범죄 유형에서 고령층의 범죄피해가 심각한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양적 분석은 최근 20년 동안 범죄피해 추이에 중점을 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1년 기준 일반범죄를 기준으로 성별 및 연령별로 범죄피해 순위를 분석하여 61세 이상 고령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범죄 유형 중분류 기준으로 범죄피해 순위를 분석하고, 이를 더 세분화하여 소분류 수준에서 1~15위를 살펴본다.

4. 범죄 발생 추세¹⁴⁾

고령자의 범죄피해 현황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 50년간 한국의 범죄 발생추세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 발생이 증가하면 범죄피해 역시 증가할 것이므로 범죄 발생 추세를 검토하는 것은 이후에 살펴볼 고령

13) 일반범죄 전체 1,003,883건(100%), 재산범죄 634,864건(63.2%), 강력(홍악)범죄 43,927건(4.4%)

14) 김일중·변재욱(2012) 및 김도원·변재욱(2021)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으며, 수치는 연구진이 최신화하였다.

자 범죄피해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한국의 전체 범죄는 대체로 증가해왔으며, 전체 범죄의 하위범주인 ‘형법범죄(일반범죄)’와 ‘특별법범죄(행정범죄)’는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형법상의 전형적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일반범죄’에 초점을 맞춰서 지난 50년간 범죄 발생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지난 50년간 일반범죄 및 행정범죄,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가장 큰 강력(흉악)범죄의 발생 추세를 보여준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뜻하는 ‘범죄 발생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에 따라 전체 기간을 크게 네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제1구간은 1970년대로, 범죄 발생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파른 것이 주된 특징이다. 그러나 모든 구간 중 범죄 발생 규모는 가장 작다. 다음 제2구간인 1980~1990년대는 이전 구간과 비교하여 범죄 발생 규모는 다소 증대되었으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행정범죄가 일반범죄에 비해 두드러지게 발생 규모가 커진 것이 특징이다. 제3구간인 2000년대의 범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발생 규모의 증가 폭이 매우 크고, 증가 속도 역시 이전 구간보다 2배 정도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지난 2000년 이후 10년간 범죄 발생 증가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행정범죄를 제외하고) 과거에 비해 범죄 발생 규모가 늘어났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2년간 범죄 발생은 감소하였다. 특히 일반범죄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일반범죄의 하위범주 중 강력(흉악)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의 발생비 증가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발생비는 꾸준히 증가했다.

2000년대 들어 행정범죄 발생의 증가와 함께, 일반범죄 발생건수의 절대 수준도 과거보다 매우 높아졌으며, 증가 추세 역시 지속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행정범죄 발생비는 다소 주춤했지만, 일반범죄 발생건수의 절대 수준은 이전 10년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범죄 가운데 대중에게 가장 위협적인 범죄로 인식되는 ‘강력(흉악)범죄’와 경제적 동기의 ‘재산범죄’의 증가 추세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표 3-1〉 범죄 유형별 발생비의 기간별 수치

(단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 %)

구 분	1970~1981	1982~1999	2000~2009	2010~2021
형법범죄의 연평균 발생비 (연평균 증가율, %)	676.2 (5.0)	712.0 (0.7)	1,764.0 (2.0)	1,971.8 (-0.9)
특별법범죄의 연평균 발생비 (연평균 증가율, %)	576.2 (4.7)	1,989.7 (0.7)	2,379.6 (1.0)	1,680.7 (-5.4)
강력(흉악)범죄의 연평균 발생비 (연평균 증가율, %)	14.3 (7.1)	24.1 (2.2)	42.4 (3.9)	64.0 (2.5)

주: 2000년부터 특별법 위반 중 일부가 형법 위반으로 포함됨에 따라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세부 구성이 다르게 적용되었음. 이에 따라, 세부 구성 변화 기점인 2000년의 연 증가율은 기간별 평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제외함. 2014년부터 대검찰청은 범죄통계원표를 집계하는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기존의 범죄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2014년 이전 자료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자료에는 차이가 있음. 분석 시점의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범죄 발생비(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건수)를 계산하였음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제2절 고령자의 범죄피해 현황과 추이: 범죄 대분류 기준

전체 범죄는 ‘일반범죄(형법범죄)’와 ‘행정범죄(특별법범죄)’로 크게 구분된다. 고령자 범죄피해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전체 범죄를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 하위범주인 일반범죄와 행정범죄의 고령 피해자 현황을 검토한다.

1. 성별 및 연령별 전체 범죄피해 현황

〈표 3-2〉는 2000년 이후 전체 범죄 대상 연령별 피해자 인원 현황이다. 전체 범죄피해자는 2015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인 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앞에서 범죄 발생비 통계에서 확인한 것처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2년간 범죄 발생이 감소하여 범죄피해자 인원 역시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 2015년과 2016년에 피해자 인원은 2백만 명을 넘었으나, 이후 다시 1백만 명대로 감소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31세~40세)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에서 2000년 대비 2021년 피해 인원이 증가하였다.¹⁵⁾

〈표 3-2〉 전체 범죄 연령별 피해자 인원(2000~2021년)

(단위: 명)

연령 연도	합계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2000	727,748	53,821	128,212	255,449	177,230	75,091	37,945
2001	733,164	49,649	127,636	262,583	177,312	73,096	42,888

15) 2000년 대비 2021년 연령별 범죄피해 증가 정도를 계산해보면, 20세 이하 1.6배, 21세~30세 1.5배, 31세~40세 0.7배, 41세~50세 1.1배, 51세~60세 2.7배, 61세 이상 4.3배이다.

66 인구고령화 시대 범죄 특성과 사회정책 대응방안 모색-고령피해자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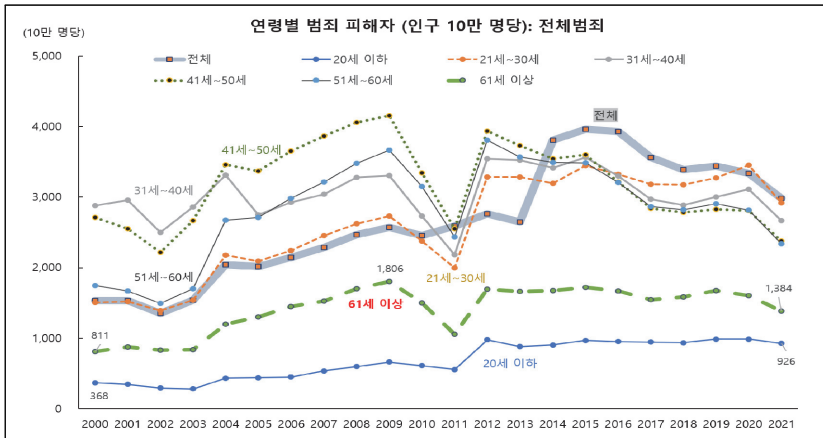
연령 연도	합계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2002	650,541	41,453	115,517	221,494	163,612	65,999	42,466
2003	744,243	38,575	125,759	252,608	206,137	76,008	45,156
2004	991,896	58,075	175,103	292,763	275,662	122,488	67,805
2005	983,214	57,714	164,910	244,577	275,027	129,085	76,176
2006	1,050,066	57,977	172,635	259,059	303,256	151,022	87,536
2007	1,122,607	68,473	185,441	267,295	325,016	173,198	95,178
2008	1,218,164	75,212	194,210	285,672	344,561	197,910	110,533
2009	1,275,417	82,595	198,738	283,506	357,417	218,907	122,548
2010	1,223,435	75,107	169,384	229,883	290,485	198,468	106,308
2011	1,297,898	67,329	138,217	181,493	221,826	163,481	77,779
2012	1,392,284	116,751	222,042	291,259	342,619	272,234	128,455
2013	1,337,563	102,959	218,255	286,289	324,433	268,155	131,258
2014	1,933,835	102,925	210,412	273,590	310,239	271,194	138,056
2015	2,020,731	107,786	227,034	279,604	316,703	278,186	148,254
2016	2,008,290	103,407	220,609	253,390	281,841	260,739	150,772
2017	1,824,876	99,923	213,064	223,633	247,186	235,770	146,950
2018	1,738,190	95,708	214,284	213,188	240,113	234,514	158,657
2019	1,767,684	97,547	222,115	217,890	240,040	244,132	176,633
2020	1,714,579	94,503	234,377	221,491	233,761	239,316	177,912
2021	1,531,705	85,224	197,996	184,479	195,641	199,429	161,662

주: 2005년부터 연령별·성별 미상 자료가 공표되었음. 위 표는 피해자 인원에 미상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2005년부터 연령별 피해 인원의 합이 합계와 맞지 않음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2000년 61세 이상 고령자 범죄피해 인원은 37,945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약 4.3배 증가하여 16만 명을 넘어섰다. 즉 고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00년 대비 피해 인원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고령 범죄피해자는 2008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 1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피해자 합계는 이전 연도에 비해 증가하

였으나, 성별·연령 미상 인원이 이전 연도에 비해 많아 연령별 피해 인원은 모두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¹⁶⁾

[그림 3-2]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현황: 전체 범죄



주: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자는 각 연령의 인구 10만 명 대비 전체 범죄피해 인원을 나타냄. 이때, 연도별 각 연령 인구는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를 사용하였음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다음으로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인원의 추세를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전체 피해자는 2013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4년에 전년도 대비 큰 폭(44%)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2,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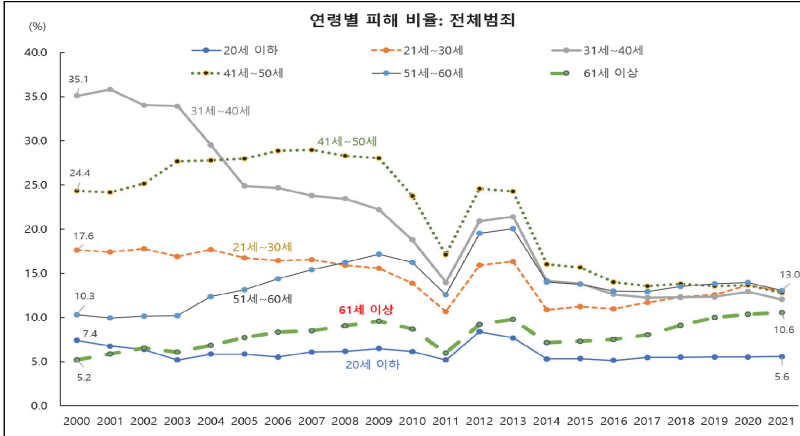
16) 2010년의 미상 인원은 15만 명 정도였으나, 2011년에는 무려 62만 명으로 전년 대비 4배 정도 많은 수치이다. 특히, 2014년부터 성별·연령별 미상 인원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3-2>의 합계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연령별 피해 인원은 50대(51세~60세)와 61세 이상에서만 증가하였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명이었지만, 2014년 이후에는 3,55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2]).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는 모든 연령에서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대체로 증가하다가 2011년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이후 전체 피해자와 같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40대(41세~50세)가 지난 22년 동안 인구 10만 명당 평균 3,194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현황을 보면, 20대(21세~30세)가 인구 10만 명당 2,922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30대(31세~40세)가 높았다(2,667명). 2012년 이후 인구 10만 명당 평균 피해 인원은 20대가 가장 높고, 30대, 40대, 50대, 60대 순으로 높았다. 61세 이상 고령자의 전체 범죄피해 수준 역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에는 주춤하는 추세이다. 지난 22년 동안 고령자의 범죄피해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9년으로 인구 10만 명당 1,806명이었다.

[그림 3-3]에 제시된 전체 피해자 중에서 연령별 피해자 비율을 살펴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30대와 40대의 비중이 뚜렷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20세 이하 연령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비중의 차이가 크지 않다. 특히, 20대부터 50대까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61세 이상의 피해 비율은 2000년에 5.2%로 가장 낮았으나, 2003년 이후 20세 이하를 추월하였다. 최근에는 20세 이하와 61세 이상 연령그룹의 피해 비율 차이가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며, 고령자 피해 비율은 20대~50대의 수치에 근접한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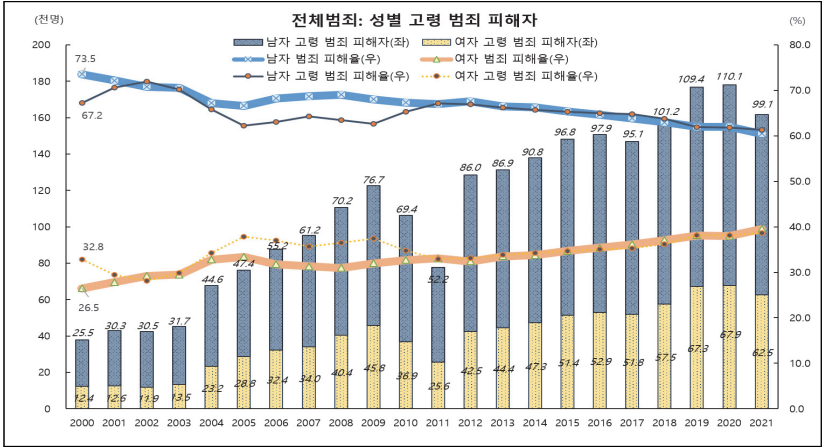
[그림 3-3]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전체 범죄



주: 연령별 피해 비율은 범죄피해자 전체 인원(미상 포함) 중 연령별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4]에 제시된 전체 피해자 대비 남녀 비중을 확인해 보면, 미상을 제외한 전체 피해자 대비 남녀 비중 역시 남자가 높지만 그 추세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 다음으로 61세 이상 전체 피해자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한 ‘성별 고령 범죄피해율’을 보면, 지난 22년 동안 남자가 평균 65.3%로 여자(34.7%)에 비해 높았다. 여성 고령 피해자의 절대 인원은 2000년에 비해 2021년에 약 5배 증가하여 남성 피해자(3.9배)보다 증가폭이 더 크다. 이에 따라 남녀 고령자 피해 비율 차이가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가령, 2000년에는 남녀 고령 피해 비율이 34.4%p지만, 2021년에는 22.7%p로 그 차이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61세 이상 피해자 중에서 여성 피해자 비중은 2000년 32.8%에서 2021년 38.7%로 소폭 상승했다.

[그림 3-4] 성별 고령 범죄피해자: 전체 범죄



주: 성별 고령 범죄피해자(이탈릭제)는 해당 성별의 피해 인원 절대 수준이고, 성별 고령 범죄피해율은 61세 이상 전체 피해자에서 남자와 여자의 각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성별 범죄피해율은 미상을 제외한 인원에서 성별이 차지하는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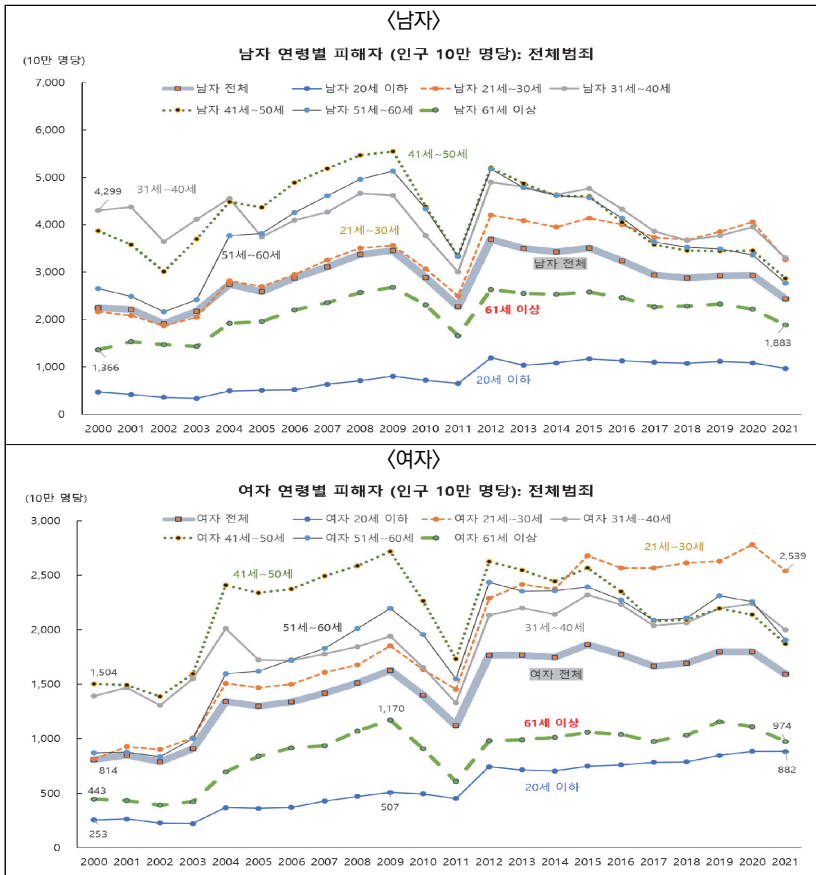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5]는 전체 범죄를 대상으로 성별 및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추이다. 먼저 남자 각 연령대의 인구 10만 명당 연령대별 범죄 피해 인원으로 측정하였다. 지난 22년 동안 ‘남자 전체’를 포함하여 (20세 이하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령대에서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 대폭 감소한 이후 최근으로 올수록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21세~30세)는 2011년까지 남자 전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 후 2020년까지 등락을 거듭하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30대~50대는 2010년대 초반부터 뚜렷한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다. 61세 이상 고령자 역시 다른 연령대와 유사한 추세를 보

이며,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다. 고령층의 범죄피해자 규모는 20세 이하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림 3-5]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자 규모: 전체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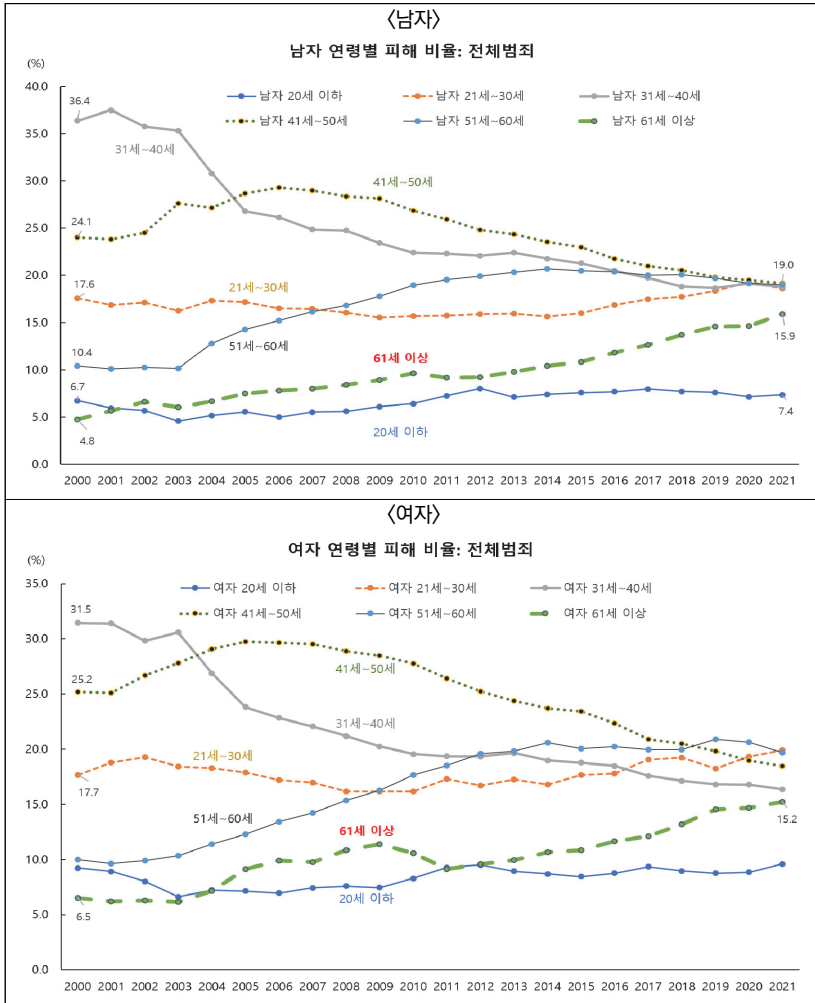
주: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자는 성별 각 연령의 인구 10만 명 대비 범죄피해 인원을 나타냄. 이 때, 연도별 각 연령 인구는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를 사용하였음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여자의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추세도 전반적으로 남자와 비슷하지만, 20세 이하와 20대(21세~30세)의 최근 추세는 다른 연령과 다르게 증가 추세이다. 즉, 최근 젊은 여성층이 범죄피해를 많이 당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2014년까지 40대(41세~50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범죄 피해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후 20대에 역전당하며 최근 40대의 범죄 피해는 감소세를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00년에 20대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는 814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2,539명이다. 20세 이하 역시 2021년에 2000년과 대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61세 이상 여자 고령자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20세 이하와 차이를 벌렸지만, 최근 그 차이가 크게 좁혀졌다.

[그림 3-6]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성별 전체 피해자 대비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이다. 남자 30대(31세~40세) 피해 비율은 남자 전체 피해자 인원 대비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했다. 남자와 여자의 연령별 피해 비율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2000년대 초반에는 30대와 40대가 뚜렷하게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후 감소세가 확인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남녀 모두 50대(51세~60세)와 61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른 연령에 비해 50대와 고령자의 범죄피해자가 증가 추세라는 것은, 최근 고령자 범죄피해에 관한 우려와 맥을 같이 한다.

[그림 3-6]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전체 범죄



주: 성별 및 연령별 피해 비율은 범죄피해자 전체 인원(미상 포함) 중 해당 성별 및 연령별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2. 성별 및 연령별 일반범죄 피해 현황

〈표 3-3〉은 전통적인 범죄에 속하는 일반범죄(형법범죄)의 지난 20여 년간 피해자 규모이다. 전체 범죄와 같이 일반범죄는 2015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이후 주춤하며 감소하는 추세이다. 전체 합계와 각 연령에서 모두 2021년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61세 이상 일반범죄 피해자는 2000년에는 20세 이하보다 적었으나, 2021년에는 20세 이하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2000년 일반범죄의 61세 이상 고령 피해자는 약 2만 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4.6%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약 6배 증가한 12만 명(13.2%)을 넘어섰다. 가장 피해 인원이 많았던 시기는 2020년으로 13만 명에 육박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은 2000년 대비 피해 인원의 증가폭이(전체 범죄 추이와 같이) 가장 크다.¹⁷⁾

〈표 3-3〉 일반범죄 연령별 피해자 인원(2000~2021년)

(단위: 명)

연령 연도	합계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2000	438,291	24,462	71,614	156,333	118,525	47,142	20,215
2001	449,272	23,157	74,834	160,784	120,746	47,756	21,995
2002	413,603	20,062	72,546	137,815	115,560	45,361	22,259
2003	485,438	19,329	79,948	165,251	141,486	54,159	25,265
2004	643,744	26,822	109,104	188,677	194,447	82,912	41,782
2005	665,162	30,496	107,936	170,974	201,024	91,276	46,340
2006	699,253	30,514	110,811	175,945	216,043	106,752	51,056
2007	753,244	37,389	118,813	182,984	233,157	121,815	55,635

17) 2000년 대비 2021년 연령별 일반범죄 피해 인원 증가 정도를 계산해보면, 20세 이하(2.4배), 21세~30세(2.2배), 31세~40세(0.9배), 41세~50세(1.3배), 51세~60세(3.3배), 60세 초과(6.0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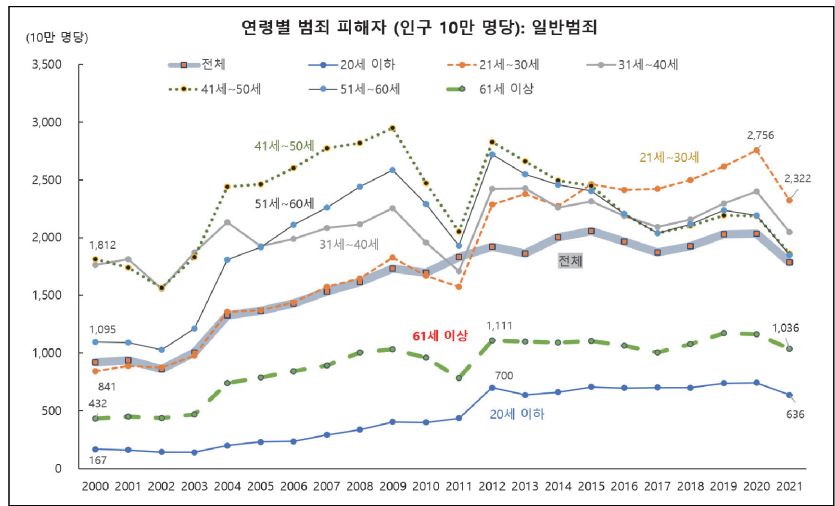
연령 연도	합계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2008	796,865	42,617	121,772	184,556	239,489	138,818	65,173
2009	860,966	50,403	133,040	193,435	253,852	154,488	70,194
2010	846,321	49,253	118,767	164,680	214,697	144,413	67,831
2011	917,513	52,971	109,064	142,323	178,619	129,350	57,739
2012	968,081	83,503	154,739	199,097	245,952	194,560	84,343
2013	941,759	74,544	157,806	197,330	231,355	191,622	86,989
2014	1,016,209	75,623	149,395	181,265	218,036	190,749	90,026
2015	1,047,761	78,855	162,149	181,420	215,380	191,647	95,243
2016	1,005,689	75,875	160,158	167,932	193,631	179,110	96,277
2017	958,865	74,159	162,144	157,596	177,347	167,737	95,696
2018	988,398	71,695	168,692	159,353	181,327	175,841	107,961
2019	1,041,395	73,106	177,593	166,654	185,858	188,011	123,454
2020	1,044,438	70,974	186,950	170,731	182,076	186,415	129,011
2021	917,787	58,566	157,373	141,550	153,446	157,519	120,993

주: 2005년부터 연령별·성별 미상 자료가 공표되었음. 위 표는 피해자 인원 미상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2005년부터 연령별 피해 인원의 합이 합계와 맞지 않음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l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 7. 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인구 10만 명당 일반범죄 전체 피해자는 지난 22년 동안 완만하게 증가하였다(그림 3-7).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6.9%와 32.1%씩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이후로는 매년 평균 약 2%씩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21세~30세)의 최근 피해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대는 2021년 전년 대비 잠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30~50대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높은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20대의 범죄피해 수준이 가장 높다. 61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 10만 명당 피해 인원 추세는 2009년까지 증가후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주춤한 상태이다. 그러나 고령자의 범죄 피해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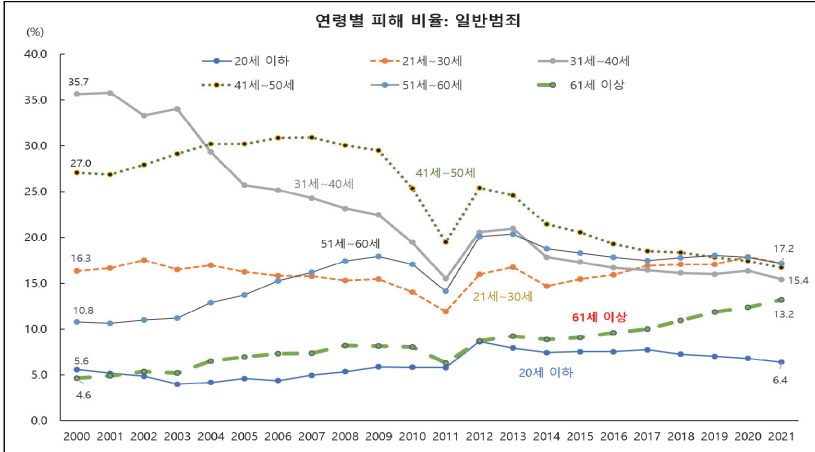
[그림 3-7]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현황: 일반범죄



주: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자는 각 연령의 인구 10만 명 대비 범죄피해 인원을 나타냄. 이때, 연도별 각 연령 인구는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를 사용하였음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8]은 일반범죄 전체 피해자 중 연령별 피해자 비율 현황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30대와 40대의 비중이 뚜렷하게 높았지만, 최근에는 20세 이하와 61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연령대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50대(51세~60세)와 61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 비율이 증가세를 보여 인구구조 고령화와 맞물려 일반범죄 피해자도 50대 이상 연령에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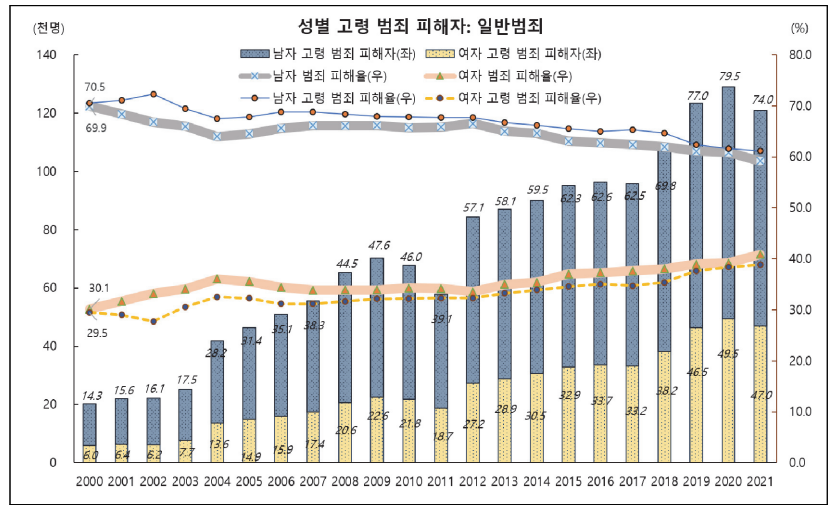
[그림 3-8]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일반범죄



주: 연령별 피해 비율은 피해자 전체 인원(미상 포함) 중 연령별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9]는 남녀 범죄피해 비율 추세 및 61세 이상 고령 피해자 현황을 보여준다. 미상을 제외한 일반범죄 전체 피해자 중 남성 피해자가 여성에 비해 많고,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61세 이상 고령 피해자도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하지만 여성 고령 피해자는 2000년에 비해 2021년에 약 8배 증가하여 5배 증가에 그친 남성 피해자보다 증가폭이 크다. 2000년 남녀 고령 피해자 비중을 보면, 남성 피해자가 약 7할이었지만, 2021년에는 남자와 여자 비중이 거의 6:4 수준으로 점차 좁혀지고 있다. 가령, 2000년에는 남녀 피해 비율 차이가 41%p였지만, 2021년에는 22%p로 차이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61세 이상 일반범죄 피해자 중에서 여성 피해자 비중은 2000년 29.5%에서 2021년 38.9%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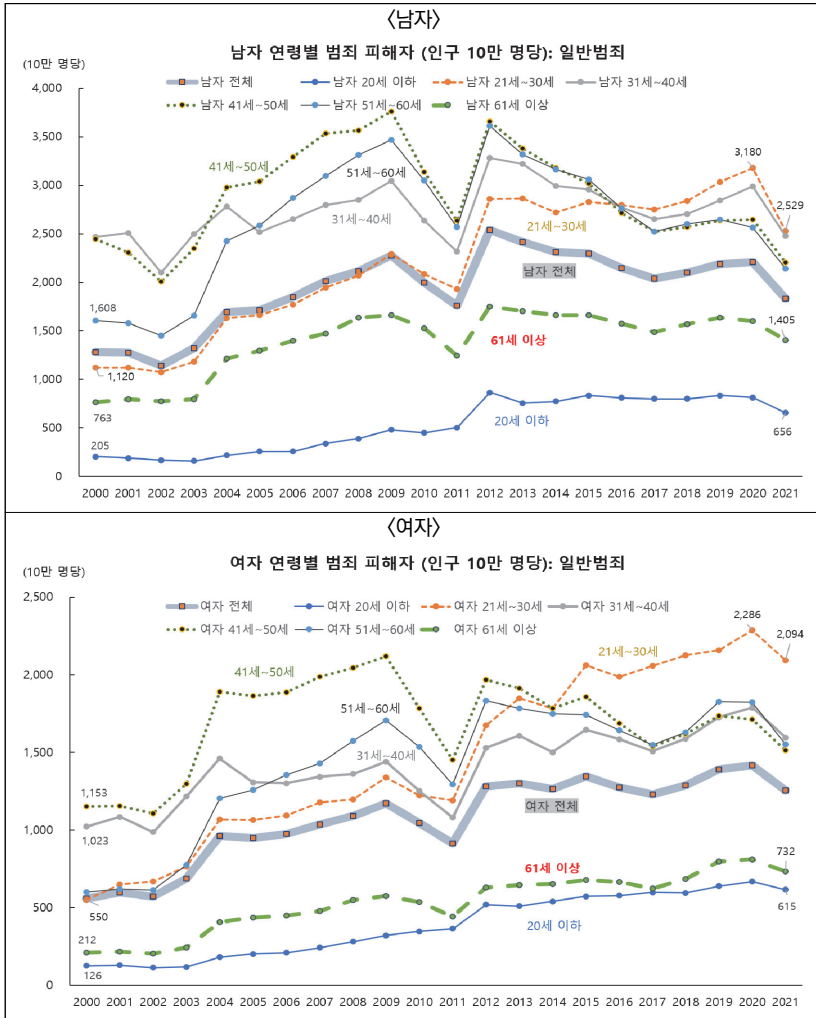
[그림 3-9] 성별 고령 범죄피해자: 일반범죄



주: 성별 고령 범죄피해자(이탈릭제)는 해당 성별의 피해 인원 절대 수준이고, 성별 고령 범죄피해율은 61세 이상 전체 피해자에서 각 성별 고령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성별 범죄피해율은 미상을 제외한 인원에서 각 성별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10]은 일반범죄를 대상으로 성별 인구 10만 명당 연령별 피해자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22년 동안 ‘남자 전체’를 포함하여 대부분 연령대에서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 대폭 감소한 이후 최근으로 올수록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21세~30세)는 2009년까지 남자 전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 ‘남자 전체’ 피해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20대가 인구 10만 명당 가장 많은 피해자를 기록했다. 61세 이상 고령자 역시 다른 연령대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최근 2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

[그림 3-10]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현황: 일반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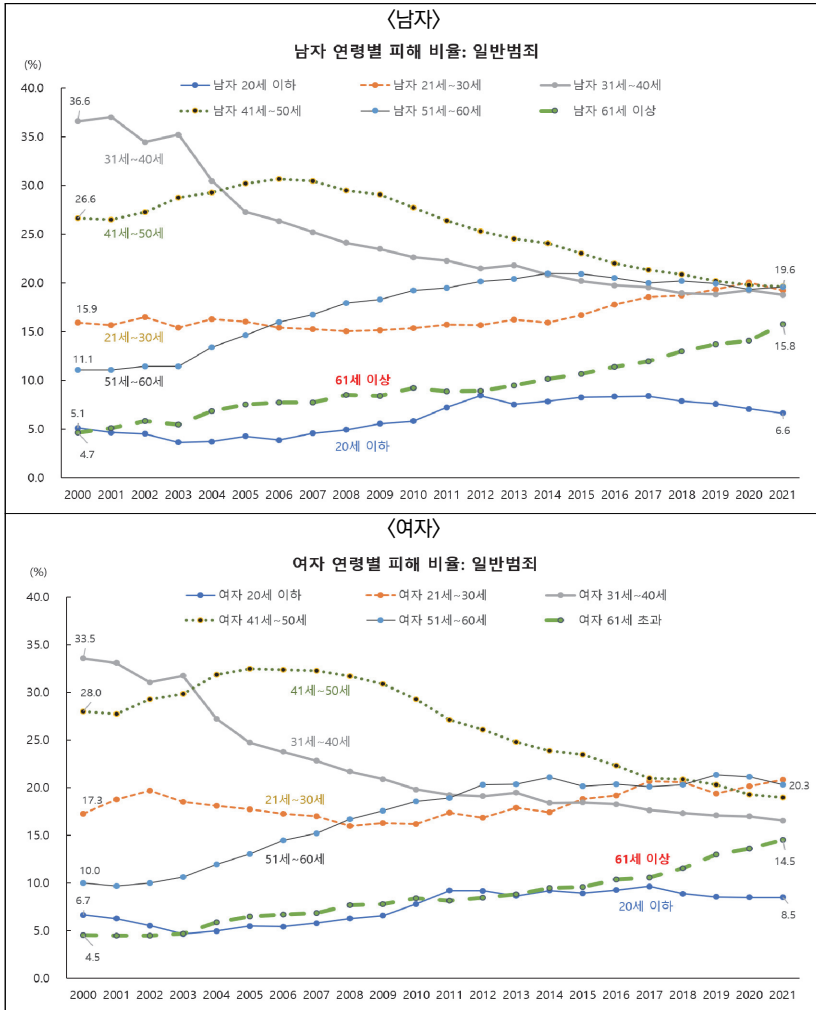
주: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자는 성별 각 연령의 인구 10만 명 대비 범죄피해 인원을 나타냄. 이때, 연도별 각 연령 인구는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를 사용하였음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여자의 인구 10만 명당 연령별 피해자 추세는 2011년까지는 전반적으로 남자와 비슷하지만, 2012년 이후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성 피해자는 해당 기간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성 피해자는 전반적으로(등락을 거듭하지만) 유지되고 있다. 특히 20세 이하와 20대(21세~30세)는 증가세가 눈에 띈다. 2013년까지 40대(41세~50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지만, 2014년에 20대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한 이후 역전당하며 최근에는 감소세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2000년에 20대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는 550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약 4배 증가한 2,094명이다. 20세 이하 역시 2021년에 2000년과 대비하여 약 5배 증가하였다. 61세 이상 여성 일반범죄 피해자도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대체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종합하면, 일반범죄에서 젊은 층(20세 이하와 20대)과 50대 이상(50대와 61세 이상) 여성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3-11]은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이다. 남자와 여자의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50대(51세~60세)와 61세 이상 고령자의 일반범죄 피해 비율이 남녀 모두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3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연령층인 20세 이하, 20대, 50대, 60대에서는 주춤하거나 증가세를 보여 범죄피해 비율의 연령분포가 과거보다 완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연령에 따른 범죄피해 비율의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림 3-11]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일반범죄



주: 성별 및 연령별 피해 비율은 범죄피해자 전체 인원(미상 포함) 중 해당 성별 및 연령별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3. 성별 및 연령별 행정범죄 피해 현황

행정범죄는 형법준용죄명을 제외한 특별법들의 위반행위를 지칭한다. <표 3-4>는 행정범죄의 지난 20여 년간 피해자 규모이다. 피해자 합계에서는 2016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이후 주춤하며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3년까지는 30만 명 내외 규모였지만, 2014년에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약 92만 명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연령별 피해자 인원은 2013년과 2014년에 큰 폭의 변화가 없는데, 이는 성별 미상과 전체 미상 인원이 증가한 결과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초과 고령층의 행정범죄 피해는 200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2000년 행정범죄의 고령 피해자는 약 1만 8천 명으로 전체 행정범죄 피해자 중 6%를 차지하였고, 2021년에는 약 2.3배 증가한 4만 명이지만 비율은 2000년에 비해 1%p 증가한 7%를 기록하였다. 61세 이상 고령 피해자와 다른 연령을 비교해보면, 2000년에는 고령 피해자가 20세 이하보다 적었지만, 2021년에는 20세 이하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연령별 피해자 인원을 살펴보면, 20세 이하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약 4만 명 수준으로 비슷하다. 50대 이상에서만 2000년 대비 2021년에 피해자 규모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감소하였다.

<표 3-4> 행정범죄 연령별 피해자 인원: 2000년~2021년

(단위: 명)

연령 연도	합계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2000	289,457	29,359	56,598	99,116	58,705	27,949	17,730
2001	283,892	26,492	52,802	101,799	56,566	25,340	20,893
2002	236,938	21,391	42,971	83,679	48,052	20,638	20,207

연령 연도	합계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2003	258,805	19,246	45,811	87,357	64,651	21,849	19,891
2004	348,152	31,253	65,999	104,086	81,215	39,576	26,023
2005	318,052	27,218	56,974	73,603	74,003	37,809	29,836
2006	350,813	27,463	61,824	83,114	87,213	44,270	36,480
2007	369,363	31,084	66,628	84,311	91,859	51,383	39,543
2008	421,299	32,595	72,438	101,116	105,072	59,092	45,360
2009	414,451	32,192	65,698	90,071	103,565	64,419	52,354
2010	377,114	25,854	50,617	65,203	75,788	54,055	38,477
2011	380,385	14,358	29,153	39,170	43,207	34,131	20,040
2012	424,203	33,248	67,303	92,162	96,667	77,674	44,112
2013	395,804	28,415	60,449	88,959	93,078	76,533	44,269
2014	917,626	27,302	61,017	92,325	92,203	80,445	48,030
2015	972,970	28,931	64,885	98,184	101,323	86,539	53,011
2016	1,002,601	27,532	60,451	85,458	88,210	81,629	54,495
2017	866,011	25,764	50,920	66,037	69,839	68,033	51,254
2018	749,792	24,013	45,592	53,835	58,786	58,673	50,696
2019	726,289	24,441	44,522	51,236	54,182	56,121	53,179
2020	670,141	23,529	47,427	50,760	51,685	52,901	48,901
2021	613,918	26,658	40,623	42,929	42,195	41,910	40,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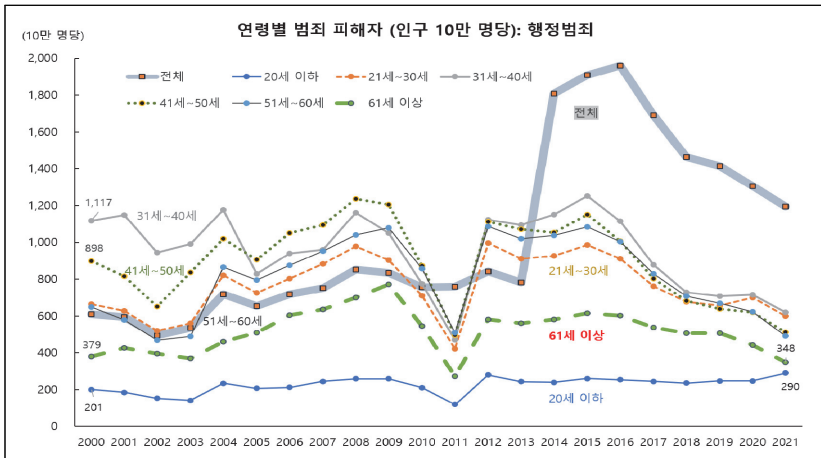
주: 2005년부터 연령별·성별 미상 자료가 공표되었음. 위 표는 피해자 인원에 미상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2005년부터 연령별 피해 인원의 합이 합계와 맞지 않음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12]는 각 연령의 인구 10만 명당 행정범죄 피해 인원의 추세이다. 인구 10만 명당 행정범죄 전체 피해 인원은 2013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4년에 큰 폭(약 131%)으로 증가한 이후 최근에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이하에서는 2012

년 이후 주춤하며 2021년에 다소 증가한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감소세가 눈에 띈다. 일반범죄와 같이 2000년대 초반에는 3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지만, 2021년에는 20세 이하와 61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3-12]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현황: 행정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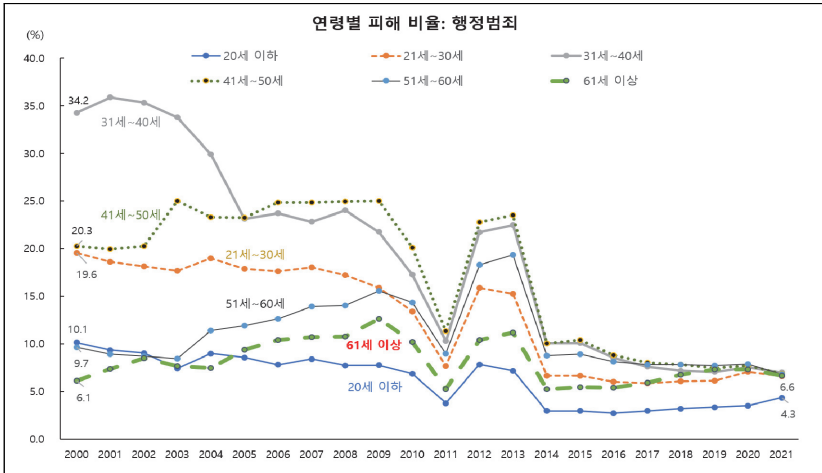


주: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자는 각 연령의 인구 10만 명 대비 범죄피해 인원을 나타냄. 이때, 연도별 각 연령 인구는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를 사용하였음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13]은 행정범죄 전체 피해자 중 연령별 피해자 비율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30대의 비중이 뚜렷하게 높았다. 그러나 2005년까지 하락한 후 2008년까지 주춤, 이후 큰 등락을 거듭하며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2010년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2021년 20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행정범죄 피해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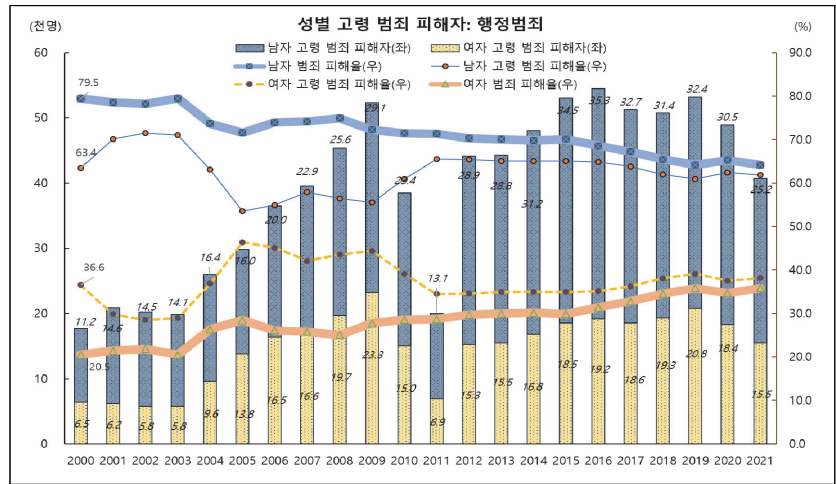
[그림 3-13]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행정범죄



주: 연령별 피해 비율은 피해자 전체 인원(미상 포함) 중 연령별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14]는 행정범죄의 남녀 피해 비중과 61세 이상 성별 고령 피해자 추세이다. 행정범죄 역시 (미상을 제외한) 전체 피해자 중 남성 피해자가 여성보다 높다. 고령 피해자의 절대 규모도 남자가 많으며, 전체 범죄 및 일반범죄와 달리 2000년대 초반에는 남녀 비율 차이가 늘어났지만, 이후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그 차이가 조금 줄어들다 다시 차이를 벌였다. 2000년 남녀 고령층의 비중을 보면, 남성 고령 피해자가 약 63%였으나 2021년에는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들어 2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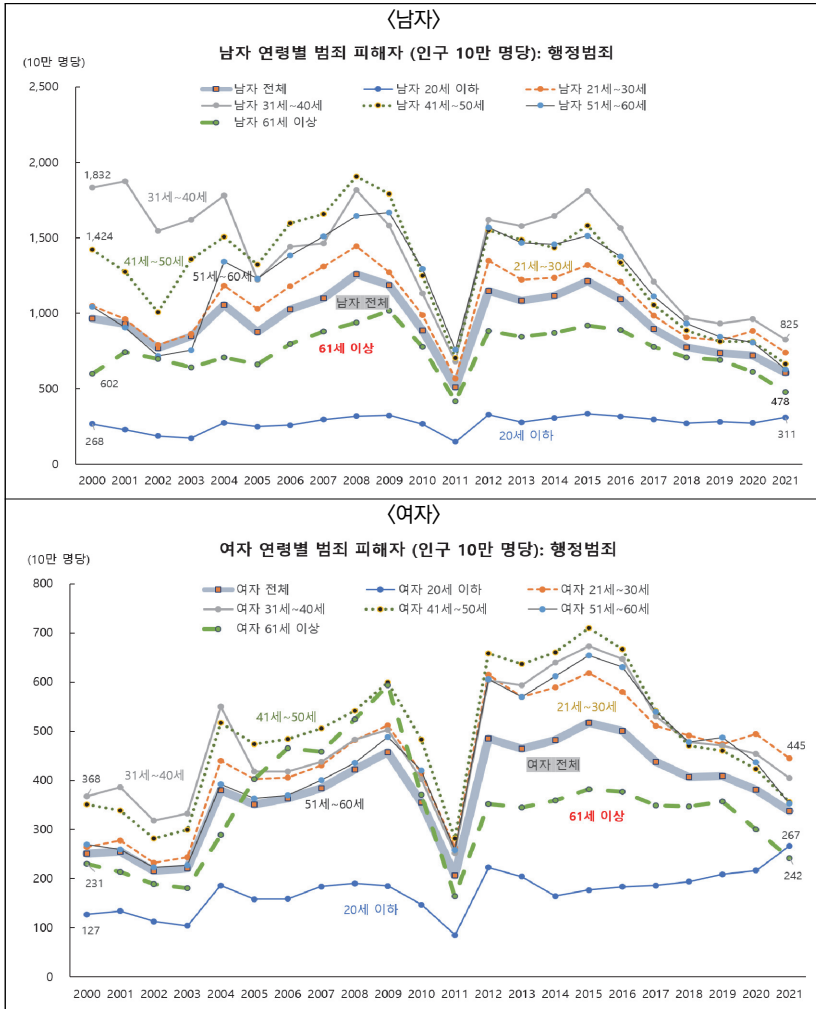
[그림 3-14] 성별 고령 범죄피해자: 행정범죄



주: 성별 고령 범죄피해자는 해당 성별의 피해 인원 절대 수준이고, 성별 고령 범죄피해율은 61세 이상 피해자에서 성별 고령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성별 범죄피해율은 미상을 제외한 인원에서 성별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15]는 행정범죄를 대상으로 성별 인구 10만 명당 연령별 피해자 추세이다. 지난 22년 동안 ‘남자 전체’를 포함하여 (20세 이하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령대에서 비슷한 모습이다. 특히 2000년대에는 각 연령대의 추이가 달랐지만, 2011년 이후에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규모도 점차 비슷해지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는 큰 폭의 변화 없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61세 이상 고령자 역시 다른 연령대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최근 5~6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

[그림 3-15]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현황: 행정범죄



주: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자는 성별 각 연령의 인구 10만 명 대비 범죄피해 인원을 나타냄. 이때, 연도별 각 연령 인구는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를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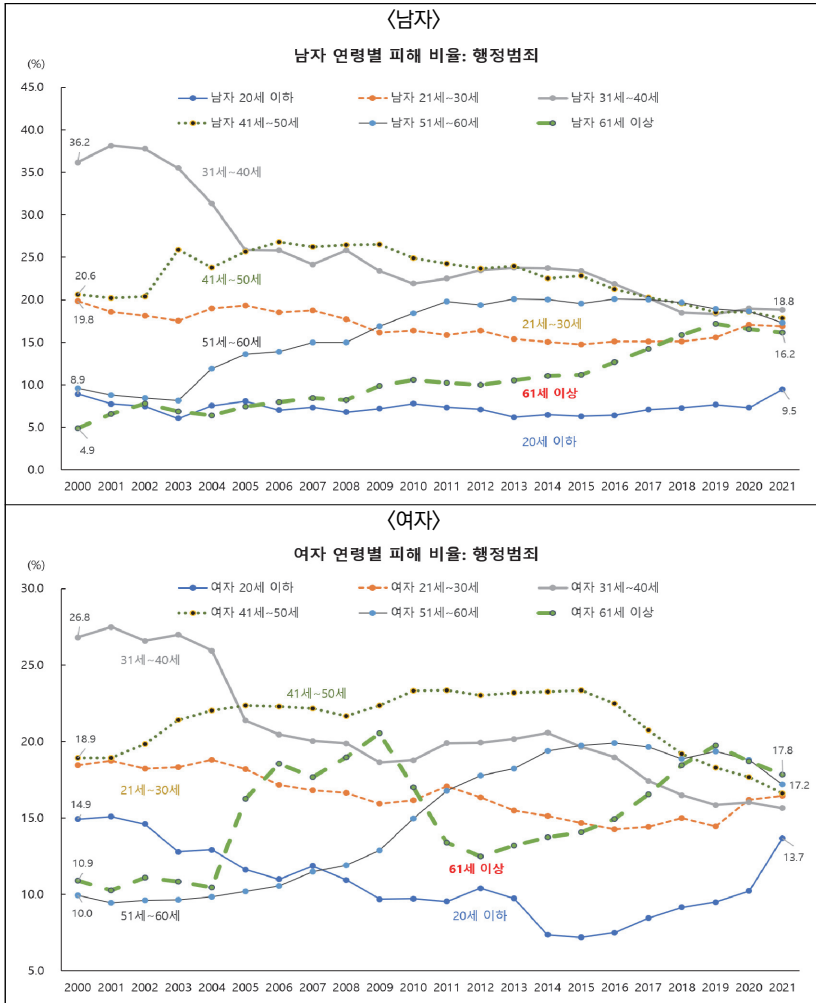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여자 인구 10만 명당 연령별 피해자 추세는 전반적으로 남자와 비슷하지만, 20세 이하 연령대에서 최근에 좀 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2000년대 초반 ‘여자 전체’를 비롯하여 (61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다른 연령층에서는 대체로 유사한 패턴이지만, 61세 이상에서는 좀 더 뚜렷한 증가세가 관찰된다. 2010년대 초반 이후에는 61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규모도 전체 평균에 비해 작아졌고 추세도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 61세 이상 고령자의 2022년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규모는 242명으로 20세 이하(267명)보다도 작다.

[그림 3-16]은 남자와 여자의 연령별 행정범죄 피해 비율이다. 우선, 남자의 연령별 피해 비율을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3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2005년부터 40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50대와 60대의 피해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자의 경우 50대의 행정범죄 피해 비율이 좀 더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된다. 61세 이상 고령층은 2000~2004년까지 주춤하였지만, 이후 2009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0년과 2011년에 큰 폭의 감소세를 경험한 이후 최근까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1년의 61세 이상 고령층의 행정범죄 피해 비율이 17.8%로 다른 연령을 제치고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림 3-16]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행정범죄



주: 성별 및 연령별 피해 비율은 범죄피해자 전체 인원(미상 포함) 중 해당 성별 및 연령별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제3절 고령자의 범죄피해 현황과 특징: 주요 범죄 기준

이 절에서는 형법범죄의 세부 분류 중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다고 알려진 강력범죄(흉악, 폭력)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고령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알려진 재산범죄를 세부 항목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성별 및 연령별 재산범죄 피해 현황

재산범죄는 보이스피싱처럼 고령자들이 주로 표적이 되는 경제적 범죄 유형이다. 2021년 기준으로 재산범죄는 일반범죄의 약 63%로 일반범죄의 하위분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20여 년간 재산범죄의 피해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표 3-5>). 전체 합계와 각 연령에서 모두 2021년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61세 이상 고령층의 감소폭(-6.4%)은 (두 자릿수를 기록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특징이다.

연령별로 보면, 2000년 대비 2021년 재산범죄 피해 인원이 모든 연령에서 증가했지만, 특히 61세 이상과 20세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많이 증가했다. 61세 이상은 7.5배, 20세 이하는 6.4배 증가했다. 2000년 재산범죄의 고령 피해자는 약 1만 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4.9%를 차지하였으나, 2021년에는 13.8%를 차지하며 약 8만 명 수준이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비대면 상황에서 경제적 목적의 재산범죄에 고령층이 더욱 취약하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3-5〉 재산범죄 연령별 피해자 인원(2000~2021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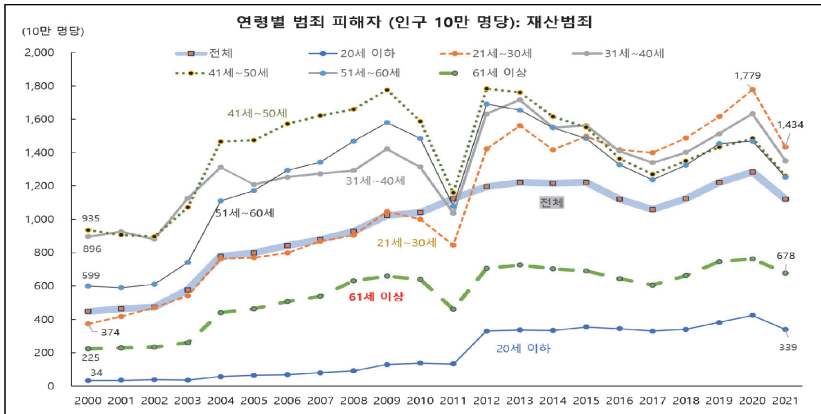
연령 연도	합계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2000	213,685	4,905	31,806	79,523	61,149	25,800	10,502
2001	222,350	5,051	35,143	82,126	62,953	25,850	11,227
2002	227,596	5,456	39,026	77,895	66,282	26,954	11,983
2003	278,690	4,963	44,282	99,306	82,920	33,136	14,083
2004	377,531	7,610	61,286	116,115	116,755	50,921	24,844
2005	389,180	8,486	60,610	107,413	120,359	55,877	27,249
2006	412,141	8,872	61,542	110,961	130,570	65,434	30,740
2007	431,510	10,192	65,618	111,942	136,341	72,386	33,550
2008	458,662	11,636	67,001	112,688	141,052	83,588	40,952
2009	508,290	16,060	76,095	121,883	152,744	94,435	44,685
2010	518,969	17,025	71,250	110,567	137,979	93,624	45,181
2011	563,451	16,200	58,557	86,182	101,020	72,325	33,819
2012	601,813	39,392	96,144	134,163	155,055	120,892	53,564
2013	618,014	39,320	103,802	139,506	153,079	124,341	57,344
2014	617,119	38,173	93,307	124,366	141,480	120,199	57,952
2015	622,126	39,613	98,541	122,521	136,578	118,315	59,447
2016	573,445	37,469	94,112	108,120	119,570	107,761	58,317
2017	542,336	34,861	93,678	100,916	110,583	101,692	57,661
2018	576,937	34,791	100,396	103,542	116,432	110,033	66,335
2019	627,430	37,787	109,579	109,810	121,588	122,138	78,568
2020	659,058	40,546	120,682	116,148	123,685	124,781	84,596
2021	575,332	31,234	97,188	93,343	103,818	106,692	79,188

주: 2005년부터 연령별·성별 미상 자료가 공표되었음. 위 표는 피해자 인원에 미상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2005년부터 연령별 피해 인원의 합이 합계와 맞지 않음. 재산범죄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로 구성됨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17]은 인구 10만 명당 재산범죄 피해 인원이다. 인구 10만 명당 재산범죄의 전체 피해자는 지난 22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약 5%씩,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세 이하를 제외하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20대의 최근 피해 규모가 눈에 띈다. 비록 2021년에는 전년 대비 하락하였지만, 2017년부터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30대~5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최근 20대의 범죄피해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61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 10만 명당 피해 인원 추세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한편, 20세 이하 역시 지난 22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2012년에 상승폭이 이전에 비해 컸다가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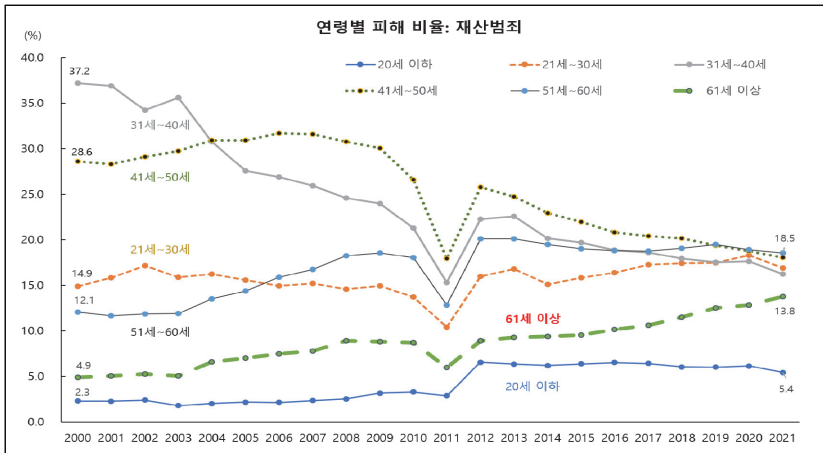
[그림 3-17]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현황: 재산범죄



주: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자는 각 연령의 인구 10만 명 대비 범죄피해 인원을 나타냄. 이때, 연도별 각 연령 인구는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를 사용하였음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18]은 재산범죄 전체 피해자 중 연령별 피해자 비율이다. 일반범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2000년대 초반에는 30대와 40대의 비중이 뚜렷하게 높았지만, 최근에는 20세 이하와 61세 이상을 제외하면 다른 연령층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 비율이 증가세를 보여 인구구조 고령화와 맞물려 재산범죄 피해자도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8]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재산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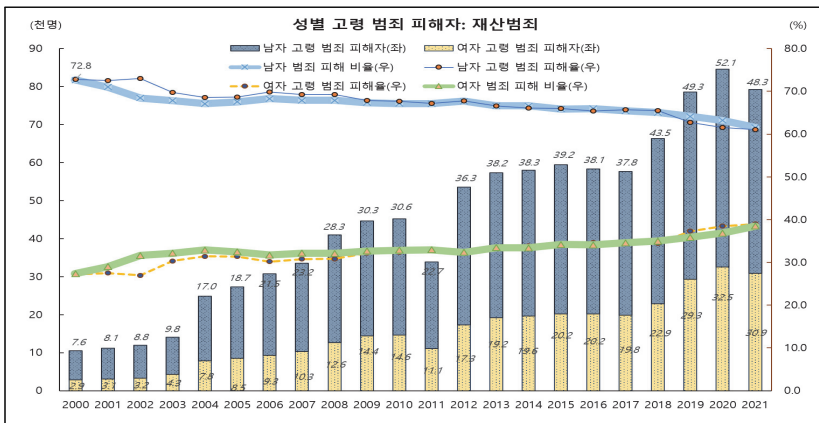


주: 연령별 피해 비율은 피해자 전체 인원(미상 포함) 중 연령별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19]는 남녀 피해자 비중 및 61세 이상 성별 고령 피해자 현황이다. 앞에서 설명한 일반 및 행정 범죄와 같이 (미상을 제외한) 전체 재산범죄 피해자 중 남성 피해자가 여성보다 많다. 고령층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 고령 피해자는 2000년에 비해 2021년

에 약 11배 증가하여 6배 증가한 남성 고령 피해자보다 증가폭이 더 크다. 2000년 남녀 고령층 피해 비중을 보면, 남성 고령 피해자가 약 73%였지만, 2021년에는 남자와 여자 비중이 거의 60:40 수준으로 점차 좁혀지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61세 이상 전체 피해자 중에서 여성 피해자 비중은 2000년 27.2%에서 2021년 39.2%로 높아졌다. 성별 격차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2000년 46%p에서 2021년 22%p로 줄어 들었다.

[그림 3-19] 성별 고령 범죄피해자: 재산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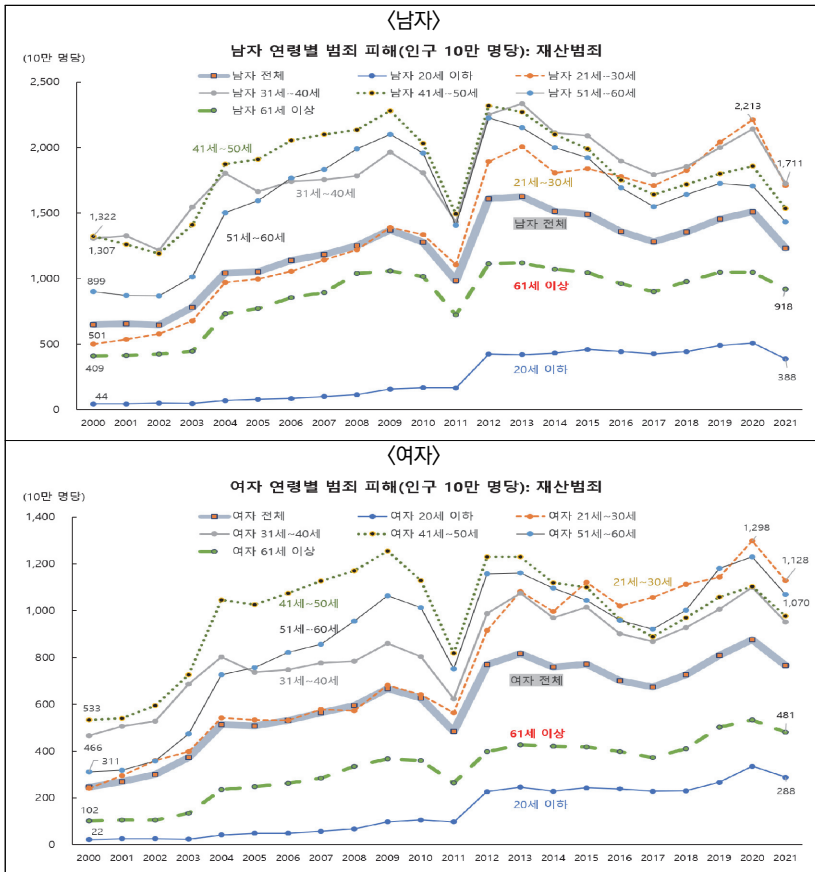


주: 성별 고령 범죄피해자는 해당 성별의 피해 인원 절대 수준이고, 성별 고령 범죄피해율은 61세 이상 전체 피해자에서 성별 고령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성별 범죄피해율은 미상을 제외한 인원에서 성별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20]은 재산범죄를 대상으로 성별 인구 10만 명당 연령별 피해 추세이다. 지난 22년 동안 ‘남자 전체’를 포함하여 대부분 연령대에서 비슷한 추세가 관찰된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

가, 2011년에 대폭 감소한 이후 최근으로 올수록 등락을 거듭하며 대체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그림 3-20]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현황: 재산범죄



주: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자는 성별 각 연령의 인구 10만 명 대비 범죄피해 인원을 나타냄. 이 때, 연도별 각 연령 인구는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를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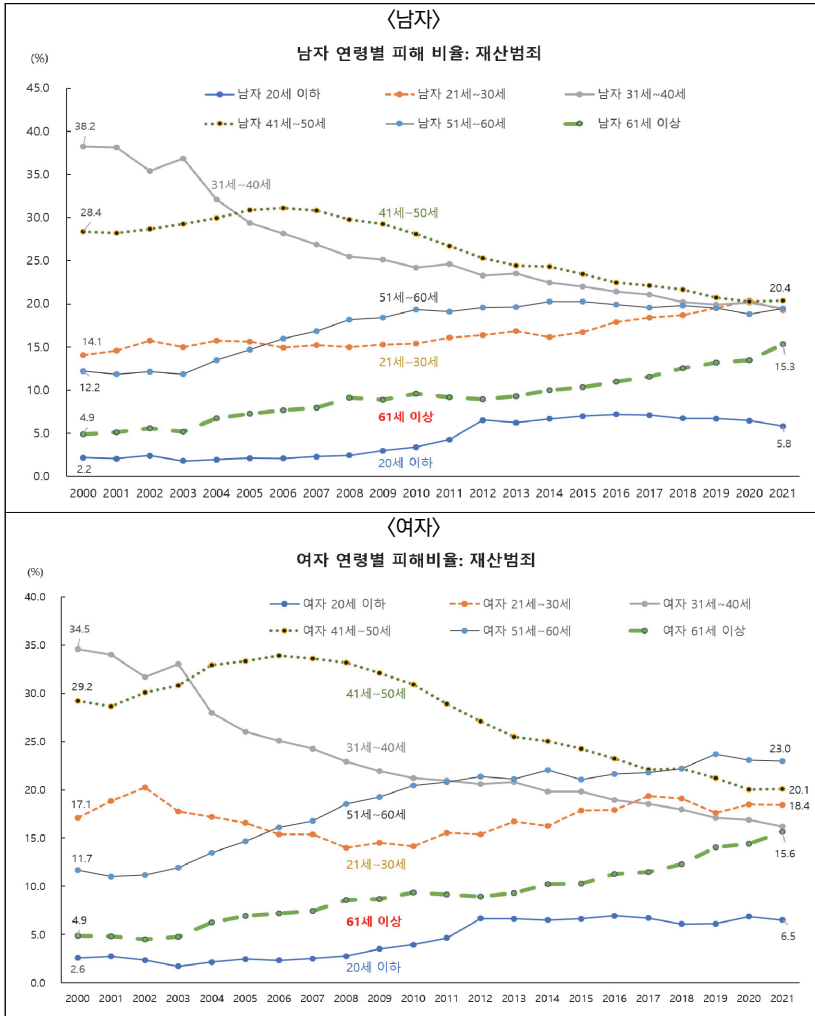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연령별로 보면, 20대(21세~30세)는 2011년까지 남자 전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부터 2021년까지는 등락을 거듭하지만, 남자 전체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가장 높은 피해자를 기록했다. 61세 이상 고령자 역시 다른 연령대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남자 전체’와의 차이가 지난 22년 동안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000년에 고령층은 인구 10만 명당 409명이었고, 2021년에는 약 2.2배 증가한 918명을 기록하였다. 20세 이하는 절대 규모는 제일 작지만, 2021년에 인구 10만 명당 388명으로 2000년에 비해 약 9배 증가하였다.

여자의 인구 10만 명당 연령별 피해자 추세도 남자와 비슷하다.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 10만 명당 재산범죄 피해자는 증가 추이를 보인다. 남자와 비슷하게 20대의 2010년대 후반의 피해 규모는 두드러지게 증가한 모습이며, 61세 이상 고령층과 20세 이하는 2011년 이후 매우 비슷한 증가 패턴을 보인다. 20세 이하 연령층은 2021년 288명으로 2000년과 대비하여 약 9배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21]은 남자와 여자의 연령별 피해 비율이다. 남자와 여자의 연령별 피해 비율은 대체로 비슷하며, 주목할 만한 부분은 50대와 61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범죄 피해 비율이 남녀 모두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자의 재산범죄 피해 비율에서 이러한 증가 추세가 남자보다 뚜렷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30대와 40대가 확연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후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났다. 즉 20세 이하와 51세 이상 연령 그룹에서는 재산범죄의 남녀 피해 비중이 증가한 반면, 그 외 연령층인 20대, 30대, 40대에서는 감소 또는 주춤하는 모습이다.

[그림 3-21]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재산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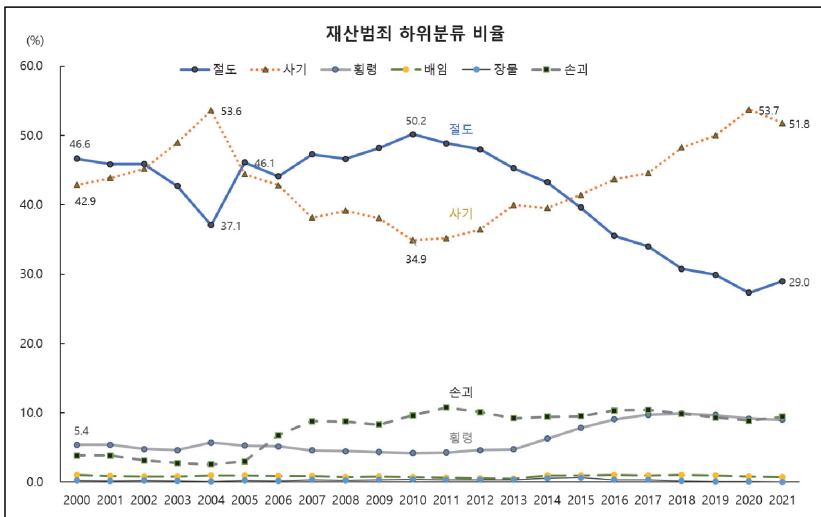


주: 성별 및 연령별 피해 비율은 피해자 전체 인원(미상 포함) 중 해당 성별 및 연령별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재산범죄 하위범죄 유형인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의 고령층 피해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그림 3-22]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가 전체 재산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지난 22년 동안 사기와 절도 범죄가 전체 재산범죄의 약 85%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높다. 그러나 추이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절도는 2000년에 재산범죄에서 약 47%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으나 2010년 이후 뚜렷한 하락세이다. 반면 사기범죄는 2010년 이후로 확연한 증가세를 보인다. 그 외 재산범죄의 하위 분류인 손괴 7.7%, 배임 0.8%, 장물 0.3%로 그 비중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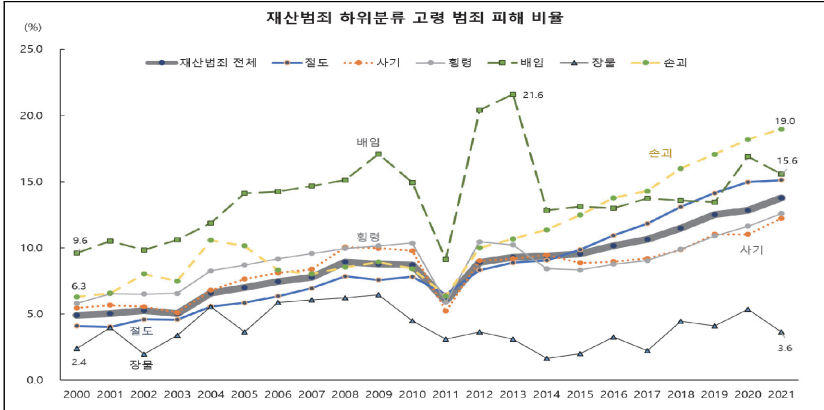
[그림 3-22] 재산범죄의 하위유형이 차지하는 비중



주: 재산범죄 각 하위분류 비율은 재산범죄 전체 피해자 중 각 세부분류 피해자가 차지하는 인원임 (%) . 재산범죄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로 구성됨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23] 재산범죄 하위분류별 고령 범죄피해 비율



주: 재산범죄 하위분류별 고령 피해 비율은 재산범죄 피해자 전체 인원(미상 포함) 중 각 하위분류 범죄의 60세 초과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재산범죄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로 구성됨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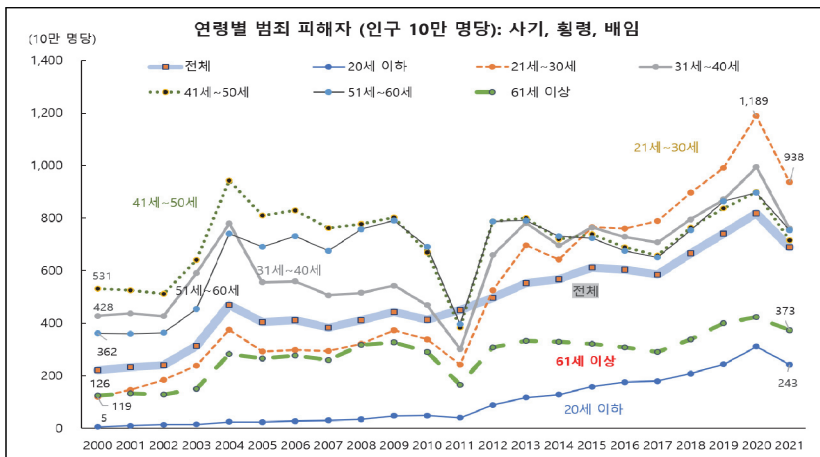
[그림 3-23]은 재산범죄의 하위유형별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이다. 장물을 제외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손괴의 고령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언론보도 등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범죄(예: 보이스피싱 등)를 자주 접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보이스피싱 등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소식은 더 이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령자들은 정보기기 사용 미숙, 낮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인해 (타 연령층에 비해)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 현황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사기·횡령·배임이 가장 유사한 범죄군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세 가지 유형의 범죄를 합하여 고령층의 범죄피해 현황을 살펴본다.

[그림 3-24]는 사기·횡령·배임의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추이이다. 세 가지 유형의 범죄 ‘전체’ 피해자 추세를 보면, 2000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 패턴은 모든 연령에서 나타났다.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세 이하와 2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세 이하는 비록 규모 자체는 가장 작지만, 매년 평균 24%씩 증가하였다. 20대 역시 평균 13.7%씩 매년 증가하였는데, 특히 인구 10만 명당 피해 인원 규모가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 61세 이상은 2000년 인구 10만 명당 126명에서 2021년 373명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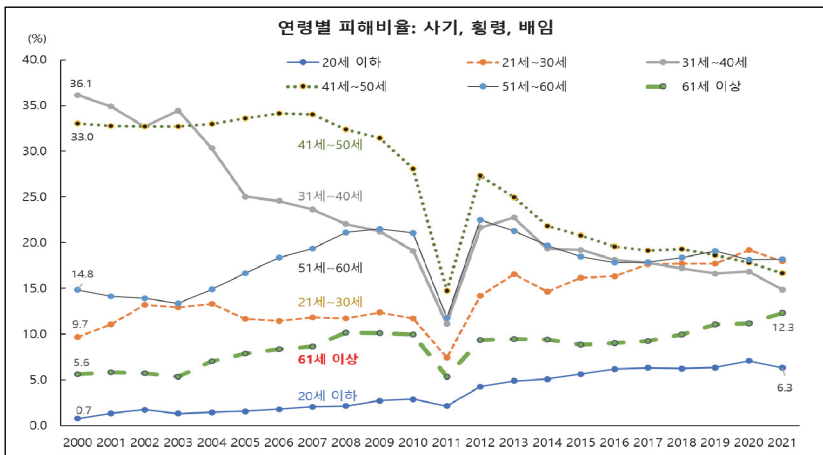
[그림 3-24]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현황: 사기, 횡령, 배임



주: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자는 각 연령의 인구 10만 명 대비 범죄피해 인원을 나타냄. 이때, 연도별 각 연령 인구는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를 사용하였음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25]는 사기·횡령·배임 범죄의 연령별 피해 비율의 추세이다. 30대와 40대는 2000년대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대부터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20세 이하, 20대, 61세 이상의 피해 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전체 피해자와 대체로 유사한 패턴이다.

[그림 3-25]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사기·횡령·배임



주: 연령별 피해 비율은 피해자 전체 인원(미상 포함) 중 연령별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이상의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로는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자료를 이용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살펴 보았다.

금융감독원의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및 주요 특징’ 보도자료

를 정리한 <표 3-6>을 보면, 2022년 연령별 피해금액은 연령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모습이며, 60대 이상이 673억 원(46.7%)으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477억 원(33.1%)으로 그다음을 차지하여 두 연령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타 연령대의 비중 및 피해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다.¹⁸⁾

<표 3-6>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단위 : 억 원, %, %p)

구 분	2020년		2021년(A)		2022년(B)		증감(B-A)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대 이하	66	(2.8)	52	(3.1)	92	(6.4)	40	3.3
30대	243	(10.5)	121	(7.3)	53	(3.7)	△68	△3.6
40대	485	(20.9)	219	(13.2)	145	(10.1)	△74	△3.1
50대	843	(36.3)	650	(39.3)	477	(33.1)	△173	△6.2
60대 이상	683	(29.4)	612	(37.0)	673	(46.7)	61	9.7
합계	2,320	(100.0)	1,654	(100.0)	1,440	(100.0)	△214	-

주: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제외) 기준(법인 피해자 제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자금의 송금·이체를 보이스피싱 피해로 집계하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대면편취형 및 재화·용역을 가장한 사기는 미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총괄팀. (2023.4.21.), p.2.

2. 성별 및 연령별 강력(흉악)범죄 피해 현황

강력(흉악)범죄는 형법범죄의 하위 범죄 유형 중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강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강력(흉악)범죄의 90%를 넘는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강력(흉악)범죄의 피해자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피해자는 2000년 약 1만 1천 명에서 2021년 3만 5천 명으로 3.2배

18) 2019년 60대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은 26.5%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증가하였다. 증가율로 계산해보면, 매년 6.2%씩 피해자가 증가하였다.

〈표 3-7〉 강력(흉악)범죄 연령별 피해자 인원(2000~2021년)

(단위: 명)

연령 연도	합계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2000	10,926	3,102	2,701	2,522	1,664	532	405
2001	11,576	2,703	3,382	2,849	1,693	585	364
2002	10,696	2,546	3,103	2,442	1,678	546	381
2003	13,157	2,773	3,998	3,032	2,224	699	431
2004	17,687	3,886	5,431	3,602	3,064	1,061	643
2005	18,860	4,244	5,948	3,187	3,218	1,201	785
2006	20,038	4,641	6,457	3,271	3,316	1,269	822
2007	20,449	5,026	6,444	3,246	3,416	1,398	831
2008	22,430	5,682	6,598	3,489	3,660	1,729	1,033
2009	25,188	6,374	7,425	3,816	4,133	2,129	1,026
2010	27,074	7,755	7,704	3,429	3,562	1,914	969
2011	28,854	8,513	8,697	3,723	3,738	2,315	1,111
2012	26,328	7,179	9,127	3,540	3,202	2,093	994
2013	29,911	7,361	10,298	4,140	3,536	2,567	1,117
2014	34,126	9,818	10,482	4,007	3,295	2,369	1,103
2015	35,139	9,293	11,072	4,054	3,387	2,410	1,215
2016	32,963	8,783	10,469	3,999	3,316	2,544	1,212
2017	36,030	9,513	12,225	4,210	3,320	2,479	1,237
2018	35,272	8,728	11,932	4,182	3,285	2,538	1,366
2019	35,066	8,614	11,857	4,440	3,365	2,591	1,413
2020	32,812	7,580	11,599	4,445	3,087	2,483	1,417
2021	35,126	8,213	12,796	4,468	2,766	2,165	1,414

주: 2005년부터 연령별·성별 미상 자료가 공표되었음. 위 표는 피해자 인원 미상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2005년부터 연령별 피해 인원의 합이 합계와 맞지 않음. 강력(흉악)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강간 등)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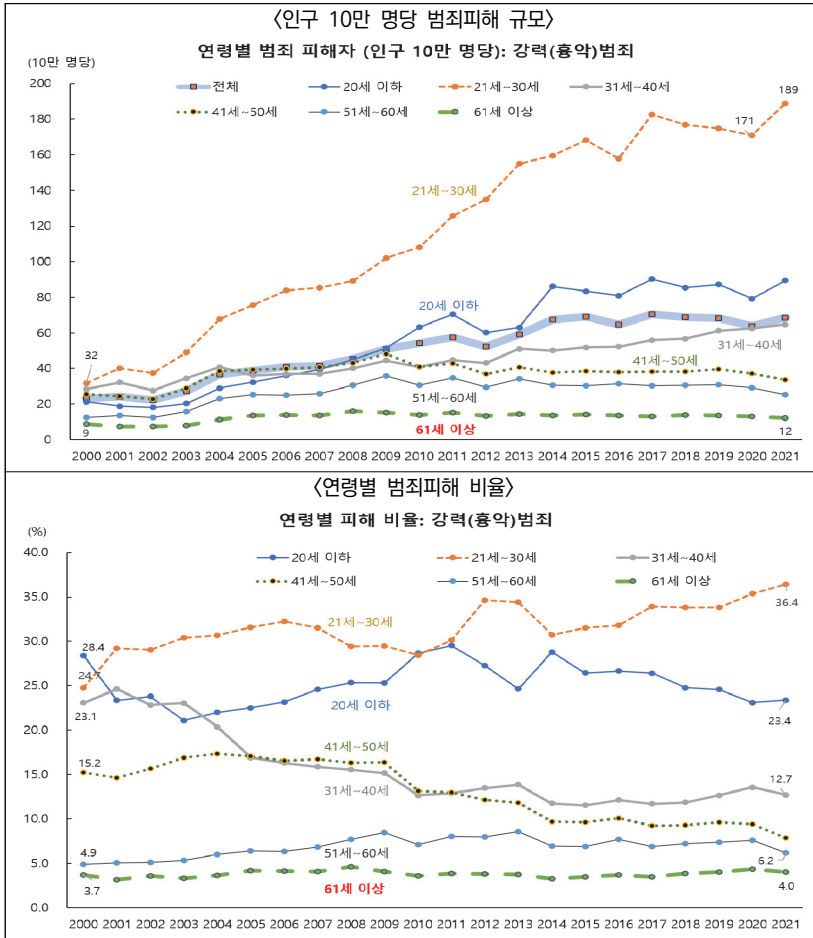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우려할 수준으로 증가폭이 크다. 2000년 약 2천 7백 명에서 2021년 1만 2천 명으로 약 5.6배 증가하였다. 연평균으로 계산해보면, 매년 8.2%씩 증가한 수준으로 (5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높다. 50대의 연평균 증가율은 8.0%로 20대에 이어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00년 대비 2021년의 연령별 피해자 규모 비교에서도 20대가 4.7배로, 50대 4.1배와 61세 이상의 3.5배에 비해 크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인 61세 이상 고령자의 강력(흉악)범죄피해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300~400명 수준이었지만, 2004년에 전년 대비 49.2% 증가하여 643명이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08년에 처음으로 1천 명을 넘어섰고, 그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력(흉악)범죄 전체 피해자에서 61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작다.

[그림 3-26]은 인구 10만 명당 강력(흉악)범죄 피해 인원과 비율 추이다. 인구 10만 명당 전체 피해자는 지난 22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약 6%씩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전체 피해자 인원에서도 확인했듯이 20대의 뚜렷한 증가세가 눈에 띈다. 20대는 2000년에 인구 10만 명당 32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무려 189명으로 6배 정도 증가했다. 20세 이하에서도 비록 20대와 같은 가파른 증가세는 아니지만,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61세 이상은 모든 연령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0명 안팎으로 큰 변화 없이 주춤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 피해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범죄와 재산범죄와는 다르게 20세 이하와 20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지난 22년 동안 20세 이하의 평균 비중은 25.2%, 20대는 31.5%이다. 특히 20대는 2000년 24.7%에서 2021년 36.4%로 약 12%p 증가하였다. 일반범죄와는 다르게 50대 이상의 피해 비율은 낮은 편으로 큰 등락의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림 3-26] 연령별 범죄피해 현황: 강력(흉악)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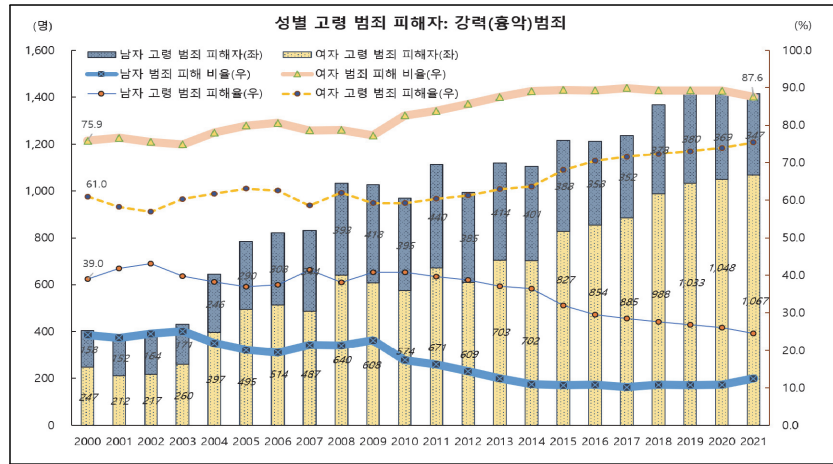
주: 1)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자는 각 연령의 인구 10만 명 대비 범죄피해 인원을 나타냄. 이때, 연도별 각 연령 인구는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를 사용하였음. 강력(흉악)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강간 등)으로 구성됨

2) 연령별 피해 비율은 강력(흉악)범죄 피해자 전체 인원 중 연령별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 (%)임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27]은 강력(흉악)범죄의 남녀 피해 비중 및 61세 이상의 성별 피해자 추세이다. 앞에서 살펴본 다른 범죄와는 달리 강력(흉악)범죄에서는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성 피해자가 남성보다 많다. 전체 피해자 중에서 여성 피해자의 비중은 2000년 약 76%에서 2021년 약 88%로 증가했다. 이는 강력(흉악)범죄에서 성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고, 또한 성폭력범죄의 90% 이상이 여성 피해자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고령 피해자의 성별 비중을 보더라도, 2000년 이후 여성 고령 피해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남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여성 피해자는 2000년에 비해 2021년 약 4.3배 증가하였으나 남성 피해자는 2.2배 증가에 그쳐 남녀 비중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그림 3-27] 성별 고령 범죄피해자: 강력(흉악)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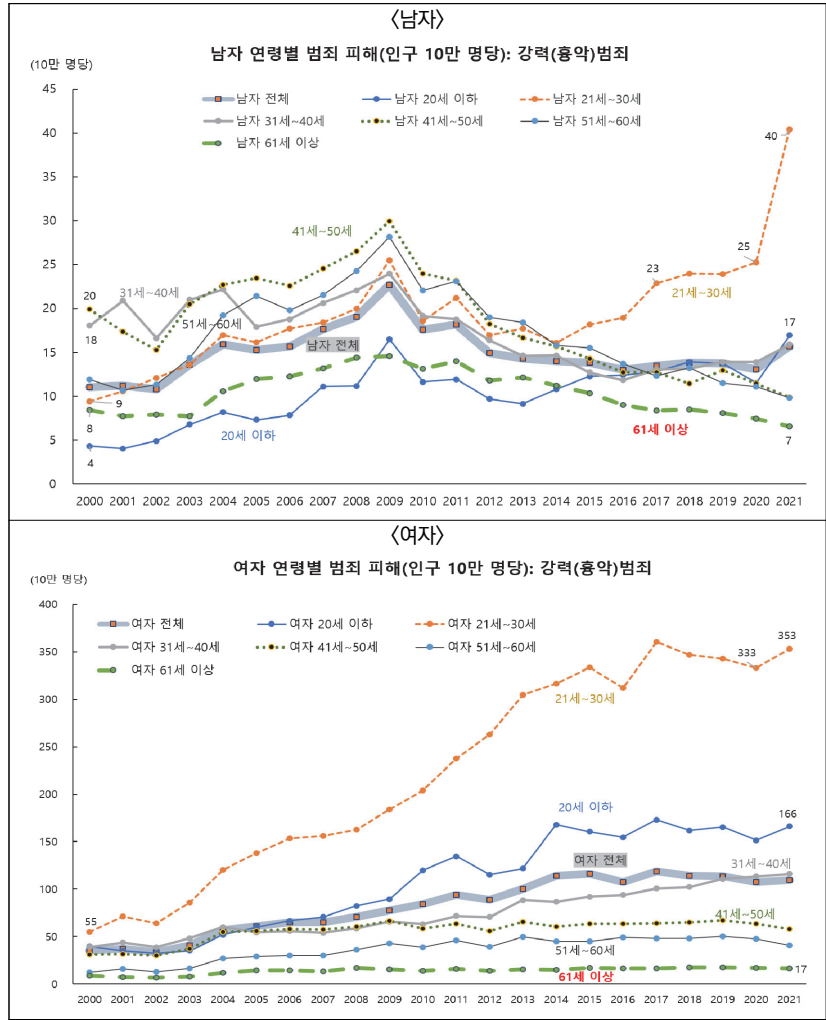
주: 성별 고령 범죄피해자는 해당 성별의 피해 인원 절대 수준이고, 성별 고령 범죄피해율은 61세 이상 전체 피해자에서 각 성별 고령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28]은 강력(흉악)범죄의 인구 10만 명당 성별 및 연령별 피해자 추세이다. 2000년~2009년까지는 61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남자 전체’를 포함하여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상이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 전체’를 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2011년부터 최근까지 대체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20세 이하 연령에서 전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연령별 비교하면, 20대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남자 전체와 비슷하게 증가세를 보인 후 2010년대 중반에는 주춤한 양상이었지만, 2021년에 전년 대비 무려 40.2%가 증가하였다. 20세 이하에서도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40대는 2009년 이후 뚜렷한 감소세로 나타났다. 61세 이상은 2000년~2009년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자 수가 2000년 8명에서 2021년 7명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또한 61세 이상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20세 이하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2015년 역전당한 후로 모든 연령층에서 절대 규모가 가장 작다.

여자의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추세는 남자와 매우 다르다. ‘여자 전체’를 비롯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20대와 20세 이하에서 증가세가 뚜렷하다. 2000년에 20대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는 55명으로 다른 연령과 큰 차이가 없지만, 2021년에는 무려 6배 이상(353명) 증가하였다. 20세 이하 연령층은 2021년 166명으로 2000년과 대비하여 큰 폭(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두 연령층에서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20대와 20세 이하가 각각 9.9%와 8.1%이다. 61세 이상 고령층은 피해 현황이 가장 낮지만, 평균적으로 매년 4%씩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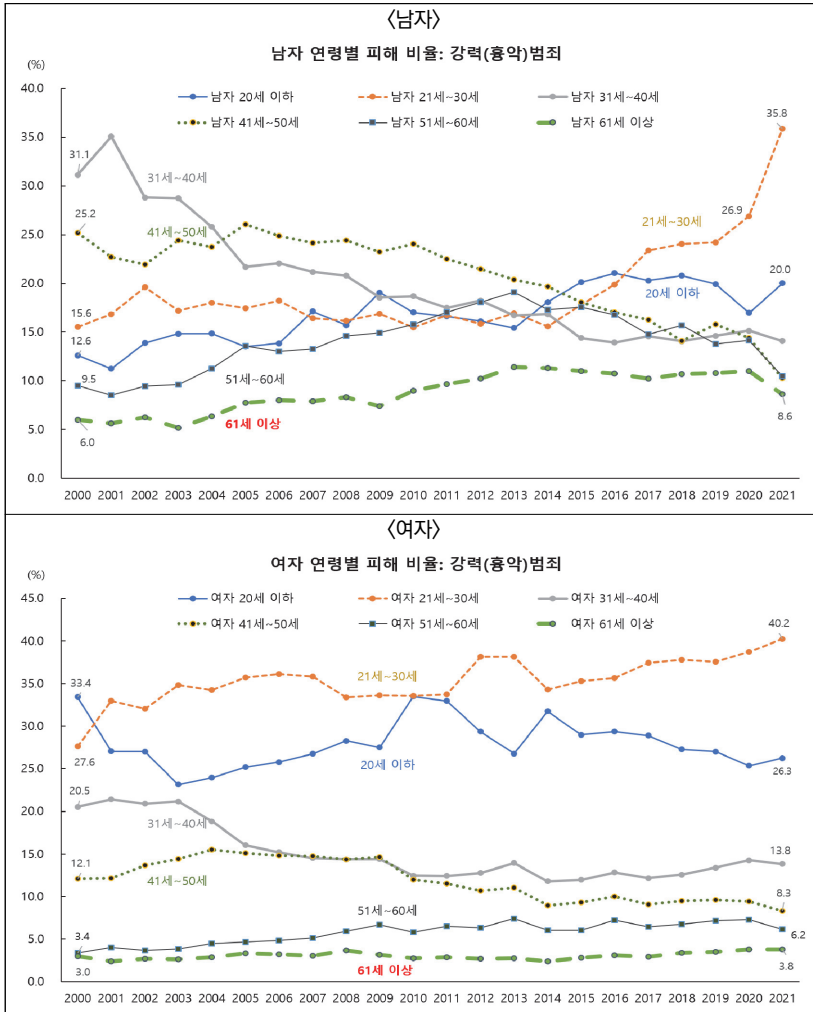
[그림 3-28] 성별 및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현황: 강력(흉악)범죄



주: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자는 성별 각 연령의 인구 10만 명 대비 범죄피해 인원을 나타냄. 이 때, 연도별 각 연령 인구는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를 사용하였음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29]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강력(흉악)범죄



주: 성별 및 연령별 피해 비율은 피해자 전체 인원(미상 포함) 중 해당 성별 및 연령별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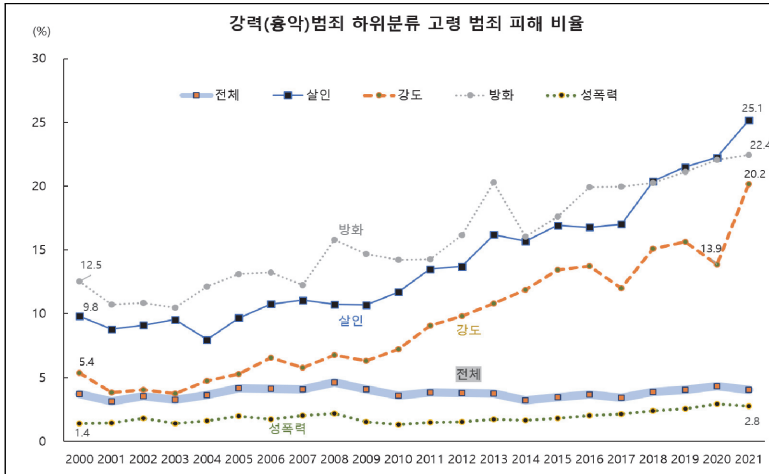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29]는 성별 및 연령별 피해 비율이다. 우선 남자를 보면, 2000년대에는 30대와 4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이었으나, 최근 6~7년 동안 젊은 연령층인 20세 이하와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이며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특히, 20대는 2014년까지는 평균 16.9%로 주춤하였지만, 이후에는 평균 24.6%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1년 무려 35.8%를 기록하였다.

반면 여자는 20세 이하와 20대 연령층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중이 높았다. 특히 2000년 20세 이하가 33.4%로 20대(27.6%)보다 높았지만, 이후 20세 이하는 2023년까지 하락한 후 상승하다 2011년부터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인다. 반면 20대는 분석기간 동안 대체로 증가하며 강력(흉악)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20대 여성의 피해 비율이 40.2%이다. 그 외 50대와 61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고령층은 분석기간 중 큰 변동이 없었다.

[그림 3-30]은 강력(흉악)범죄의 하위유형별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이다. 성폭력을 제외한 살인, 강도, 방화의 고령 피해자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강력(흉악)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폭력은 비록 고령층의 비중은 가장 작지만 증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강력(흉악)범죄의 모든 세부 유형에서 고령층의 피해 비율이 증가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안전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할 시점으로 생각된다.

[그림 3-30] 강력(흉악)범죄 하위분류 고령자의 범죄피해 비율



주: 강력(흉악)범죄 하위분류별 고령 피해 비율은 피해자 전체 인원 중 각 하위분류 범죄의 61세 이상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강력(흉악)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으로 구성됨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3. 성별 및 연령별 강력(폭력)범죄 피해 현황

강력(폭력)범죄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기타 폭력행위 등(손괴, 강요, 주거침입, 단체 등의 구성·활동)으로 구성되며, 2021년 기준으로 폭행이 전체 강력(폭력)범죄에서 약 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대검찰청 『범죄분석』은 분석기간 분류체계가 개편되었고, 특히 강력(폭력)범죄의 하위분류에 포함되는 범죄 유형이 시계열상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범죄와 강력(흉악)범죄와 같이 세부 범죄 유형으로 연령별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기 힘든데, 특히 2002년부터 형법을 준용한

특별법범죄를 각 형법범죄 항목에 포함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강력(폭력)범죄에서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의 현황을 살펴본다.

〈표 3-8〉 강력(폭력)범죄 연령별 피해자 인원 (2002~2021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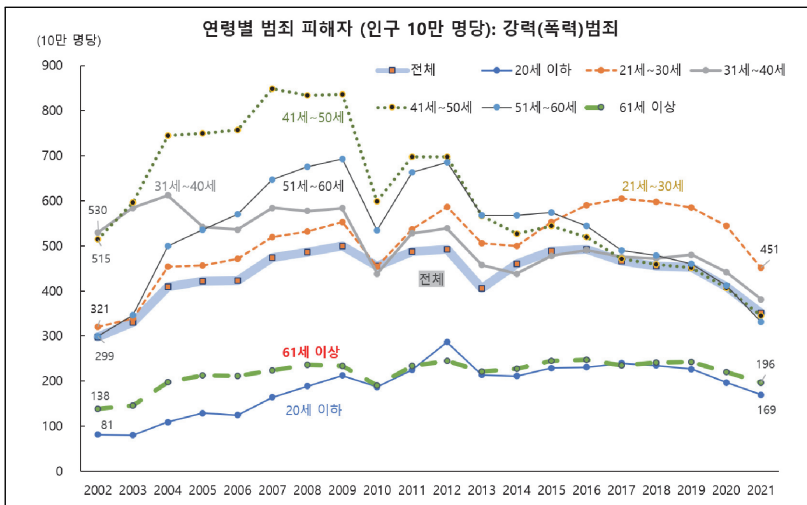
연령 연도	합계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2002	143,188	11,442	26,574	46,870	38,028	13,219	7,055
2003	159,779	11,009	27,716	51,574	46,085	15,502	7,893
2004	198,583	14,604	36,492	54,115	59,298	22,893	11,181
2005	205,419	16,944	35,865	48,152	61,162	25,528	12,493
2006	207,090	16,089	36,314	47,419	62,844	28,853	12,824
2007	232,985	20,923	39,304	51,303	71,299	34,849	13,960
2008	240,018	23,862	39,377	50,306	70,846	38,381	15,297
2009	248,214	26,488	40,250	50,013	71,875	41,386	15,868
2010	227,164	22,999	32,334	36,874	51,984	33,648	13,489
2011	244,443	27,215	37,217	43,899	60,682	44,437	17,169
2012	247,790	34,168	39,680	44,321	60,638	48,990	18,585
2013	205,404	24,981	33,632	37,198	49,281	42,677	17,444
2014	233,655	24,093	32,875	35,153	46,098	44,094	18,742
2015	248,707	25,511	36,384	37,489	47,879	45,752	21,075
2016	251,889	25,069	39,189	37,662	45,595	44,208	22,372
2017	238,789	25,291	40,517	35,811	41,070	40,331	22,396
2018	233,392	24,028	40,348	34,896	39,621	39,723	24,106
2019	232,316	22,432	39,678	34,829	38,252	38,654	25,461
2020	210,241	18,812	36,891	31,418	33,881	34,953	24,356
2021	180,460	15,593	30,565	26,354	28,385	28,236	22,923

주: 2005년부터 연령별·성별 미상 자료가 공표되었음. 위 표는 피해자 인원 미상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2005년부터 연령별 피해 인원의 합이 합계와 맞지 않음. 강력(폭력)범죄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구금, 기타 폭력행위 등(손괴, 강요, 주거침입, 단체 등의 구성·활동)으로 구성됨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강력(폭력)범죄의 전체 피해자는 2002년 약 14만 명에서 2021년 18만 명으로 1.3배 증가하였다. 연평균 증가율로 계산해보면, 매년 1.7%씩 증가한 것이다(〈표 3-8〉). 연령별로 살펴보면, 61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 폭이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커서, 2000년 약 7천 명에서 2021년 2만 3천 명으로 약 3.2배 수준 증가하였다(연평균 증가율 7%). 50대도 전반적으로 피해자 규모가 증가하였지만, 2012년까지 지속적 증가 추세 이후 최근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3-31]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현황: 강력(폭력)범죄



주: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자는 각 연령의 인구 10만 명 대비 범죄피해 인원을 나타냄. 이때, 연도별 각 연령 인구는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를 사용하였음. 강강력(폭력)범죄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구금, 기타 폭력행위 등(손괴, 강요, 주거침입, 단체 등의 구성·활동)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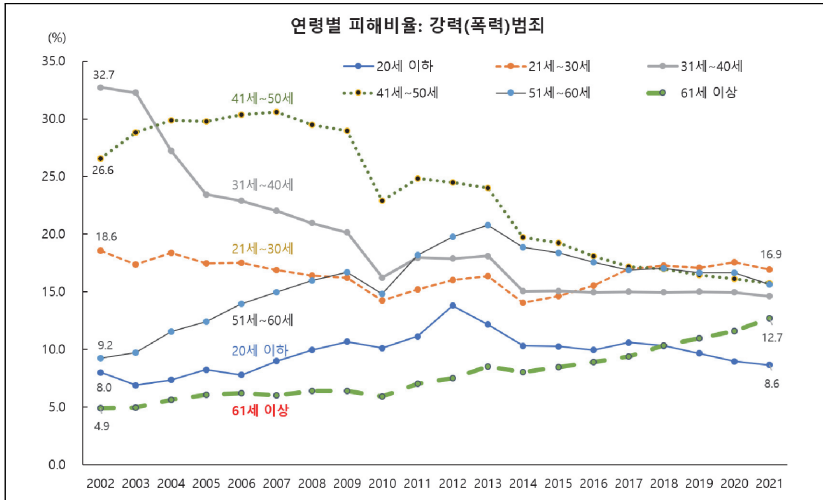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31]은 2002~2021년 동안 인구 10만 명당 강력(폭력)범죄 피해 인원이다. 인구 10만 명당 강력(흉악)범죄의 전체 피해자는 지난 22년 동안 대체로 역-U자 형태의 패턴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증가 추세였지만, 그 이후 내리막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 40대, 50대에서 대체로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다. 20대는 2010년대 초중반까지 30~50대의 연령대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비록 최근 6년간 감소 경향을 보였지만 인구 10만 명당 피해 인원의 절대 규모는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다. 61세 이상은 2000년에 인구 10만 명당 138명에서 2021년 196명으로 소폭 상승하였고, 2010년대 이후로는 주춤하는 모습이다.

[그림 3-32]는 강력(폭력)범죄 전체 피해자 중 연령별 피해자 비율이다. 일반범죄 및 재산범죄에서와 같이 30대와 40대가 2000년대 초반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의 경우 20세 이하와 61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비슷한 피해 비중을 보인다. 특히 61세 이상의 경우 2002년에서 2017년까지 모든 연령층 중에서 피해 비율이 가장 낮았으나, 이후 20세 이하를 추월하였다. 구체적인 수치로 61세 이상의 피해 비율이 2002년 4.9%에서 2021년 12.7%로 증가하였다. 20세 이하는 같은 기간 8.0%에서 8.6%의 비중이다. 한편 50대는 2000년 9.2%에서 2021년 15.6%를 기록하였는데,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최근 감소 폭이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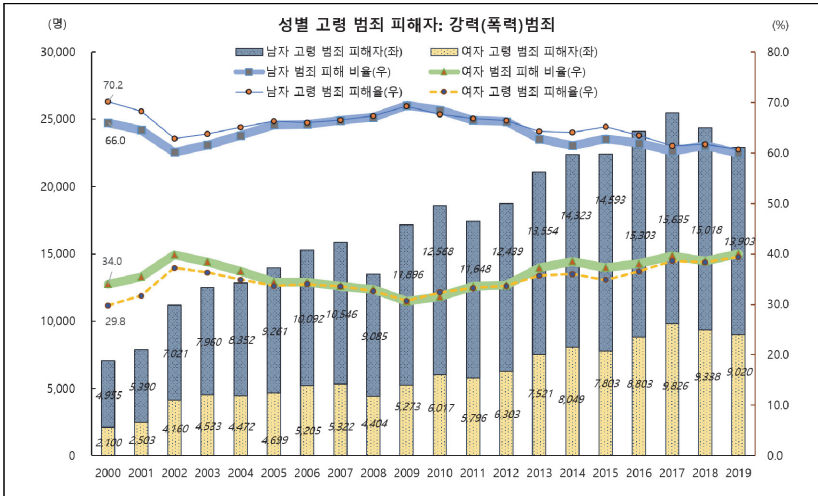
[그림 3-32]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강력(폭력)범죄



주: 연령별 피해 비율은 피해자 전체 인원(미상 포함) 중 연령별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33]은 강력(폭력)범죄의 남녀 피해 비중 및 61세 이상 성별 고령 피해자 추세이다. 강력(흉악)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서와 같이 강력(폭력)범죄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전체 피해자 중에서 남자 피해자의 비중은 2002년 약 66%에서 2021년 약 60%로 감소했다. 따라서 고령 피해자의 성별 비중은 2002년 이후 계속해서 남성 고령 피해자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지만, 최근 성별 격차는 감소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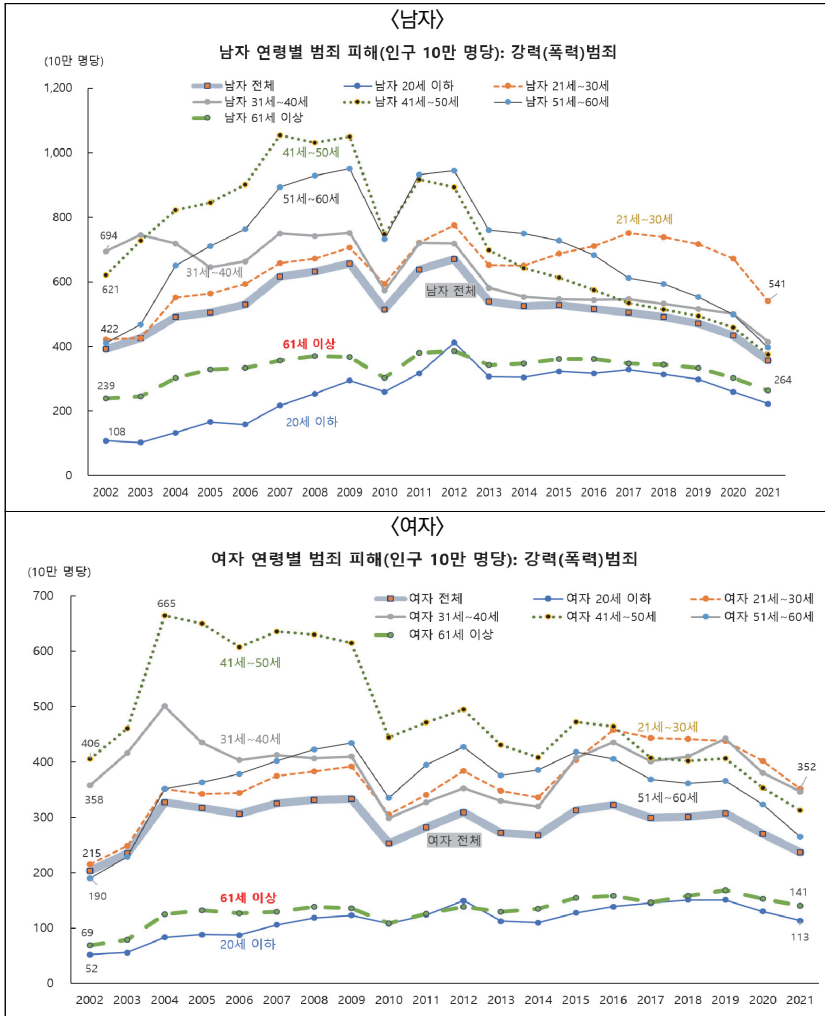
[그림 3-33] 성별 고령 범죄피해자: 강력(폭력)범죄



주: 성별 고령 범죄피해자(이탈리케)는 해당 성별의 피해 인원 절대 수준이고, 성별 고령 범죄피해율은 61세 이상 전체 피해자에서 성별 고령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성별 범죄 피해율은 미상을 제외한 인원에서 남자와 여자가 각각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34]는 강력(폭력)범죄를 대상으로 성별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이다. 남자의 경우 2002년~2021년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 전체’와 유사한 패턴이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2011년부터 최근까지 대체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2002년~2009년까지 남자 전체와 비슷하게 증가세였으나, 2010년대 중반에 주춤하는 모습이다. 이후 20대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감소세를 보이지만 연령대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인원이 가장 높다. 20세 이하에서는 2012년까지 뚜렷한 증가세였지만, 그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61세 이상 고령자는 등락을 거듭하며 추세에 큰 변화가 없다.

[그림 3-34]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현황: 강력(폭력)범죄



주: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자는 성별 각 연령의 인구 10만 명 대비 범죄피해 인원을 나타냄. 이 때, 연도별 각 연령 인구는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를 사용하였음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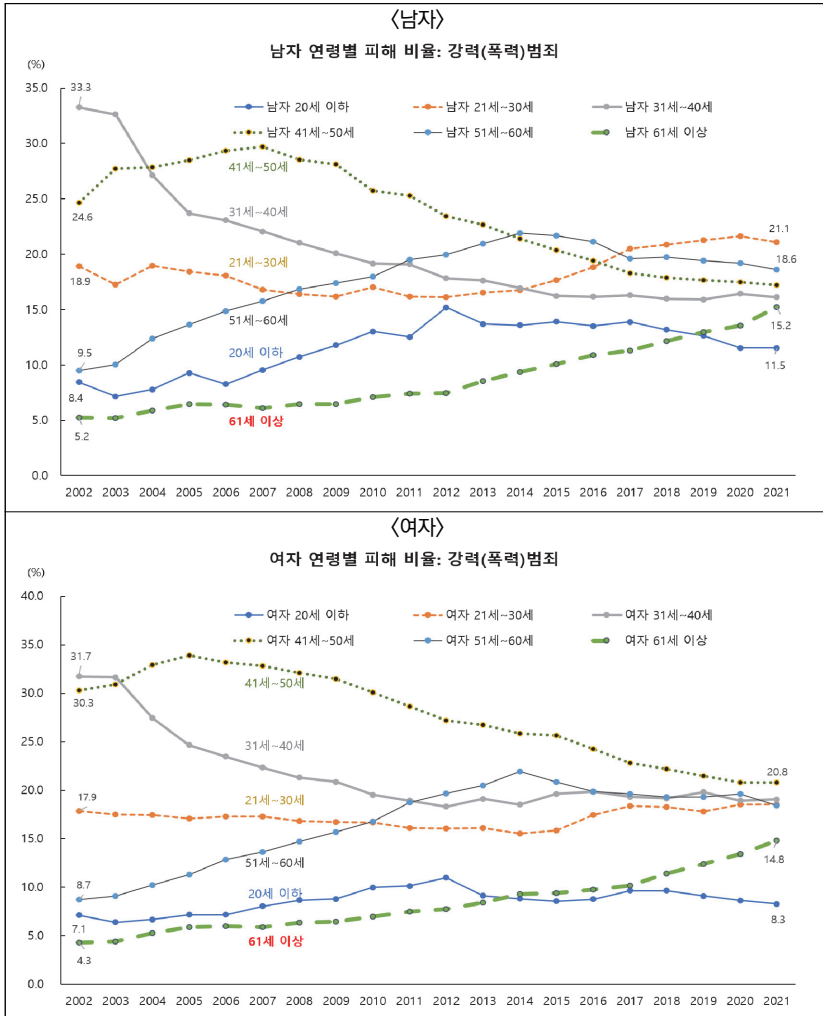
여자의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추세는 남자와 대체로 비슷하다. 40대는 2000년 중후반에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규모가 가장 높지만 그 이후 감소하여 2021년에는 20대와 30대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20세 이하 연령층은 2021년 113명으로 2002년과 대비하여 2배 정도 증가하였다. 강력(폭력)범죄 피해 규모가 가장 낮은 두 연령대인, 20세와 61세 이상은 분석기간 중 약 2배로 정도 상승하였으며 추세도 매우 유사하다. 구체적인 수치로 61세 이상은 분석기간 중 인구 10만 명당 69명에서 141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35]는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이다. 남자를 먼저 살펴보면, 2000년대에는 일반범죄 및 재산범죄와 같이 30대와 4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21년에는 20대와 50대의 강력(폭력)범죄 비중이 30대와 40대보다 높은 모습을 보인다. 또한 20세 이하와 61세 이상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강력(폭력)범죄 피해 비율이 낮은 편이나 분석기간 중 둘의 순위가 바뀌었다. 61세 이상은 2018년까지 20세 이하보다 비율이 낮아 모든 연령층에서 강력(폭력)범죄 피해에서의 비중이 가장 낮았지만, 그 이후 전환되어 2021년에는 15.2%로 20세 이하 11.5%보다 3.7%p 높아졌다.

한편 여자는 50대와 61세 이상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61세 이상 비율은 비록 그 수준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지만,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수치로 61세 이상의 비중은 2022년 4.3%에서 2021년 14.8% 증가하였다. 50대는 2014년까지는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주춤하는 추세이다.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에서는 남녀 모두 강력(폭력)범죄에서 61세 이상의 비중이 낮은 편이나, 최근 20세 이하를 제치며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3-35]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 강력(폭력)범죄



주: 성별 및 연령별 피해 비율은 피해자 전체 인원(미상 포함) 중 해당 성별 및 연령별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하여 연구진 작성

제4절 고령자 범죄피해 순위

1.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순위: 범죄 중분류 기준

2021년 현재 성별 및 연령별로 가장 빈번한 범죄피해 유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 및 연령에 상관없이 재산범죄 1위이며, 대부분의 연령에서 강력(흉악)범죄 3위, 강력(폭력)범죄 8위이다. 그러나 여자 30세 이하의 경우 강력(흉악)범죄가 2위, 강력(폭력)범죄가 3위라는 점에서 다른 성별 및 연령과 큰 차이가 있다. 즉 상대적으로 여자 30세 이하의 경우 강력(흉악)범죄와 강력(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 발생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연구의 관심 집단인 61세 이상의 성별 차이를 보면, 남자의 경우 과실범죄 2위, 위조범죄 4위, 풍속범죄 5위 순이나 여성의 경우 위조범죄 2위, 풍속범죄 4위, 기타일반범죄 5위로 차이가 있다. 과실범죄의 경우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실화 등이 해당되며, 위조범죄의 경우 유가증권·인지·우표 위조, 문서위조, 인장 위조 등이 해당된다. 풍속범죄는 도박과 복표, 신앙, 기타 음란행위이다. 기타일반범죄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경범죄 등 다양한 범죄를 포함한다.

성별로 구분하여 전체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2위와 4위 이후의 범죄피해 유형에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61세 이상의 경우 과실범죄, 위조범죄가 각각 2위, 4위로 직전 연령대인 41세~50대의 풍속범죄와 공무원범죄 2위, 4위와 다르다. 31세~40세에서는 공무원범죄가 2위, 풍속범죄가 4위라는 점에서 40대 이상과 차이가 있다. 30세 이하의 연령에서는 위조범죄가 2위로 나타났다.

여자의 연령별 범죄피해를 살펴보면, 2위와 3위의 범죄피해는 31

세~60세 이하의 경우 61세와 동일하게 각각 위조범죄(2위)와 강력(흉악)범죄(3위)이나 30세 이하는 각각 강력(흉악)범죄(2위)와 강력(폭력)범죄이다. 4위는 41세~60세 공무원범죄, 21~40세는 풍속범죄, 20세 이하 과실범죄로 나타났다.

〈표 3-9〉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중분류 순위(2021년 기준)

구분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남자	1위 재산범죄	재산범죄	재산범죄	재산범죄	재산범죄	재산범죄
	2위 위조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3위 강력(흉악)범죄	강력(흉악)범죄	강력(흉악)범죄	강력(흉악)범죄	강력(흉악)범죄	강력(흉악)범죄
	4위 풍속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공무원범죄	공무원범죄	위조범죄
	5위 기타 일반범죄	과실범죄	과실범죄	과실범죄	과실범죄	풍속범죄
	6위 과실범죄	기타 일반범죄	기타 일반범죄	기타 일반범죄	기타 일반범죄	기타 일반범죄
	7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위조범죄	위조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8위 강력(폭력)범죄	강력(폭력)범죄	강력(폭력)범죄	강력(폭력)범죄	강력(폭력)범죄	강력(폭력)범죄
여자	1위 재산범죄	재산범죄	재산범죄	재산범죄	재산범죄	재산범죄
	2위 강력(흉악)범죄	강력(흉악)범죄	위조범죄	위조범죄	위조범죄	위조범죄
	3위 강력(폭력)범죄	강력(폭력)범죄	강력(흉악)범죄	강력(흉악)범죄	강력(흉악)범죄	강력(흉악)범죄
	4위 과실범죄	풍속범죄	풍속범죄	공무원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5위 기타 일반범죄	기타 일반범죄	기타 일반범죄	기타 일반범죄	기타 일반범죄	기타 일반범죄
	6위 공무원범죄	공무원범죄	과실범죄	과실범죄	과실범죄	과실범죄
	7위 풍속범죄	과실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풍속범죄	공무원범죄
	8위 위조범죄	위조범죄	강력(폭력)범죄	강력(폭력)범죄	강력(폭력)범죄	강력(폭력)범죄

주: 성별 및 연령별로 피해자 수가 많은 순서임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f).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conn_path=12에서 2023.8.3. 인출

2.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순위: 범죄 소분류 기준

〈표 3-10〉과 〈표 3-11〉은 각각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범죄피해를 세분화하여 1~15위를 제시한 것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 범죄피해는 총 10개의 중분류와 44개의 소분류로 분류된다.

41세 이상의 경우 성별 및 연령에 상관없이 1위 사기(재산범죄), 2위 절도(재산범죄), 3위 폭행(강력폭력범죄), 4위 손괴(재산범죄), 5위 횡령(재산범죄)으로 동일하다.

고령자 중심으로 이후 순위를 살펴보면 남자 61세 이상의 경우 6위 상해(강력폭력범죄), 7위 명예(기타일반범죄), 8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9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10위 문서(위조범죄), 11위 협박(강력폭력범죄), 12위 무고(기타일반범죄), 13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실범죄)이다. 그리고 14위와 15위는 다른 남자 연령대에서는 1~15위에 포함되지 않는, 배임(재산범죄)과 실화(과실범죄)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여자 61세 이상의 경우 6위는 61세 남자와 동일하게 상해(강력폭력범죄)이며, 7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8위 협박(강력폭력범죄), 9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10위 명예(기타일반범죄), 11위 성폭력(강력홍악범죄), 12위 문서(위조범죄), 13위 과실치사상(과실범죄), 14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실범죄), 15위 실화(과실범죄) 순이다. 여자 61세의 경우 남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연령대에서는 없는 실화(과실범죄)가 15위를 기록한 것이 흥미롭다. 또한 여성 고령자의 경우 남성 고령자의 1~15위 순위에 없는 성폭력(강력홍악범죄)이 11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의 경우 61세 이상이 다른 연령에 비해 순위가 높은 것(여자 7위, 남자 9위)으로 나타나서 고령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표 3-10〉 남자의 연령별 범죄피해 소분류 1~15위(2021년 기준)

구분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1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2위	폭행(강력폭력범죄)	절도(재산범죄)	절도(재산범죄)	절도(재산범죄)	절도(재산범죄)	절도(재산범죄)
3위	절도(재산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4위	횡령(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손괴(재산범죄)	손괴(재산범죄)	손괴(재산범죄)	손괴(재산범죄)
5위	상해(강력폭력범죄)	손괴(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6위	공갈(강력폭력범죄)	병예(기타일반범죄)	병예(기타일반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7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공무방해(기타일반범죄)	병예(기타일반범죄)	병예(기타일반범죄)	병예(기타일반범죄)
8위	협박(강력폭력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9위	손괴(재산범죄)	공무방해(기타일반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10위	병예(기타일반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문서(위조범죄)
11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공무방해(기타일반범죄)	공무방해(기타일반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12위	과실치사상(과실범죄)	신용업무 경매(기타일반범죄)	공갈(강력폭력범죄)	공갈(강력폭력범죄)	문서(위조범죄)	무고(기타일반범죄)
13위	채포와 감금(강력폭력범죄)	공갈(강력폭력범죄)	문서(위조범죄)	문서(위조범죄)	무고(기타일반범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실범죄)
14위	문서(위조범죄)	문서(위조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무고(기타일반범죄)	공갈(강력폭력범죄)	배임(재산범죄)
15위	유기(기타일반범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실범죄)	무고(기타일반범죄)	과실치사상(과실범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실범죄)	협박(과실범죄)

주: 남자 연령별로 피해자 수가 많은 순서임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conn_path=1
2에서 2023.8.3. 인출

〈표 3-11〉 여자의 연령별 범죄피해 소분류 1~15위(2021년 기준)

구분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1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사기(재산범죄)
2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3위	폭행(강력폭력범죄)	절도(재산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4위	절도(재산범죄)	폭행(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5위	횡령(재산범죄)	횡령(재산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6위	명예(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7위	상해(강력폭력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8위	협박(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9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명예(기타일반범죄)
10위	기타 음란행위(풍속범죄)	협박(강력폭력범죄)	상해(강력폭력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
11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12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13위	악취와 유인(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14위	공갈(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성폭력(강력폭력범죄)
15위	체포와 감금(강력폭력범죄)	체포와 감금(강력폭력범죄)	체포와 감금(강력폭력범죄)	체포와 감금(강력폭력범죄)	체포와 감금(강력폭력범죄)	체포와 감금(강력폭력범죄)

주: 여자 연령별로 피해자 수가 많은 순서임

자료: 대검찰청(2023): 통계청(2023f).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conn_path=I
2에서 2023.8.3. 인출

이를 종합하면, 40대 이상 범죄피해자의 경우 성별 및 연령에 상관없이 사기, 절도, 손괴, 횡령 등의 재산범죄로부터의 피해 순위가 높았으며 폭행, 상해 등의 강력(폭력)범죄 역시 높은 순위였다. 고령자는 성별에 상관없이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다른 연령대에서 1~15위 순위에 없는 실화(과실범죄) 유형이 있다는 점에서 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고령자 중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 성폭력(강력흉악범죄)이 11위라는 점에서 여성 고령자 역시 성폭력의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고령자의 범죄피해 상위 순위 분석결과,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령자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기범죄’, ‘폭행·상해·협박 등 강력(폭력)범죄와 관련 있는 학대’와 함께 ‘주거침입’, ‘성폭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심층면접조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주거침입의 경우 다른 범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가 절도나 폭력과 병행하기에 잘 주목되지 못하는 범죄피해 유형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소득 노인,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노후주택에 거주하며 주거 공간의 취약성이 높아 창문이나 출입문 등의 방범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 1인 노인 가구의 경우 복지 차원의 주거개선 지원 시 고령친화적인 공간 개조 및 장치 설치 지원 이외에도 방법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의 경우 고령자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범죄피해 규모가 매우 작은 상황이라, 1~15위의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이 잡힌 것일 뿐 고령 범죄피해자 수가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령자의 성폭력 관련 이슈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제2장에서도 확인된 부분이다.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고령자의 범죄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의 범죄 관련 공식 통계자료인 대검찰청의 2000~2021년 『범죄분석』을 이용하였다. 전체 범죄(일반범죄+행정범죄)에서는 20세 이하와 20대의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가 다른 연령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젊은 여성층이 범죄피해에 많이 노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각 남자와 여자의 전체 피해자 대비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을 보면, 50대와 61세 이상에서 남녀 모두 뚜렷한 증가세가 관찰되었다. 이는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고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 연구 배경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전체 범죄 중 행정범죄를 제외한 전형적인 형법상의 범죄인 일반범죄를 보면, 전체 피해자 중 50대와 61세 이상의 피해 비율이 증가세를 보여 인구구조 고령화와 맞물려 일반범죄 피해자도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범죄에서와 같이 남자 61세 이상 고령 피해자가 여자보다 많다. 하지만 여자 고령 피해자는 2000년에 비해 2021년 약 8배 증가하여 5배 증가에 그친 남자 피해자보다 증가폭이 컸다. 특히, 젊은 층(20세 이하와 20대)과 50대 이상 여자 피해자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일반범죄의 연령별 피해율은 전체 범죄에서와 같이 50대와 61세 이상에서 남녀 모두 뚜렷한 증가세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일반범죄의 하위범주 중 경제적 동기 범죄인 재산범죄에서는 전체 피해자 중 연령별 피해자 비율에서 50대와 61세 이상의 피해 비율이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 피해 비율을 보면, 50대(51세~60세)와 61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범죄 피해 비율이 남녀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여자의 피해 비율 증가세가 남자에 비해 뚜렷하였다.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가장 높은 범죄 유형인 강력(흉악)범죄에서는 20대의 경우 분석기간 중 증가폭이 우려할 수준으로 높았으며, 61세 이상의 경우 비중이 가장 작았다. 그러나 강력(흉악)범죄의 모든 세부 유형에서 고령층의 피해 비율이 증가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안전 프로그램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강력범죄 유형인 강력(폭력)범죄에서도 최근 61세 이상 고령층의 피해 비율 증가 특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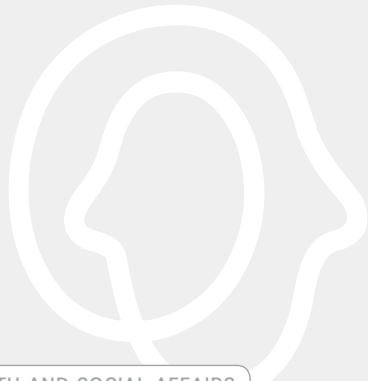
최근 20년 동안 성별 및 연령별 범죄피해 특성을 종합하면, 일반범죄 및 재산범죄에서 전체 피해자 중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녀 모두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또한 강력(흉악)범죄 및 강력(폭력)범죄에서도 고령층 피해 비율의 증가세를 보이며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2021년 기준, 44개의 범죄피해 소분류를 기준으로 성별 및 연령별 1~15위를 살펴본 결과, 40대 이상 범죄피해자의 경우 성별 및 연령에 상관없이 사기, 절도, 손괴, 횡령 등의 재산범죄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으며 폭행, 상해 등의 강력(폭력)범죄 피해 역시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61세 이상은 성별에 상관없이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다른 연령대에서 1~15위 순위 에 없는 실화(과실범죄)¹⁹⁾ 유형이 있다는 점에서 주택의 안전성을 제고 등의 여지가 보인다. 61세 이상 중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여자의 경우 성폭력(강력흉악범죄)이 11위라는 점에서 여자 고령자 역시 성폭력의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고령자의 범죄피해 상위 순위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앞의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령자의 경

19) 실화(과실범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분석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전문가 자문 등에 의하면 집안 가스불이나 화기 사용 중 의도하지 않은 방화로 추정된다.

우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기범죄’, ‘폭행·상해·협박 등 강력폭력범죄와 관련 있는 학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주거침입과 성폭력 역시 고령층의 범죄피해에서 높은 순위로 확인되어 정책 대응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거침입은 다른 범죄와 수반되며 잘 주목되지 못하는 범죄피해 유형일 수 있지만, 제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도 노후주택의 방범장치 미흡 등의 주거 공간 취약성이 범죄피해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확인했으므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은 성폭력 피해의 절대적인 수가 적다는 점에서 아직은 이슈화의 필요성이 낮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과거에 비해 성폭력범죄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제4장

범죄피해 보호 지원 제도 현황

제1절 법적 근거 및 제도 개관

제2절 지원 제도별 보호 지원 내용

제3절 통합지원체계 및 이슈별 피해 지원

제4절 소결

제 4 장 범죄피해 보호 지원 제도 현황

이 장에서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피해 보호 지원의 법적 근거와 제도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제2장 제3절에서 살펴본 이슈별 피해 현황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포함한다.

제1절 법적 근거 및 제도 개관

1. 법적 근거²⁰⁾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법적 근거는 헌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기타 특별법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림 4-1]과 같이 1987년 헌법에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해 두 가지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매우 선진적인 입법례로 평가되고 있다.²¹⁾

[그림 4-1] 헌법의 범죄피해자 권리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자료: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20) 법무부(2023)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http://www.moj.go.kr/cvs/2698/suview.do>)에서 2023.8.15. 인출)와 이 연구 수행 중 2023년 6월 9일에 개최한 연구세미나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은영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과 제도”(강은영, 2023.6.9.), 질의응답을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1) 2010년 OECD 기준 35개 국가 중 헌법상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멕시코다.

헌법재판소 역시 구조금 청구권에 대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며 그 법적 성격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해석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89.4.17.; 2011.12.29.).

헌법에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이 신설된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과 통합을 거쳐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틀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구조 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중략)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의미한다(제3조 제1항 제4호).

[그림 4-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연혁

-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
-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 2010년 「범죄피해자구조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통합

자료: 연구진 작성

그 외에도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의 경우 개별법에서 피해자 보호 지원의 근거와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관련 법은 「노인복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을 근거로 피해자 보호지원」 등이다.

참고로 폭력과 관련하여 개별법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서구와 다른 점이며, 이들 개별법에서 피해자 보호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2. 제도 개관²²⁾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는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과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의미하며(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종류는 [그림 4-3]과 같이 크게 피해자 신변 보호,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 지원,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5년마다 범부처²³⁾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1차(2007~2011), 제2차(2012~2016), 제3차(2017~2021)를 거쳐 현재 제4차(2022~2026)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다. 제1차~제3차 동안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의 양적 성장에 집중하였다면,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 기본계획은 제도 내실화와 정책 기반 강화라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여 추진되고 있다(법무부 인권구조과, 2021). 지원 제도별 세부 내용은 이 절의 '다. 지원 제도별 보호 지원 내

22) 주로 법무부(2023)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안내(<http://www.moj.go.kr/cvs/2698/subview.do>에서 2023.8.15. 인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3)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위원 부처(청)인 9개 기관이다.

용'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지원 제도별로 지원 신청기관이 상이하며, 기관별 지원 제도는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관련 기관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홈닥터,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다.

[그림 4-3]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종류

피해자 신변보호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 지원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신변보호조치 -가명조서 -피해자보호시설 -임시안전숙소 -이전비 (이사 실비)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장치)	-범죄피해자 의견 진술 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 제공 제도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주거 지원 제도 -경제적 지원 제도 -범죄피해자지원 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배상명령 제도 -형사소송절차에 서의 화해 제도 -형사조정 제도 -법률홈닥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 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cvs/2698/subview.do>)에서 2023.8.15.인출

<표 4-1>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기관

기관명	지원 제도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신변보호조치, 피해자보호시설(안전가옥), 이전비(이사실비),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가명조서, 범죄피해자 의견진술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제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주거 지원 제도, 경제적 지원 제도(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배상명령제도, 형사조정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긴급구호, 경제적 지원(생계비, 치료비, 간병비 등), 취업지원,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등
스마일센터	심리치료 및 임시거주시설 제공 <i>*성폭력 피해자(해바라기센터), 아동학대 피해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가능</i>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및 소송 구조

기관명	지원 제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 상담 및 소송 구조
법률출덕터	법률 상담 및 법 교육
검찰청	신변보호조치, 스마트위치(위치확인장치), 임시 안전숙소, 가명조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범죄현장정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의료 및 법률 지원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cvs/2699/subview.do>)에서 2023.8.15. (인출)를 이용하여 연구진 재구성

한편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지원 사항이 다르므로,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① 범죄 발생 직후, ② 수사 진행 과정, ③ 재판 진행 과정, ④ 형 집행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범죄 발생 직후에는 경찰청으로 범죄피해를 신고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지원 상담을 요청하면,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를 제공한다.

이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가장 많은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범죄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 부모, 배우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같이 참석(동석)할 수 있으며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는 참고인 자격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으며, 경제적 지원(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및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검찰청에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의 진행 처리 결과 및 피의자의 구속 여부 등 형사절차 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검사의 불기소²⁴⁾ 처분에 대해 항고(재정신청²⁵⁾), 헌법

24) 피의자의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기소라 하며, 피의자를 재판에

소원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 학대 범죄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13세 미만 아동 또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제도의 경우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 참고인, 증인만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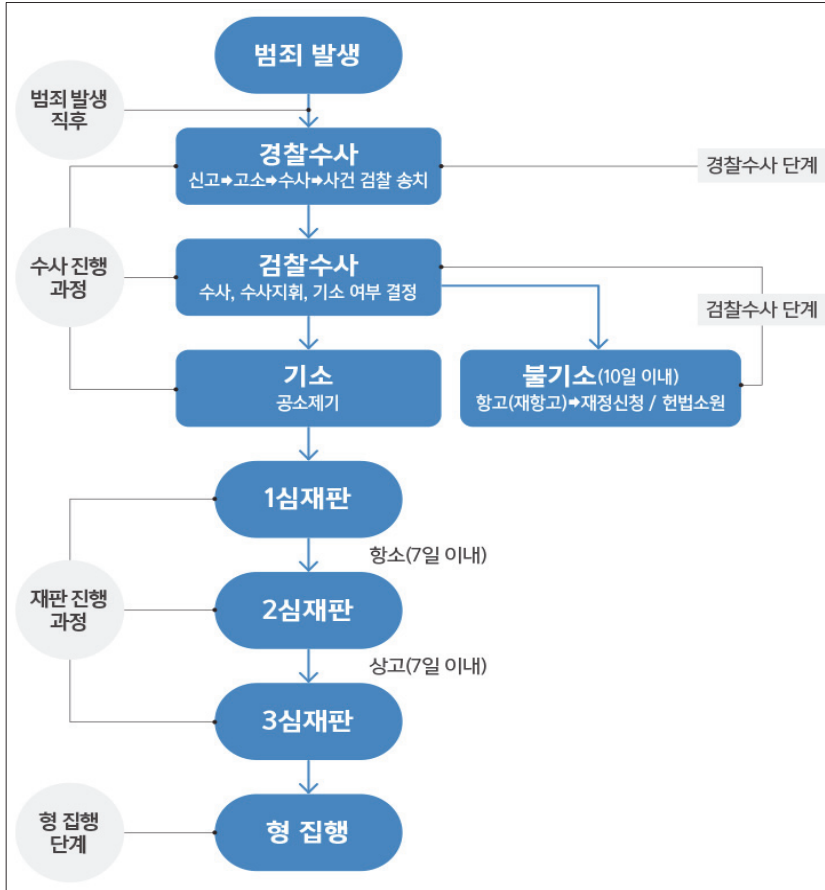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심리하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공판일시, 재판 결과, 피고인의 구속 및 석방 여부 등의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으며, 부모 및 배우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정에 같이 참석할 수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은 범죄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대면으로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으며, 사생활이나 신변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재판장 신청을 통해 소송기록 열람과 복사를 할 수 있고, 법원에 신청하여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죄·과실치사상, 성폭력, 재산범죄 등이며,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이다. 신청은 가해자에 대한 공판의 결론 종결 전까지 해야 한다.

형 집행 단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형 집행 상황, 보호관찰 집행 상황, 석방 날짜 등에 대한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의 가석방 심사 시 교정당국에 의견을 낼 수 있다.

회부하지 않는 것은 불기소이다. 불기소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처분 중에 해당된다. 혐의 없음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 실시하는 처분이며, 기소유예는 증거는 충분하지만 범인의 성격, 연령, 처지, 범죄의 경중, 전과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하는 처분이다. 공소권 없음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범죄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의 처분이다.

- 25)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해당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이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다시 불복할 수 있다.

[그림 4-4] 형사소송절차와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자료: 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cvs/2700/subview.do>에서 2023.8.15. 인출)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제2절 지원 제도별 보호 지원 내용²⁶⁾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별 지원 내용을 크게 피해자의 신변보호, 형사절차상 피해 보호,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 지원,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피해자의 신변보호

신변보호조치제도는 범죄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변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피해사실 등을 토대로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고 그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데, 지원 대상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외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들도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일시적인 신변경호,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 법정 및 수사기관 출석 시 피해자 지원 담당관 동행이다.

가명조서제도는 경찰이나 검사가 조서, 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의 신원 관련 사항(이름, 연령, 주소, 직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기재하여 신변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을 살펴보면, 범죄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 활동과 관련하여 조서·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26) 주로 법무부(2023)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안내(<http://www.moj.go.kr/cvs/2698/subview.do>)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일부 내용은 이 연구 수행 중 2023년 6월 9일에 개최한 연구세미나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은영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과 제도”(강은영, 2023.6.9.)의 질의응답 내용을 반영하였다.

신고자,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이 조서·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가명조서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고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가명조서 등으로 작성할 것을 요청하면 된다.

피해자 보호시설 제도는 중대범죄의 신고자나 범죄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이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커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경우 검찰청에서 마련한 거주시설(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에 일정 기간 무료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사용허가 결정이 통보된 날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²⁷⁾ 즉 뒤에 이어지는 임시안전숙소제도에 비해 장기적으로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의 신고자, 증인, 범죄피해자와 그 친족 등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특히 가정폭력에 의한 여성 피해자가 피해자보호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에도 보호시설이 필요하나, 이 경우는 별도의 보호시설이 있다(강은영, 2023.6.9.). 지원 절차는 담당검사가 대검 또는 보호시설이 있는 검찰청에 피해자 보호시설 사용 요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검찰청의 보호시설 관리위원회에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보호시설을 제공한다.

임시안전숙소 제도는 강력범죄, 보복범죄 등으로 물리적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경찰수사 초기에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범죄피해 및 보복범죄의 우려로 임시주거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이며, 지원기간은 2~5일의 단기로 경찰서에서 우수 숙박업소, 종교시설, 수련원 등에 임시 숙소를 마련하여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며 임시 거주 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우려 여

27) 검사의 사용기간 연장 요청이 있고 그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연장 허가가 가능하다.

부에 따라 주거지로 복귀하거나 스마일센터, 성폭력 보호시설 등 피해 유형별 보호시설로 연계된다. 일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안전숙소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전비(이사 실비) 지원 제도는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커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해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보복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 일시와 상관없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영수증 등 이사비용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지원 제도는 피해자가 위급할 때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장치를 제공하는 제도로,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범죄신고자,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중대범죄의 피해자, 범죄 신고자 및 그 친족 등에게 보복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단위로 지원한다.²⁸⁾ 접근명령 금지 대상자가 피해자의 1km 이내에 접근한 경우 스마트워치의 경보가 발생하며, 그 외에도 위험 상황 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긴급 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스마트워치에 탑재되어 있다.²⁹⁾

2022년 경찰백서에 의하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관련 실적이 증가 추이에 있다.

28) 보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29) 과거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제공하여 경보 발생 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신변보호가 이루어졌으나, 이 경우 통제관계 설치 운영 등 관련 운영비 부담이 커서 최근 범죄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표 4-2〉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및 보호 수단 지원 건수

(단위: 건, 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변보호	6,889	9,442	13,686	14,773	24,810
스마트워치	4,504	5,080	7,057	6,801	10,989
CCTV	259	230	287	440	907
임시숙소	5,122	4,797	5,027	4,668	6,569

자료: 경찰청(2022). 2022 경찰백서.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113&q_searchKeyTy=estnColumn1___1001&q_searchVal=2022에서 2023.8.17. 인출

2. 형사절차상 피해 보호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는 형사피해자가 법률에 따라 재판에서 직접 범죄피해 정도와 결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이다.³⁰⁾ ① 구속 전 심문절차 참여 및 진술, ② 기소(공소제기) 후 재판 절차 진술, ③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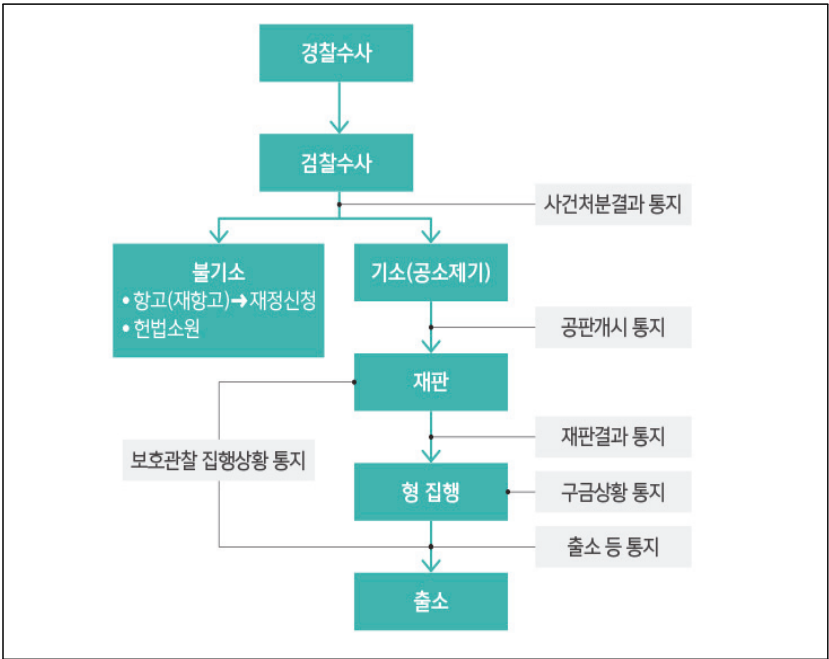
①의 경우 피해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에 참여하여 방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에서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 포함)은 재판절차에서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과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심문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재판절차에 출석하여 증인 심문 과정 없이 범죄 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범죄피해 양형자료보고서 제도는 살인, 중상해, 강도, 지속적·장기적 피해 발생 범죄(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검사가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작성이

30)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로 가해자에게 공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피해의견진술서, 범죄피해 관련 자료 등 신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수사 및 양형에 반영하고 원스톱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사건의 처분 결과, 공판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가해자의 구속과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고소·고발인에 대한 사건처분 결과 통지는 신청 없이 이루어지지만, 피해자에 대한 통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신청주의)에만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림 4-5]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의 지원 정보 범위



자료: 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cvs/2700/subview.do>에서 2023.8.15. 인출)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4-3〉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의 지원 정보

지원 정보	내용
사건처분 결과 통지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소년·가정 보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처분 및 그 일자
공판 개시 통지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된 법원 등
재판 결과 통지	판결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재판 결과
구금상황 통지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출소 등 통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 상황
보호관찰 집행 상황 통지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의 개시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자료: 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cvs/2700/subview.do>)에서 2023.8.15. 인출)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 제도는 고소·고발인 및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5대 강력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 접속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 상으로 사건조회, 사건처분 결과, 공판 개시, 재판 결과 등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조회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진정서·탄원서 제출 및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민원서비스의 신청과 제공을 통해 형사절차상의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소·고발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5대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서면으로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동의를 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는 두려움이 있는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 또는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함께 참석할 있도록 하는 제도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동석인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지원 요건은 〈표 4-4〉와 같다.

〈표 4-4〉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유형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허용 여부
임의적 신뢰관계인	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피해자	재량
필요적 신뢰관계인	-13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성폭력범죄 피해자 -청소년 또는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인 성매매 피해자	원칙적 허용 (수사·재판에 지장 등 사유가 없는 한 허용)

자료: 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cvs/2700/subview.do>)에서 2023.8.15. 인출)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문적 법률 지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원래 범죄가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통한 전문 법률 지원이 먼저 도입되었으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보호 지원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2012년 도입 당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후 2013년에 모든 성폭력 피해자, 2014년에 모든 성폭력 피해자 및 학대 피해 아동에게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강은영, 2023.6.9.). 해당 범죄피해자의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피해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쉽게 설명해 주고 진술이나 증인 출석 시 함께 출석하여 피해자를 대신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학대를 규정하는 노인복지법에서는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장민영, 2023, p.182).

진술조력인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아동학대범죄 또는 인신매매 등 범죄피해를 입은 아동 또는 장애인이 경찰, 검찰에

서 조사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이다. 지원 대상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참고인, 증인 중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범죄피해자인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자이며,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서면으로 신청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표 4-5〉 진술조력인 지원 절차 안내

구분	내용
진술조력인 선정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요청하면 진술조력인을 선정.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 선정에 참고
피해자 사전평가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파악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해 전달하여 피해자의 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지도록 함
피해자 진술조사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으 로 안정감을 가지고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피해자가 질 문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쉽게 질 문을 이해하고 수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함

자료: 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cvs/2700/subview.do>에서 2023.8.15. 인출)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3.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는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범죄는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경우여야 하며 교통사고 같은 과실범죄는 제외된다. 외국인은 상호주의를 체결한 국가만 적용한다.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사망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금액을 지급한다. 장해구조금(장해등급 1~14등급)과 중상해구조금(최소 2개월 이상 치료)은 다쳤을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범죄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며,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2개월 이상 40개월 이하의 금액을 지급한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최대 지급금액은 유족구조금 1억 5,682만 6,560원, 장해구조금 1억 3,068만 8,800원, 중상해구조금 1억 3,068만 8,800원이다(강은영, 2023.6.9.). 구조피해자 유족이 해당 구조 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는 범죄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 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주거 지원 제도는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을 살펴보면, 범죄로 인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살인·강도·방화·강간·친족 간 성폭력·약취와 유인·체포와 감금·아동학대·아동청소년 성보호·성폭력 특례·특가(보복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죄의 피해자는 상해 정도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 검찰청(구조심의회)에서 심의 후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에 추천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절차를 진행한다.

경제적 지원 제도는 살인·강도·강간·폭행·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

금,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한해 지원한다(표 4-6). 경제적 지원은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없고,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표 4-6〉 경제적 지원 제도의 지원 범위

종류	지원 요건	지원 범위
치료비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심리치료비	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정신과 치료의 경우 실비 지급, 심리상담의 경우 회당 10만 원 이내 지원
생계비	범죄로 인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월 50만 원을 상한으로 최대 3개월 지급(부양가족 수별 최대 한도 증액)
학자금	범죄로 인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생인 경우	학기당 30만 원(유치원생), 50만 원(초등학생), 80만 원(중학생), 100만 원(고등·대학생) 학기당 1회씩, 총 2회 지급
장례비	경제적 지원의 심의 대상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피해자 1인당 400만 원 이내 실비 지급

자료: 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cvs/2700/subview.do>에서 2023.8.15. 인출)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와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³¹⁾ 상담, 5주 미만 상해피해자 치료비 지원, 간병비 및 취업지원비 지원,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표 4-7). 즉 범죄피해지원 센터는 범죄피해자가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지원 대상

31) 2023년 김천구미센터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현재 서울 5개소, 경기·인천 10개소, 강원 5개소, 대전·충청 10개소, 대구·경북 9개소, 부산·울산·경남 10개소, 광주·호남 9개소, 제주 1개소이다.

은 살인, 강도, 방화, 성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며,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 4-7>을 참조하기 바란다. 범죄피해지원센터는 일반적으로 직원 규모 3~4명으로 현금 지원 등은 직접 센터에서 처리하나 서비스는 지역사회 병원, 상담소 등에 연계하고 있다.

<표 4-7> 범죄피해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의 지원 내용

종류	지원 내용
긴급구호	범죄피해지원센터 상근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범죄 현장에서 상담, 피해자 보호, 병원 후송, 가족 등 보호자 연락, 범죄 현장 정리(청소) 등 피해 초기에 신속한 긴급구호 실시
신변보호	보복범죄 대비 위치확인장치 지급, 법정 및 수사기관 동행, 임시 주거시설 연계
주거지원	임대주택 연계 지원
치료비	범죄피해로 인해 지출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관련 의료비 지원
심리치료비	임상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하여 발생한 실비 지원
간병비 등	-간병비: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간병할 가족이 없거나 생계 등의 사유로 가족이 간병하기 어려운 경우 간병 비용 지원 -기타 부대 비용: 의료보조기구가 필요하거나 원거리 치료 시설 이용으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 지원 -돌봄 비용 지원: 범죄피해로 인해 만 12세 이하 아동가정의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생계비 등	달리 부양을 제공할 친족 등이 없는 피해자가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비용 지원
현장정리비	피해자가 주거·관리하는 정주 가능한 건조물이 범죄피해로 오염·훼손되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 지원
취업지원비	피해자 본인이 신체·정신 피해를 입은 후 구직하고자 하거나 가족 등 기타 범죄 피해자가 새롭게 생계를 떠맡게 되어 구직하여야 할 때 그 훈련비 및 부대 비용 지원
기타	범죄피해자 상담(심리,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피해자 구조 제도 안내 등), 법정 모니터링

자료: 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cvs/2700/subview.do>에서 2023.8.15. 인출)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최근 3년간 범죄피해지원센터의 사업 실적은 <표 4-8>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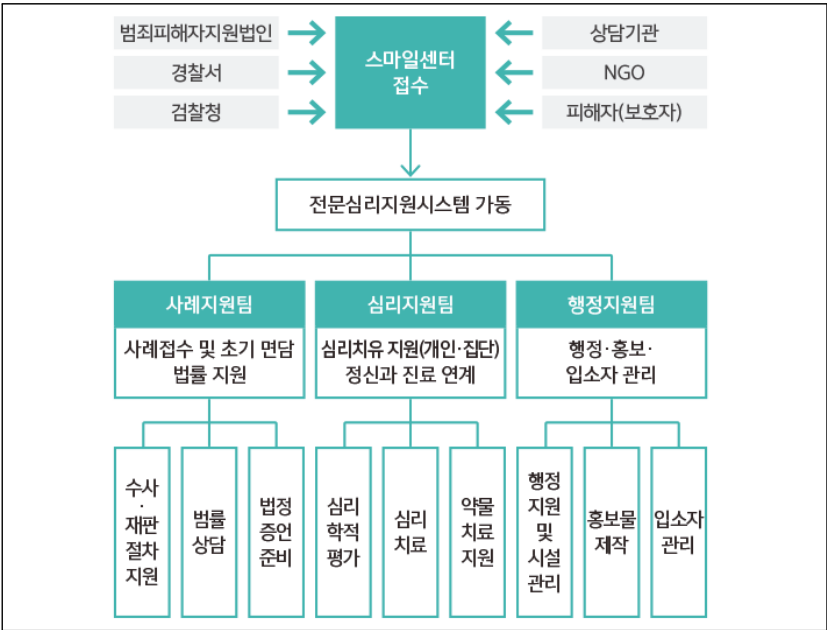
〈표 4-8〉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 실적 (2019~2021년)

(단위: 건)

연도	상담	경제·의료	신변보호	기타 ¹⁾	합계
2019년	82,569	17,313	485	17,529	117,769
2020년	85,464	18,416	526	17,189	121,595
2021년	84,752	18,476	604	16,129	119,961

주: 1) 법률지원(재판 모니터링, 법정 동행), 주거지원, 프로그램 지원(자조모임,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
자료: 법무부 인권구조과(2022.3.31.)

〔그림 4-6〕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의 이용 절차 및 지원 내용



자료: 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cvs/2700/subview.do>에서 2023.8.15. 인출)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실시 및 임시 거처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

합 지원 기관이다.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는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국 16개소의 스마일센터³²⁾에서 심리치료, 법률상담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살인·강도·폭력·성폭력·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일센터는 24시간 전화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전문적인 수행인력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수행 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의 대학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임상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행정 및 보안 요원 등이 부센터장과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4.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배상명령 제도는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지원 내용은 배상명령 신청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의 1심이 끝나기 전까지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는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피해 보상에 합의한 경우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재

32) 서울 2개소, 경기·인천 3개소, 강원 1개소, 대전·충청 2개소, 대구·경북 1개소, 부산·울산·경남 3개소, 광주·호남 3개소, 제주 1개소

판상 화해³³⁾ 같은 효력을 갖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형사피고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형사조정 제도는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형사조정 제도의 대상은 대부분 개인 간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금전거래로 발생한 분쟁이다. 즉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과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이 대상이다. 따라서 형사조정 제도는 회복적 사범으로 모든 범죄를 재판소, 교도소까지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므로 그 사이 중간 과정으로 피해자가 더 빨리 회복하고 가해자의 보상을 받으며 가해자는 형을 줄이는 방법이다. 일상 속 대표적인 형사조정 제도의 사례는 학교 폭력이다(강은영, 2023.6.9.). 그러나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고소장이나 증거 관계 등에 의해 각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 조정을 회부할 수 없다. 당사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될 경우 검사는 다시 사건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형사조정 제도의 신청기간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기소된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이외 법률홈닥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

33)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기관이나 업무자별로 차이는 있으나 취약계층에게 법률정보나 소송 도움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지원을 돕는다. 특히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법에 대한 무지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취약층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률복지서비스 제공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전국 65개 지역³⁴⁾의 시청, 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원 내용에는 법률 상담, 법 교육, 법률 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네트워킹 등이며, 소송수행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로스쿨 졸업생이 다수 배치되며, 채용과 처우 등이 낮은 문제 등으로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강은영, 2023.6.9.).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은 국고 지원으로 운영되며, 18개 지부, 42개 출장소, 74개 지소, 1개 법문화교육센터 체계를 갖추고 취약계층 대상 법률서비스 제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이고, 이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 작성,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대물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4) 서울 13개소, 인천·경기 15개소, 강원 3개소, 제주 1개소, 대전·충청 8개소, 광주·전라 8개소, 대구·경북 8개소, 부산·울산·경남 9개소이다.

〈표 4-9〉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22년 기준)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31,015	84,964	981	29,172,180
2인	4,075,106	142,425	1,431	48,901,272
3인	5,243,376	183,256	1,810	62,920,512
4인	6,401,350	223,727	2,161	76,816,200
5인	7,530,644	263,196	2,581	90,367,728

자료: 강은영(2023.6.9.)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수행변호사단은 전국에 총 1,25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민·형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등 다양한 소송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재단의 지원 대상은 법률구조공단보다 다양한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 대상자 등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한부모가정,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다문화가정 및 이주외국인, 국제법상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재단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대한변호사협회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등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화해조정과 소장 작성 등 소송 무료 지원, 소송구조, 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상담의 경우 면접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상담(www.lawhome.or.kr), 그 외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피해자 쉼터 순회상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국내·외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학대 피해 아동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부설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제3절 통합지원체계 및 이슈별 범죄피해 지원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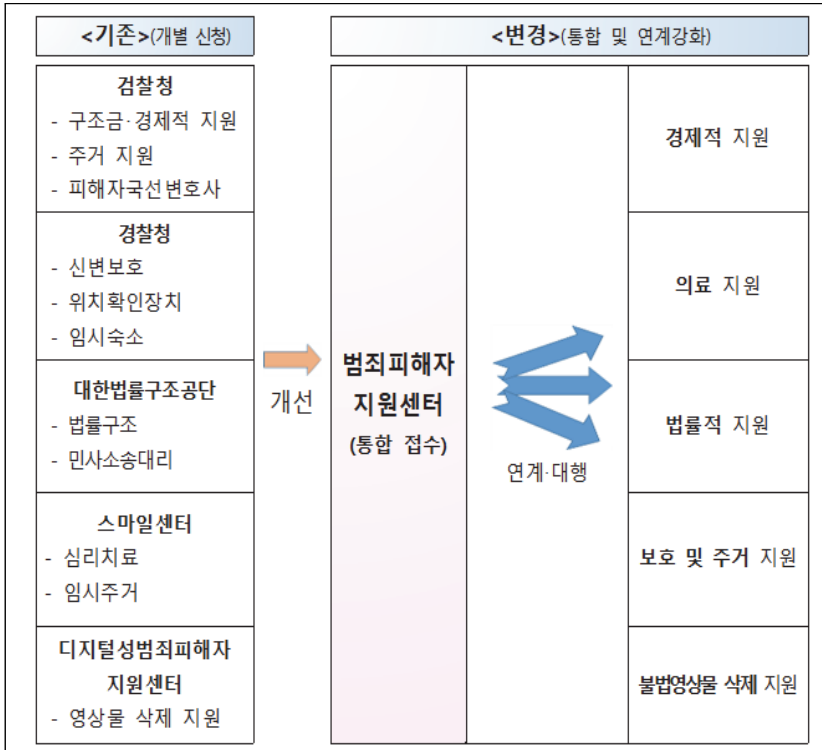
1. 통합지원체계

법무부는 최근 범죄피해자의 제도 이해도와 접근성 향상, 범죄피해자 중심의 지원 제도로 개선하여 편의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2022년 4월부터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하여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한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스마일센터 등 기관별로 지원 내용이 달라 범죄피해자가 개별 기관별로 해당하는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35) 법무부 인권구조과(2022.3.31.)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4-7]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체계



자료: 법무부 인권구조과(2022.3.31., p.2).

또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주요 지원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 4-8]과 같은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비치·홍보하여 한 번에 누락 없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6 인구고령화 시대 범죄 특성과 사회정책 대응방안 모색-고령피해자를 중심으로

[그림 4-8]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

아래 지원 내용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를 통해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지원 제도	내용	신청기관 및 문의	신청 (체크)
법률 지원	• 피해자국선번호사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법률 조력	검찰청(1301) 경찰청(112)	☐
	• 진술조력인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장애인·아동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조력	검찰청(1301) 경찰청(112)	☐
	• 법률구조	무료 법률상담, 민사소송 대리	법률구조공단(132)	☐
경제 지원	• 범죄피해구조금	사망·장해·중상해(2개월 이상) 시 (최대 1억 5천만 원)	검찰청(1577-2584)	☐
	• 생계비	범죄피해로 생계 곤란 시(월 50만 원 이상)	검찰청(1577-2584)	☐
	• 학자금	학자금 지원(학기당 최대 100만 원)	검찰청(1577-2584)	☐
	• 장례비	피해자 사망 시 장례 비용(최대 400만 원)	검찰청(1577-2584)	☐
	• 강력범죄 현장정리비	피해현장 정리비 (6월 이하 최대 65만 원, 6월 이상 최대 400만 원)	관할 경찰서	☐
의료 지원	• 치료비, 심리치료비	5주 이상 치료 필요시 심비 (연 1,500만 원, 최대 5천만 원)	검찰청(1577-2584)	☐
	• 심리치유(전국 16개소)	범죄피해 트라우마 무료 심리 치료 (스마일센터)	스마일센터 총괄 지원단(02-333-1295)	☐
	• 피해자 전담 경찰관	통상 전담 경찰관 조력	관할 경찰서	☐
보호 주거 지원	• 이전비	보복우려 거주지 이전 시 이사 심비	검찰청(1577-2584)	☐
	• 임시주거(전국 16개소)	스마일센터 임시 거주	스마일센터 총괄 지원단(02-333-1295)	☐
	• 임시숙소(449개소)	보복우려 거주지 이전 시 임시숙소 제공	관할 경찰서	☐
	• 위치확인장치 지급	보복우려 시 응급 출출 장치 지급	관할 경찰서 검찰청(1577-2584)	☐
	• 신변보호	맞춤형 순찰, 주거지 CCTV, 피해자 번호 112 등록 등	관할 경찰서	☐
기타	•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임대주택 임대 연계	검찰청(1577-2584)	☐
	• 형사절차 정보 통지	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상황, 출소 정보 통지(형사사법 포털 KICS)	검찰청(1577-2584)	☐
	• 기록 열람 등사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 열람 등사	검찰청(1301)	☐
	• 법정 동행	법정 출석 시 동행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 영상물 삭제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 위 지원제도 이외에도 통합지원 기관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를 통해 경제적 지원(5주 미만 피해)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지원 여부 및 신청 결과는 기관의 심의를 통해 결정 후 별도 통보 되며, 신청 내용별로 상세 필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측의 QR코드 나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홈페이지(http://www.moj.go.kr/cvs/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법무부 인권구조과(2022.3.31., p.4).

2. 이슈별 범죄피해 지원

가. 노인학대 등에 대한 보호 지원

1) 노인학대 보호 지원의 법적 근거

노인 대상 학대는 가정, 사업장, 병원, 식당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이다. ‘가정’이라는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암수성이 매우 강한 범죄이다(경찰청, 2022, p.131). 형법에서 학대에 대한 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자기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는 그보다 중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73조).

한편 우리나라에서 노인 범죄피해에 대한 별도의 대응 법률과 정책은 노인학대 보호 지원이 유일하며,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다(이승현 외, 2017, p.4).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형법 중 폭력의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노인의 범죄피해에서 학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신고 의무 강화, 사안 조사 시 경찰의 동행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서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노인학대에 대한 형태적 분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적 학대는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 성적 행위를 의미하며,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은 경제적 착취와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위험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는 행위를 말한다. 유기는 보호자나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의미한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4).

2)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³⁶⁾

2004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되었으며, 제39조의 5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6년 개관하여 ① 가정 내 학대 및 시설내 학대, 기타 노인인권과 노인 학대 관련 연구와 사업개발, 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노인인권 교육,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③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캠페인 실시, 홍보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홍보사업 추진, ④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 관련 대외자료 제공, 노인보호전문기관 실적 취합·

36)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s://noinboho1389.or.kr/>)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관리와 협력체계 구축·교류,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등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전국 17개소에 설치된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24년 현재 37개소이다.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사업은 ① 24시간 노인학대 긴급전화(1577-1380) 설치 운영을 통한 신고접수, ②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시 현장조사, 사례판정, ③ 지역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와 가족 상담·복지·법률·의료·일시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 ⑤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개입 평가 및 확인을 통한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교육 실시 등이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9의 의해 학대피해노인을 일시 보호하고 심신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24년 현재 전국 20개소가 운영중이다. 쉼터에서는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 자문 요청,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쉼터는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입소하지 않고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이나,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6개월까지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3).

3) 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 운영

경찰청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학대예방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 APO)을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경찰청, 2022, p.90, p.129). 학대예방경찰관은 학대에 대한 ‘예방-수사 연계-사후관리’ 등을 총괄하며 학대 전반에 대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경찰청, 2022, p.129). 2019년 603명에서, 2021년 671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경찰청, 2022, p.92), 학대예방경찰관은 아동학대, 여성학대, 노인학대 등 대상별로 학대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이다. 학대예방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데이트 폭력범죄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들 범죄의 특성상 지속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112 신고시스템 등과 연동한 별도의 고도화된 APO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력관리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경찰청, 2022, p.94). 학대예방관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선정하여 A(위협)등급 월 1회, B(우려)등급 격월 1회의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담 및 수사에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보호 지원을 하고 있다(경찰청, 2022, pp.100-101). 또한 학대예방경찰관과 지역의 민·관·학 각 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운영하는 등 ‘다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에서 지역자원과 연계한 피해자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경찰청, 2022, pp.101-103).

또한 경찰청은 이외에도 암수성이 강한 노인학대의 특성에 맞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매년 6월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전후해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신고의무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신고 앱인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매체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경찰청, 2022, p.131, p.133).

4) 성년후견제도³⁷⁾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에게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며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 7월 도입한 제도이다. 후견 범위는 피후견인의 상황에 맞춰 재산, 치료, 요양 등 신상 관련 각 분야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더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임의후견’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의 종류는 <표 4-10>과 같다.

<표 4-10>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내용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개시 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의후견 개시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자료: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2024). 성년후견제도.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에서 2024.1.2. 인출

37)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에서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관할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을 통해 승인된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별로 후견 개시 청구권자에 해당하는 자가 법원³⁸⁾에 성년후견 등 법정 후견 개시 청구를 한 후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의 가사비송(非訟)사건 청구를 위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과 함께 감정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법원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 2). 법원은 피후견인 본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의사 감정을 통해 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피후견인 본인을 행위능력자로 보는 특정후견 및 임시후견의 경우 감정 대신 의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은 본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후견인 선임-법정 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을 심판하며, 후견인의 변경이나 후견종료 등에 대해서도 법 규정을 통해 법원에서 심판한다.

한편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사무처리를 해야 하며,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후견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민법 제955조).³⁹⁾ 이 연구 추진을 위해 실시한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결과, 성년후견제도에 의한 후견인은 친인척이 아닌 경우 변호사 등이 지정받고 있지만,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후견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8) 후견 관련 관할 법원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지원 포함)이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 포함)이다.

39)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5) 공공후견인 제도⁴⁰⁾

중앙치매센터는 치매노인 사기 보호 지원 등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기본적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연령, 치매 정도, 경제수준, 가족의 유무와 관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선정하고 가정법원에 공공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요청하여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치매관리법 12조 3의 근거하여, 치매환자 중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지만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한정후견 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치매환자는 ①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③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의 지원 대상은 치매환자 중 소득수준과 가족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며, 가족 요건은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또한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

40)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https://www.nid.or.kr/support/info_custodian1.aspx)에서 2023.8.10. 인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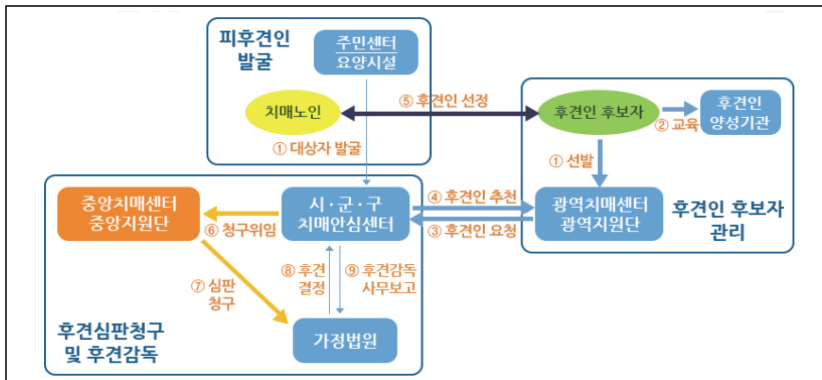
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비 월 20만 원(월 최대 40만 원까지 가능)이며,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사업은 치매노인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의 문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후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치매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되며, 후견 활동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치매안심센터와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는 후견 활동 점검을 위해 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상의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의 진행 절차는 [그림 4-9]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4-9]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진행절차



자료: 치매안심센터(2024). 치매공공후견사업. https://ansim.nid.or.kr/introduce/custodian_service.aspx에서 2024.1.15. 인출

공공후견인의 업무는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지원, ②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③ 거소 관련 사무 지원, ④ 일반 공법상의 신청행위 지원, ⑤ 일상생활비 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이다. 다만 특정후견인의 업무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업무에 한하여 실시한다.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인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탐색과 신청 과정 등에 필요한 사무를 지원하고(업무 ①), 정기적으로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 적절한 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계약 체결 등의 의료행위 이용을 지원한다(업무 ②). 일반적인 병원 진료, 약 처방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후견인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술 등과 같은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공공후견인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각종 유지 및 보수 계약 체결 등 거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업무 ③),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관련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업무 ④). 또한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공공부조 등의 통장 관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 지출 등의 사무 처리를 지원한다(업무 ⑤).

한편 성년후견제도와 마찬가지로 공공후견인 제도는 한국에서 도입 초기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공공후견인은 공식돌봄제공자 등 개별적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후견인으로 지정된 후 실제 역할의 불명료성, 후견인 지원자의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 공공후견인 제도 모두 장애인공공후견과 같이 후견법인을 통해 운영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제철웅·김원태·이용표·이세희, 2016; 이지은, 2020).

나.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보호 지원⁴¹⁾

1) 보이스피싱의 개념과 법적 근거

보이스피싱에서 피싱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이며, 피싱 사기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범죄에 해당된다. 피싱 사기 유형은 자녀 납치 및 사고빙자 편취,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한 송금 요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카드론 대금 및 예금 편취, 금융회사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하거나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여 편취, 신용카드 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물품 대금 오류 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등의 유형이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소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별 행위에 대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41)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에서 2024.1.15. 인출)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조 2항).

2)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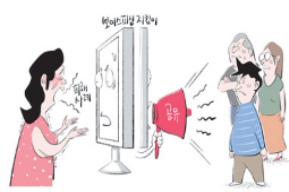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해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의, 사기 유형, 주요 제도 등에 대한 안내와 예방, 피해 후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그림 4-10]과 같이 1) 금융회사,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피해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2)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pd.fss.or.kr>) 사고 등록, 3) 계좌정보통합 서비스(www.payinfo.or.kr) 및 금융회사 영업점에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 4) 명의도용방지 서비스(www.msafes.or.kr) 및 금융회사 영업점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일괄 지급정지 신고, 5) 악성 앱 설치에 따른 악성코드 감염 시 바로 삭제 및 휴대전화 초기화, 6)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 사례를 공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거나 주변의 피해를 알게 된 경우 1) 경찰청에 보이스피싱(전자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제보, 2) 금감원에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용 중지 신고, 3)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택배,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악성앱 설치 유도 포함)하는 URL 등을 포함하는 스미싱 문자메시지 차단 신고, 4)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화 및 문자 발송 시 변작된 발신번호로 표시하는 행위를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신고 및 제보를 기관별로 진행하는 데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

해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 내에서 ‘원클릭 통합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4-10]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01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경찰(112),금감원(1332),금융회사에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02 개인정보 노출등록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http://pd.fss.or.kr)사고등록
03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  계좌정보통합서비스(www.payinfo.or.kr) 및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일괄지급정지	04 명의도용 신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ar.or.kr) 및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일괄지급정지
05 악성앱 삭제 및 휴대전화 초기화  악성코드 감염시 바로 삭제 및 휴대전화 초기화	06 피해사례 공유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사례 공유

자료: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2024). <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에서 2024.1.15. 인출

3)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보호 지원

경찰청은 2021년 기준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1)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 신설 및 합동 대응체계 활성화, 2) 종합 특별단속 추진, 3) 범죄 이용 전화번호·악성 앱 등 통신수단 차단체계 고도화, 4) 전자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5) 피해예방 홍보, 6) 관계기관 협업, 법령·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경찰청, 2022, pp.193-19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은 점차 조직화,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범죄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합동 운영하고 있다. 전국 발생 사건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범행 이용 수단과 수법 등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변종 수법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범행 중인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 범죄조직을 원점 타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통신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삼성전자, 카카오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범행에 이용되는 통신수단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피해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전화금융사기 신·변종 수법에 대한 영상물 제작과 배포, 금융감독원과 협업한 금융기관에 관련 홍보자료 배포, 각 시도 경찰청에서 지역 실정에 맞춘 홍보를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경찰청, 2022, pp.193-195).

4) 금융거래 제한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보호 지원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제도는 전자금융거래 제한, 지연인출 제도,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한도 제한계좌 제도, 피해금 환급 및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이 있다. 피싱범죄 특성상 주로 금융회사의 금전거래를 통해 개입하며, 특히 금융 창구가 아닌 비대면 거래에 적용되고 있다.

개별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거나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피해구제 신청의 모든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등의 거래 제한이 종료된다.

지연인출 제도는 ATM 지연인출 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등이 있다. 먼저 ATM 지연인출 제도는 입금계좌 기준 1회에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카드 등을 이용하여 ATM기, CD기 등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송금 또는 이체된 경우 30분간 인출이체를 지연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참여기관은 요구불예금 취급기관으로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증권사 일부 등이다.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하다.

ATM 지연인출 제도 이외의 서비스는 금융회사(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⁴²⁾ 은행에 따라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본인의 신청에 한해 금융회사 창구 이외의 정보

42) ATM 지연인출 제도와 달리 이들 서비스는 모두 금융창구 거래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화 기기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 이상의 일정 시간을 경과한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는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이다. 해외 IP 차단 서비스는 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사용 IP 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는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금융자산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예방하기 위해 단말기를 지정(단말기 지정 서비스)하거나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시 추가인증(추가인증 서비스)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말기 지정은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최대 5대까지 PC, 스마트폰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미성년자, 외국인 등을 포함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한도제한계좌 제도는 요구불계좌 신규 개설 시 해당 계좌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좌 활용 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때 지급이나 이체금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도제한계좌는 금융회사별 1인당 1계좌에 한하며 영업점 창구거래 여부에 제한 금액의 차이가 있다. 영업점 창구거래 100만 원, 그 외(ATM 거래, 전자금융거래) 30만 원이다.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증빙서류, 또는 금융회사별 일정 기준(등급, 거래 실적 등)을 충족한 경우 일반계좌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피싱 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및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한 계좌의 피해금을 채권소멸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피싱 사기 피해자는 사기 이용 계좌에서 소멸된 채권이 피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멸채권 환급 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제4절 소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련된 법적 근거와 제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령 범죄피해자를 배려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범죄피해 보호 지원은 크게 피해자의 신변보호, 형사절차상 피해 보호,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 지원,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범죄피해 보호 지원 제도는 범죄 유형별로 대부분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여성과 아동,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학대에 대응한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장애인, 아동, 청소년의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대해 배려한 제도-진술조력인 제도 등-는 있으나 고령자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고령층을 독립적인 의사결정자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인지기능의 저하나 정보의 부족 등으로 범죄피해로 인한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전반적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연령 계층에 따른 배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보호 지원 업무를 위한 매뉴얼이나 범죄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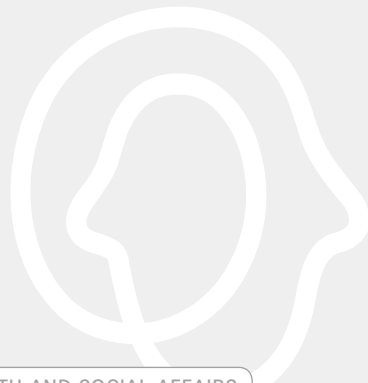
자 지원 통합 매뉴얼에 고령자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학대는 중앙 및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보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도 2016년부터 학대예방경찰관을 배치하여 노인, 여성, 아동 등의 가정폭력 및 학대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의 경우 학대예방경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 보호를 추진하고 있었다. 한편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가정폭력이나 학대, 재산범죄 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년후견제도, 더 나아가 최근에는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기능 및 치매 환자 중 저소득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경제적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5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범죄피해 이후 보호 지원 차원에서도 공공후견인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직 제도 초기 단계에서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노인학대 이외에도 제2장 이슈별 범죄피해에서 다룬 보이스피싱 역시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유관 부처와 함께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 지원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실제 고령자의 범죄피해 이후 보이스피싱 당한 금액을 환수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었다. 범죄피해로 인한 보호 지원은 법무, 복지, 보건,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한 기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최근 지역사회 재가노인 대상 돌봄을 공급자 중심의 개별 돌봄에서 통합돌봄체제로 전환하는 보건복지부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원스톱 창구에서 범죄피해가 신고, 확정되는 경우 상담 매니저가

범죄피해자 및 가족과 상담 등을 통해 범죄피해 실태 확인 및 피해자의 욕구 등을 파악하여 보호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범죄피해 보호 지원 제도 현황 파악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의견 결과, 2020년대 들어 미투(me too), N번방 사건, 데이트 폭력 등이 젊은 여성 대상 범죄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키 관련 정책들의 확대가 눈에 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성폭력, 데이트 폭력이 고령층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제3장의 양적 분석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직 이슈화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설명한 전형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포함하며, 최근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변화까지 함께 설명하였기에 성폭력 관련 보호 지원 제도를 별도로 살펴보지는 않았다.



제5장

고령자 범죄피해 보호 지원 문제와 개선에 관한 질적 분석

제1절 질적 분석 개요

제2절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제3절 범죄피해 지원 전반의 문제와 개선

제4절 서비스 연계 등의 문제와 개선

제5절 소결

제 5 장 고령자 범죄피해 보호 지원 문제와 개선에 관한 질적 분석

제1절 질적 분석 개요

1. 연구 목적

이 장은 고령자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IDI)을 실시한 내용을 다룬다. IDI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진행하였으며(IRB 승인번호 제2023-0163호), 제3장의 자료 한계로 파악하기 어려운 최근 범죄피해 및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 제4장의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보호 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절차와 문제점, 현장 전문가 입장에서 의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2. 자료수집 및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고령자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IDI를 실시하였다. 고령자 보호 지원 기관은 노인 전문보호기관, 치매안심센터이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와 경찰서이다.

IDI 참여 대상은 전문가 자문과 추천 등을 통해서 기관의 범위를 먼저 정하였으며, 이후 조사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의 협력하에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기관별로 섭외를 진행하였다.⁴³⁾

조사기간은 2023년 10월 5일에서 12월 8일이며, IDI는 조사 대상자

에게 사전에 안내한 구조화된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1:1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세부 업무 특성에 따라 소속 전문가 2명이 IDI에 참석하였다. IDI 시간은 개별 조사별로 약 6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자유로운 발언권을 보장하며 진행되었다. 면접 장소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에 맞춰 줌(Zoom) 또는 회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전문 면접원의 진행하에 실시하였다.

연구진은 인터뷰 진행 전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하였다. 또한 일부의 경우 연구진이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조사업체의 협조하에 모두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으며, 이후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의견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연구진은 매번 조사가 끝난 후 전문 면접원과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진행될 조사에 반영할 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결과 해석 과정에서 연구진 회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IDI 결과는 연구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청취하여 정량조사보다 심층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한 대신, 조사 대상이 소수인 관계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IDI 주요 내용은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범죄피해 보호 지원 전반, 범죄피해자 서비스 연계, 기타 사항의 4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각 주제의 하위 세부 내용은 <표 5-1>과 같다. 그러나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조사 대상의 소속기관 업무 특성에 맞춰 일부 주제에 좀 더 집중하거나 질문을 제외하기도 하였다. 가령, 범죄피해 실태는 경찰서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에서 좀 더 공식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고 노인보호전

43)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변호인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조사 대상 모집이 어려워 최종적으로 배제하였음을 밝힌다.

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와 관련된 특화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공공후견인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표 5-1〉 개인심층면접 주요 내용

항목	내용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전체 범죄피해 현황 및 최근 10년간 변화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현황 및 특징, 최근 10년간 변화 업계 전반적 현황 및 인식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전반	보호 지원 업무 전반의 문제점 보호 지원 업무 전반의 개선점 피해자에게 우선 지원해야 하는 사항
범죄피해자 서비스 연계	서비스 연계상의 문제점 서비스 연계상 개선점
기타 사항	기존 정책 개선사항 공공후견인 제도 등

3. 조사 참여자

조사 참여자는 소속기관 유형별로 A, B, C, D로 구분하였으며, 집단별로 5명의 참여를 기준으로 하되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던 집단 D는 4명이 참여하였다. 성별은 남성 10명, 여성 9명으로 비율이 비슷하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2명으로 비수도권 7명보다 많다. 유사 경력을 포함한 전체 경력은 최소 3년에서 최대 27년인데, 10~15년인 조사 참여자가 약 절반이다.

〈표 5-2〉 개인심층면접 조사 참여자

집단	구분	성별	지역	경력 (유사경력 포함)	집단	구분	성별	지역	경력 (유사경력 포함)
집단A	A1	남성	수도권	10년	집단C	C1	남성	수도권	15년
	A2	남성	수도권	13년		C2	남성	수도권	13년
	A3	여성	수도권	9년		C3	여성	비수도권	3년
	A4	남성	비수도권	18년		C4	여성	수도권	11년
	A5	남성	수도권	19년		C5	여성	수도권	15년
집단B	B1	남성	비수도권	23년	집단D	D1	남성	비수도권	25년
	B2	여성	수도권	10년		D2	여성	비수도권	7년
	B3	여성	비수도권	13년		D3	남성	비수도권	26년
	B4	여성	수도권	9년		D4	남성	수도권	27년
	B5	여성	수도권	20년					

제2절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1. 범죄피해 현황 및 최근 경향

최근 강력범죄 피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살인, 폭행, 성, 방화, 강도 등의 주요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회 환경에 따라 범죄 유형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CCTV 등 안전장치 강화로 강력범죄의 피해는 줄어들었으나 반대로 5대 범죄(살인, 폭행, 성, 방화, 강도)는 증가하고 있는 편이다.

“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백서였나요? 그거를 통해서 전체 건수를 보고 있는데 아직 22년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올해 치는 내년 정도에 나오겠죠? 그거를 봤을 때는 줄어들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상담이나 그런 건수는 조금씩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강력범죄에 관련해서.” (A1)

“요즘에 보면 성범죄, 성폭력이나 성범죄, 가정폭력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늘고 있다.” (A1)

특정 범죄와 관련해 새로운 법률 마련 혹은 모방범죄 발생 시에는 일시적으로 해당 유형의 범죄율이 증가하기도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Me Too movement) 등 성인지 감수성이 증가하면서 성폭력 관련 범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늘어나고, 관련 법 개정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특히 데이트 폭력,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이 최근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 생산 과정에서도 성폭력 등의 특정범죄의 증가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전략) 전반적인 강력범죄는 줄어드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 5대 범죄 중에서도 사회에서 많이 아까 이상행동 범죄라든지 이런 범죄들은 약간 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한 1년 2개월 전에 스토킹 범죄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이 되는데 그러면 또 스토킹 범죄가 조금 늘고, 약간의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범죄도 약간 유행을 타고, 모방범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행을 탄다. 그때그때 사회 환경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구요.” (A2)

“많은 유형은 폭행하고 강간 사건이에요 성폭 관련 사건이 많아요. (그게 늘어나는 추세예요?) 데이트 폭력, 카메라 이용 촬영, 스토킹 그런 것들은 확실히 늘어났어요. 특히 카메라 촬영해서 협박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요. 연인들 간이나 아 니면 헤어지고 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집 앞에서 스토킹, 자기가 직장을 알기 때문에 가서 만나달라, 나는 못 헤어진다 그런 사건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A3)

“교제하잖아요. (이성)교제할 때 이제 강제로 내가 원치 않고 그리고 이렇게 강제 추행도 성폭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억지로 강간하는 것도 성폭력이다. 다 성폭력 범주니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략) 예를 들어 나는 진짜 순수하게 (무도장, 콜라텍) 춤을 배우러 간 거야, 운동하려고. 근데 남자가 다가와 집적 거리는 거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만지거나 하면 추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일로.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대개 디테일하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범죄 사실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고 통계를 낼 때 그거 항목별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성폭력이 범죄에 포함돼서 통계를 내다 보니깐 이렇게 된 거고.” (D4)

1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할 때 전체 범죄피해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질문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기술과 사회의 변화가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듯이 새로운 범죄피해 유형의 출현 등 범죄피해 양상이 바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범죄의 수준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근 SNS 등 소셜미디어의 발전과 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 등에 따라 온라인 방식의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 변화와 범죄 발생 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과거와 달리 보이 스피싱 같은 지능화된 경제 피해 사례의 증가를 체감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보이 스피싱은 지식인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범죄 유형은 사기가 많습니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SNS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 성 관련되는 범죄들이 늘어나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역시 SNS 문화나 사회적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A4)

“강력범죄 관련해서는 5년 전, 10년 전에는 연 30만 건 정도 발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28만 건, 26만 건 그런 식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로 파악하고 있고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경제 관련 피해를 보신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더라는 거는 느낍니다.” (A1)

“근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예전에는 좀 무지했다기는 좀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지금은 지식인들도 그 의사도 당하고 변호사도 당하고 판사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회에 그걸 각 계층 막론하고 이제 요즘에는 스미스피싱이라고, 문자메시지로 청첩장이나 부고장이 온다거나 자녀 사칭해서 카카오톡 온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게 많이 당하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D4)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가정 내 폭력이 늘어났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안에서 더 오래 머물며 가족 간의 불화가 폭력이나 학대로 이어지고, 이는 성인뿐 아니라 아동 대상으로도 증가하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집안 생활을 많이 하면서 확실히 가정폭력이 늘었었거든요. 아동학대도.”(A3)

2.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현황과 전망

고령 범죄피해자의 현황은 어떠한지 물었을 때, 조사 참여자는 전통적인 가정폭력이나 학대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노인학대를 보면, 정서적·신체적·경제적 학대가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동시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노인학대의 경우 오랜 기간 누적되어 그 상황이 심각한 특성이 있었다.

“주로 고령자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유형을 보면 첫째는 가정 내에서 존속 간의 폭행 상해 피해자들이 많이 차지하고요. 두 번째는 고령자 피해자들이 타인에 의해서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경우 또는 최근에는 고령자 피해자인 경우에도 성범죄도 당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 이런 범죄피해자들이 저희 센터에 주로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노인학대 문제가 조금 증가한 것 같습니다.” (A2)

“과거부터 가정 폭력이 있었던 가정이 노인 세대로 이어져 오면서 그 가정폭력의 연속인 거죠. 사실 저희는 만 65세 이상 대상을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정폭력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이게 만 65세가 넘으니까 노인학대로 분류가 돼서 이게 또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B4)

“(노인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유기 수준인데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녀분들이 집까지 만들어주고, 생필품 갖다 슈퍼마켓이나 배달시켜드리고 근데 자녀들 안 찾아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법망을 피해서 가시는 경향들이 생겨나요.” (B1)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가 신체적 학대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만약에 신체적 학대가 있거나 경제적 학대가 있으면 정서적 학대도 같이 항상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B4)

“신체랑 정서랑 같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2)

“신고 접수했으니까 가서 얘기 들어보면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렸다. (중략) 가정 폭력이나 노인학대는 (오랫동안) 누적된 경우가 많아요. 한두 번 정도로는 (신고되지 않아요.)” (D3)

범죄피해 유형이 앞에서 말한 전통적인 상해나 가정 내 폭행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스토킹, 성범죄 등 다양화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고령자 대상 범죄의 경우 과거와 비교 시 최근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젊은 세대에게만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 연인간에서도 이와 같은 범죄피해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다.

“해가 갈수록 존속 상해가 늘어나요. 경찰서 단계에서 신고 접수됐다가 취하된 건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데이트 폭력, 카메라 이용 촬영, 스토킹 그런 것들은 확실히 늘어났어요.” (A3)

“가족 간의 학대, 시설 내 학대 외에 사실혼 관계나 연애 관계에 있는 데이트 폭력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B3)

그리고 덧붙여, 고령자의 경우 아직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피해 사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즉 가정사로 치부해 숨기거나 본인의 피해 상황을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수 범죄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령층의 높은 암수 범죄 피해 가능성은 학계 전문가 자문과 문헌검토에서도 계속 지적되었다. 다행인 것은 고령자의 경우 주변의 친구, 이웃과 범죄피해에 대해 이야기하여, 이들이 피해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진짜 많이 다치지 않는 한은 어디 알리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사회 경험을, 쪽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이 정도는 덮어뒀도 된다. 굳이 이런 형태가 젊은 친구들하고는 다르죠. 젊은 층들은 내 권리가 통제를 받으면 내 권리를 찾기 위

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다면 그렇죠. 개인정보 동의해서 여기서 안내 받겠다. 이런데 고령자는 그걸 약간 꺼려 하고, 드러내놓고 그걸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죠.” (A5)

“본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외부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하는 어르신들의 특징이 더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자녀들 하는 거에 대해서 은폐를 하고 그게 아니라고 감싸고,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잘 안 하셨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경찰 통해서도 많이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직접 신고하는 비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B4)

“(전략) 조금만 있으면 영감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려다, 참고 살려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또 친구도 자녀분이나 이웃에서 신고를 안 해주면 당사자분들이 신고를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암수 범죄가 노인들의 범죄는 좀 암수 범죄가 훨씬 드러난 것보다 많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D1)

“어르신 분들이 직접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얘기하다가 (보이스피싱 피해 당한 이야기가) 나와서 주변 분들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하고 혼자 끔공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따가 다른 분을 만난다든지 사회복지사를 만난다든지 하다가 얘기하다가 그래서 나온 경우가 많아요” (D3)

또한 이러한 고령 범죄피해자의 강한 보수성은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더디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기에 그로 인한 심리치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피해 발생 규모가 커진 보이스피싱은 고령층의 경우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등 고령층에게는 다른 연령층보다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충격은 심하실 텐데 본인들이 감내를 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심리치료까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세요.” (A2)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 피해자들에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체적인 고통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병원에 치료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는 어르신들은 사실 회복이 더디죠. 신체적인 부분도 회복이 더디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참 어르신들이 회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4)

“정신 치료, 심리치료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는 정신은 멀쩡하다.” 하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A1)

“속앓이하는 거야. 보이스피싱 당했다, 내가 바보인가 자책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 명예가 더 소중한 거지,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신고를 소극적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자식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이 자식들한테 알려봐야 좋은 소리 들나요? 대부분 자식들은 잔소리부터 하죠. (중략)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D4)

고령자 범죄피해 증가의 이유에 대해서는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 대상 범죄피해 사례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일반 가정폭력범죄 피해로 구분되었던 사례가 65세를 넘어가면서 노인학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과거와 달리 교육의 수준과 인식이 높아졌기에 피해 발생 후 신고 접수로 이어진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또한 이는 공공기관의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의 성과라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가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이 길어지겠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 활동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니까 수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A4)

“작년 대비에는 높은 수준 신고율이 높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예방 교육도 많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노인학대가 없었는데 생겨서 신고가 되기보다는 이게 사람들이 이런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걸 조금 알게 되면서 신고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젊었을 때부터 계속 가정 폭력이 계속 발생이 된 것들이 노인학대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실은 아예 그 전에는 없었던 건 아닌데 이런 기간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노인학대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신고가 요새 최근에 된 것 같아요.” (B2)

조사 참여자들은 최근 치매환자의 증가, 독거노인의 증가 역시 고령자의 범죄피해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 있었다. 특히 치매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홀몸 치매노인이 늘어나고 있고, 치매환자 대상 경제 피해도 비례하여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경제적 여건과 범죄피해 사례 간 상관관계가 없어, 저소득 노인 역시 재산상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령화가 됨으로 인해서 치매환자가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치매환자 중에서 요즘은 독거 홀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치매환자도 마찬가지로 예전과 비해서 홀몸 치매 어르신 많이 생겨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C1)

“그 지역사회 안에는 (노인 대상 금전 갈취가) 정말 많아요.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수급비로 기초 기본적인 생활을 하라고 주는 건데 옆에서 이거 수급비 나올 때마다 술 먹으러 오는 남자들도 있어요. 얻어먹으려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많고, 근데 떼어낼 수도 없고” (C5)

고령자 대상 재산범죄는 치매노인뿐 아니라 일반 노인 역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많을 것이라 짐작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사인을 시켜놓고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 이미 치매 대상자분 이름으로 대출이 된 거죠. 근데 사인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동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대출 이자를 갚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C3)

“(요양보호사로부터 금전 편취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가족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잘 안 드러나잖아. 아니면 같이 공범으로 해먹은 놈들이 마음 맞아가지고 제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게 숨겨진, 오히려 이런 분들 또 고령화 시대에서는 그렇게 해서 물론 다 하지만 그것 또 뭐야 간병인이나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러 이런 경우도 있다. (후략)” (D4)

3. 최근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의 특성

노인이 주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우도 과거 10년 전과 현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의견을 물었을 때, 과거에는 절도범죄가 많이 신고되었으나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피해 사례가 대두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또한 지능화된 경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응답하였다.

보이스피싱은 재산범죄, 그중에서도 사기범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 순위를 보면 재산범죄가 상위를 차지하며,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폭행범죄 역시 고령층의 범죄피해 유형으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전략) 저희 경찰 경험상 이전에 이루어지던 범죄들 이전 절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사범, 예를 들어 절도 사범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경찰에 입직했을 때는 쉽게 말해 도둑이 잘 들었습니다. (중략) (그러나 최근에는) 범죄 기준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제 조금 사이버 쪽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대상으로 한다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경제 범죄 자체가 사기 범죄 위주로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략)” (D1)

“최근에는 고령자 대상으로 해서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범죄는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A2)

“어르신들이 많이 쉽게 노출되는 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금융사기입니다.” (A4)

“보이스피싱 무슨 사기 이런 부분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피해 정도가 심각한 사례들이 많고.” (B3)

“대부분 보면 재산범죄가 제일 많죠. 사람 사는 데에서 사기 범죄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지요?” (D4)

“어르신들은 주로 사기, 보이스피싱 그렇게 있고, 또 주민들하고의 폭행 관계. 실제로 물리적으로 맞는 것보다는, 논쟁을 하면서 말싸움, 먹살 정도 잡고 그런 게 일반적이죠.” (D3)

고령층에서도 다른 연령층과 같이 최근 성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는 신고되지 않은 범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고령층은 상해, 폭행의 범죄피해를 당하며, 제3장의 범죄분석 DB에서 확인한 것처럼 방화 피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범죄 유형으로 제일 많이 피해를 호소하시는 게 방화 피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가정폭력, 존속 상해, 폭력 상해, 살인 그리고 노인분들도 성범죄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후략)” (A1)

“노인학대 범죄 중에 성학대 부분, 아까 성범죄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저희가 하다 보면 노인들의 노인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가 사실 신고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신 것 같은데 성범죄 사건 중에 노인들에 대한 범죄피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수범죄라고 하죠. 신고가 되지 않은 범죄가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D1)

“범죄피해 유형별로 본다면,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도 있고, 강도, 상해 피해자분들도 계세요. 수적으로 보면 상해나 폭행 피해자 어르신들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A4)

고령층의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자는 노인학대와 보이스피싱에 대해 가장 많은 언급을 했는데, 고령층 내에서도 연령대별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보유 및 활용률이 높은 전기 고령층은 최근 보이스피싱 유형인 스미스피싱을, 후기 고령층은 전화 통화 및 금융창구 거래를 통한 피싱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략) 링크를 해서 그걸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러면 자기 지인이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링크를 가거든요. 그게 이제 악성 앱이에요. 그래 이제 앱이 이 폰에 깔리면 이제 해킹이 되잖아요. (중략) 이제 그거는 주로 50, 60대 그런 피해가 많고. (중략) 70, 80대 어르신들은 이제 스마트폰은 거의 사용하는 빈도가 좀 낮잖아요. 그분들은 전화 통화하면서 끊지 마라 그러고 은행에 찾아가라 그러고 주로 그런 식으로 ” (D3)

한편 가구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동시에 부양의 구조도 변화했으며, 이는 학대 가해자 비율이 아들보다 배우자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최근 요양시설의 증가로 시설 내 학대도 과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의견이 있었다.

“재산이 없으면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하세요. 재산이 없으면 부모 대접도 못 받는다. 부모가 신경 써야 되는 존재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 존재, 이렇게 인식해요.” (B1)

“21년부터 조금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게 학대 행위자 유형이 있는데 개소 이후에 아들이 항상 1위의 비율을 보였었는데 21년도부터 배우자로 역전이 됐어요.” (B3)

“요즘에는 자녀 세대들은 다 거의 분가를 하고, 노인 부부가 많이 살게 되면서 배우자 학대가 학대 행위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아들보다 더 많은 수치로 비율로 바뀌었더라고요.” (B4)

“2005년에서부터 증가해 온 걸 보면 초기에는 40 몇 건이었는데 지금은 몇 백 건으로 해서 15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입소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B5)

최근 언론매체에서 화제가 되었던, 노인 타깃 범죄 ‘실버 칼라 크라임 Silver Collar Crimes’)은 비일비재한 현실이며,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외로운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너무 흔한 사례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보호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보호 및 범죄피해 보호 지원 기관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호소하였다.

“한 가지 예로 양딸인가? 양아들인가? 아무튼 해서 상속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양아들이나 양자녀로 하는 데는 법률상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선후위 상속인이 되면 바로 그 사람들이 상속 재산을 몽땅 털어먹은 거죠.” (C2)

“(전략) 심판 청구가 돼서 권한이 주어져서 저희가 은행에 가서 1년 치, 2년 치 거래 내역을 뽑아봤더니 이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은 거의 100만 원씩 뽑혀나가는 거예요. 돈이 많을 때는 거의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다 뽑으신 거예요. 근데 이 통장을 지금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것도 고시원 원장님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걸 그랬다고 할 수 없지만 의심이 가는 거죠. (중략). 금전 관련해서 되면 안 되는데 우리 법원에 1년마다 돈 낸 거 보고해야 되는데 누가 돈을 자꾸 뽑아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흘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고시원 원장님이 어느 날 한참 지나서 본인이 적금을 드신 거예요. 본인 명의로. 근데 이 돈이 어르신 돈이었던 거예요. 1,400만 원 정도를 1년 예금으로 자금으로.” (C4)

“(전략) 근데 재산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언니네도 그렇다고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젊은 남자가 붙은 거예요. (중략) 경찰에다 이 남자가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고 기록을 남기려고 본인이 신고를 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이분이 치매환자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네요.) 봤더니 보험에 들어져 있어. 치매보험.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거죠. 근데 혼인신

고하기 전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중증으로 끊어달라고 한 거죠. 병원에서 이상해서 저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분이 계속 이상하다. 왜냐하면 계속 중증 치매로 끊어달라고 했는데 중증까지 아닌데 약을 괜찮은 것 같아서 봐달라 이래서 저희가 사례회의도 하고 가보고 노인학대 그쪽에다가 연락하고 다 모여서 회의해서 들어가보라 다 한 거예요.” (C5)

제3절 범죄피해 지원 전반의 문제와 개선점

1. 지원 전반의 문제점

대표적인 범죄피해 지원기관인 범죄피해지원센터는 강력범죄만을 다루고 있어, 그 외 범죄피해자는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변호인 선임 등의 법률서비스는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만 수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가정 내에서 경제권이 없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범죄피해지원센터라는 곳을 저희가 연계할 때 주로 이용하는 기관인데요. 그 기관은 범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범죄가 다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강력범죄만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방화라든가 강도라든가 약취 유인이라든가 이렇게 큰 중대 범죄에 관련된 피해자분들만 선정해가지고 심리적 지원, 경제적 지원 그런 필요한 지원들을 다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건이라는 게 뭐든지 강력 사건에만 한정되지는 않잖아요. 보면은 그 외에 다른 사건들이 있을 건데 범죄피해지원센터는 그 외에 사건명으로 이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강력 사건이 아닌 거는 사실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어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죄명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살인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죄

명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강력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죄명에 해당하게 되면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후략)” (D2)

“(전략) (기관에서) 상담까지 해주는데 그 외에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하려고 하니 보통 법률구조공단 쪽으로 연결을 해 주시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기초수급이든지 아니면 차상위층이 되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노인 부부 합치고 그리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재산 관계를 전체 합쳐가지고 보면은 복지에서 탈락하신 분이거든요. 재산이 이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경제적인 장악은 남편분이 다 하고 계신 상태에서 아내분은 경제적으로 의존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돈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푼돈 정도인데 그 몇백만 원 하는 변호인 선임비를 감당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D1)

인터뷰 결과 연구진은 범죄피해 발생 후 보호 지원과 관련하여, 고령자의 경우 아동과 달리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주체로 인식돼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고령자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기에,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면 관계 기관에서 개입하기 어렵고, 지원 중에도 지원 절차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아동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서 학대 정황이 있거나 하면 바로 분리가 되는데 노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권에서 의사결정 존중이라는 게 있어요. 어르신은 원하지 않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인권에 위배되는 상황이라서.” (B1)

“저희가 사실상 저희랑 있을 때는 서비스를 받겠다고 의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대상자한테 연락했을 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종결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B2)

피해 보호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 이동 등 진행 과정상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특히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서류 준비 등 행정 절차를 이해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더불어 신체 거동 어려움 등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 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노인분들, 고령층은 일단 서류를 잘 못 내세요. 필요서류가 있어야 지원하는데 서류를 잘 못 내시는 경우가 많고, 말귀가 되게 어두우셔서 여러 번 설명드리고 종이에 써드리고, 문자로 보내드리고 해도 서류를 준비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A1)

“노령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갖춰야 할 서류 준비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잘 몰라서 피해가 조금 더 보호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에게 국고가 제공되는 형태다 보니까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을 할 때 약간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서 떼어야 될 서류.” (A2)

“서류를 떼려고 해도 못 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A3)

지원 과정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자녀가 있거나 혹은 자녀가 소득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나 연계가 어려워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나 차상위가 못돼요. 자녀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녀들이 어르신들을 경제적이다 뭐다 뒷받침해 주지는 않은 차라리 자녀가 없는 분들은 차상위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가실 데가 많아요.” (B1)

“자녀분들이 고소득이어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도 안 되고 뭔가 뭔가를 할 때마다 계속 법적인 테두리 안에 막혀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서 어려웠던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B2)

범죄피해 지원 중 쉼터 등 숙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단체생활로 인한 일상 제한, 반려가족의 동행 불허 등은 범죄피해자의 불편사항으로 확인되었다.

“(전략)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여성단체에서 제공하는 쉼터 쪽에서) 위치 정보라든지 위치 추적을 당할 수 있으니까 위치 정보라든지 일단 전원을 꺼서 그렇게 부분을 해제를 한 이후에 전화를 반납을 시켜놓고 필요한 경우에만 전화기를 제공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매우 불편해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D1)

“쉼터도 다 좀 다른데,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한 곳도 있고 엄격하지 않은 곳도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폰 이런 사용 제한은 조금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가시기 꺼려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단체 생활을 하셔야 돼서 혼자 이렇게 방에 계시는 게 아니라, 단체가 이렇게 한 방에 모여서 아무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갑갑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중략) 밤늦게 몇 시까지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단체생활 해야 되고, 폰 같은 것도 마음대로 사용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심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D2)

“(전략) 최근에 노인들 같은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녀는 이미 다 결혼을 하거나 분가하거나 따로 사시는 경우가 있으시면 또 이렇게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는데, 썬터나 이런 데는 동물은 사실 들어가지는 못 합니다. 맡겨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썬터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같이 갈 수 없으니 그러면 그냥 내가 남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후략)” (D1)

범죄피해 관련 수사기관이나 보호 기관에서 생산하는 범죄피해 통계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범죄피해에 대한 정의나 분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통계 수요자 입장에서는 범죄피해 관련 자료의 신뢰도를 낮추고 어떤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남긴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확인되었다.

“(중략) 아무래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나오는 자료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대조를 해보니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정서 학대가 좀 많다고 신체 학대보다는 정서 학대가 많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관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저희 경찰 쪽에는 아무래도 사법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신체적인 학대, 폭력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공갈이라든지, 갈취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 신체적 학대가 조금 많은 것 같고,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우리 경찰 이외에도 다른 외부 기관 동이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그리고 다른 노인 관련 기관, 이쪽으로 해서 접수가 되다 보니 정서 학대 신고가 조금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D1)

2. 지원 전반의 개선점

범죄피해 현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으로 고령층의 범죄피해 신고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피해는 나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고령층의 범죄피해 신고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 유형의 지능화 및 수법의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피해 신고를 통해 향후 발생할 범죄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내가 무지해서 그렇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바보라서 그렇다, 그런 걸 인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누구나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신고해야만 거기에 대해서 회복도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범임을 잡고 못 잡고는 그다음 문제잖아요.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또 하나 잡으면서 애가 다른 사람한테 사기 칠 수 있는 거를 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후략)” (D4)

“성폭력 자체가 약간 노인학대랑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자기가 성폭행당하고 이러면 바로바로 진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세요. 근데 좀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거나 노인분들은 자기가 좀 당해도 더 자기가 그게 좀 창피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좀 노인분들이 성폭력당했다는 그런 거는 아직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범죄피해 당하신 분 먼저 이렇게 용기를 좀 내주셔야 할 부분이고. (후략)” (D2)

노인학대 등과 관련하여, 아동처럼 긴급한 상황에는 강제 분리가 가능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대, 범죄 등 잠재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제 입원 자체가 지금 금지가 됐고, 이분들이 집에서 그 난리를 치고 법적으로는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때만 법적으로 강제 구속권이 있는 건데 집안에서 부모한테 행하는 것은 강제 구속권이 없어요. 부모가 냉철하게 애가 나 때렸고, 이걸 다 진술해주면 강제권이 성립이 되는데 어떤 부모가 진술을 해주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정신 이상으로 판정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 저도 인권 쪽에 있지만 이분들이 부모 어른인 인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따로 신할 수 있는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없어요.” (B1)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강제 분리가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배우자에 의한 방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분을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도 저희가 강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B2)

한편 범죄피해 발생 이후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는 노인에게 취약한 분야로,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 관련 행정 절차는 노인에게 너무 낯설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재 노인 보호 관련 기관이나 범죄피해 지원 기관의 담당 직원도 어려움을 느껴 법 분야의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상으로 법률구조공단이나 노인복지관 등의 자원봉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간단한 상담에 그치며 소송 관련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에서 자문변호사를 정하고 있지만, 역시 전담인력으로의 배치가 아니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데 제한이 있는 상황이었다.

“어르신 혼자서 고소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재판을 진행한다든지 되게 무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에 사실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피해 보호 지원이라고 했을 때 법률 지원 쪽으로 조금 세세하게 어르신들이 조금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조금 느끼는 바거든요. 저희가 해줄 수 없는 부분, 저희가 사실 법원에 가가지고 서류를 몇 번을 써봤는데 저희도 쉽지 않더라고요. 뭐 써오라 했는데 “이거 좀 써주세요.” 저희한테 이러는데 저희도 인터넷 찾아보고 써주긴 하는데 그것까지 할 여력이 안 돼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사기 사례였는데 사실 법원에서 뭐를 써오라고 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들고 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꾸역꾸역 써주긴 했는데 저희가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할애하고, 저희 자문받는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분께 매번 도움을 받아서 하기에는 저희가 그분께 자문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 작성해 주고 고소장 고발장도 저희가 대신 써주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참고인 조사도 저희가 어르신 대신 가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법적인 진행이 될 때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 하나 세세하게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게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B3)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D1)

노인학대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수혜 기준을 가구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근거로 아동학대나 성범죄의 경우 가구소득 기준 없이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학대 노인은 신체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경우와 같이 학대 노인의 효과적 보호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

사 선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장민영, 2023, p.182).

“(전략) 성폭력이라든지 중한 범죄는 아동학대나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선 변호인을 다 선임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에 관해서는 국선 변호인 선임에 대한 건 없어요. 그래서 꼭 원하지 않더라도 원하시는 분은 이런 분들도 국선 변호인이 좀 선임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도 개선방안을 한번 생각을 좀 들었어요” (D1)

노인학대의 경우,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학대 행위자에 관한 적극적인 개입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대 피해자에게는 사후관리 강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도 학대의 심각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담경찰을 배치하고 있었다. 다만, 요양병원 등 시설 내 학대는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이며, 전문가 양성 및 현장 지침 등의 개발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노인 보호 분야에서도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후 관리 강화라든가 학대 행위자 교육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권고였다가 몇 년 전에 꼭 의무적으로 해라라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B5)

“학대 피해 노인 말고도 학대 행위자를 개입하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학대 행위자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나 중재 상담이나 이런 것을 더 폭넓게 개입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4)

“(전략) 업무는 우리 경찰 내부적으로 APO라고 해서 학대 예방 경찰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동학대 노인학대 그리고 장애인 학대 관련 업무를 보고 있고요. 저희 경찰서 관내에서 가정폭력과 데이트 스토킹 합쳐서 APO 분이 3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제가 노인학대를 담당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후략)” (D1)

“여청범죄수사팀에서 이거는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팀이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학대예방경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략)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죠. (중략) 이제 관할이 크면 경찰서가 관할이 크면 클수록 (중략). 학대예방이니깐 노인학대도 있고 아동학대도 있고 가정학대도 있잖아요. (하략)” (D4)

“학대 사례 중에 사각지대가 요양병원이에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되고 저희 노인복지법은 상관이 없는 데인데 노인학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요양병원이니깐 일반의료기관도 아닌 노인들이 계신 요양병원에 대한, 예를 들어 조선족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교포들이 와서 케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시민들은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요양병원을 가시는데 돌봄을 행하는 사람은 사실은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는 간병인 조선족 분들이 오셔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언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학대나 인권 침해 부분 심각해요. 그런데 의료법에는 노인학대나 인권침해 어르신에 대해서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라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공무원들이랑 현장 나가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B5)

“요양병원이 약간 그런 저희가 개입하는 데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싶어요. 책임 소지도 불분명해요.” (B4)

과거에 비해 범죄피해 지원 업무 종사자의 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고령자에 대한 이해나 고령 범죄피해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을 통해 관련 업무종사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순히 업무 관련 처리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고령자와 고령 범죄피해의 특성에 관해 단계적이고 보편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직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커리큘럼)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고 여성 청소년 기능 안에 저희가 지금 가정 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 노인학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된. 아무래도 내부 교육이다 보니 직원들에게 현장 신고 출동을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사건 조사는 어떻게 하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관련 규정에 맞춰서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규정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수사 관련 절차라든가, 새롭게 바뀌는 절차라든가 규정 자체를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수 교육을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1)

“저희도 요즘은 직장 교육이라고 해서 성 관련해서 인식 개선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노인분이라고 해서 범죄피해를 당했잖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경찰들도 요새는 인식 자체가 좀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 조사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게 많이 좀 인식 개선이 많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D2)

3. 우선 지원 사항

고령 범죄피해자에게 우선 지원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치료비, 생활비 등에 쓰일 수 있는 현금 지원과 AI기기 보급을 통한 현물 지원 등 다양하게 언급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항목은 치료비, 생활비 등 현금 지원이었는데, 이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소득이 없더라도 생계비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권, 신체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죠. 치료비하고, 생계비하고, 간병비. 특히나 노령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간병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거든요.” (A2)

“어르신들은 어쨌든 아낌없는 경제적인 도움이 어르신들한테는 필요하다.” (A4)

“1차적으로 생계비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쪽에서는 해 드리기는 어렵긴 한데 생활보조를 해드릴 수 있는 생활 가사도우미 그런 걸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1)

“사람마다 욕구사항은 다 다른데 사실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장 초기에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다친 분 치료비이죠.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이럴 때 치료비가 가장 급한 상황이고.” (A5)

“당장 맞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의료비 지원이 가장 긴급하고, (노인 폭력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건 어떤 건가요?) 분리가 되는 게 제일 먼저예요.” (A3)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노인의 사회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긴급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더 장기적으로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 통합이 필요하며, 자연스럽게 노인이라는 존재와 노화와 관련한 질병을 인식하는 과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프로그램들을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할 때마다 이분들에게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A4)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도 제공을 하고 ICT 기계라고 해서 “아리야, 노래 틀어줘.” 하면서 알려주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 기계를 어르신 댁에 설치를 해드리고 기계가 실은 어르신들이 학대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어르신들이 “아리야, 살려줘, 구해줘.” 라고 하면 응급 강제 시스템에 이게 달아서 이게 어르신한테 1차적으로 확인해서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112, 119까지 대처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일반적인 어르신들도 실은 노래나 이런 것들도 내가 듣고 싶을 때, 찾고 싶을 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학대 피해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화장실이 나 어디를 이동하다가 넘어졌을 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아리야, 살려줘. 구해줘.” 하면 거기 통해서 병원이나 이런 부분도 이송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B2)

제4절 서비스 연계 등의 문제와 개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운영은 법무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번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의 범죄피해 보호 지원 제도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 보호전문기관 등 기관 고유의 목적에 맞춰 피해자의 욕구에 적합한 기관 및 서비스를 원활하게 연계하는 것이 통합지원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호 지원 전반에 대한 문제의 개선과 더불어 서비스 연계에 초점을 두고 현장 전문가가 느끼는 문제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1. 서비스 연계상의 문제점

범죄피해 발생 이후, 보호 지원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의 연계 진행 시 문제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범죄피해자의 지원, 중복 수혜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관별로 연계 방식이 다르고,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사안별로 전화 등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의 부재는 연계 과정에서 또다른 행정 절차를 수반하게 되어 시의적절한 보호 지원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기관 간의 연계가 긴박하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공문 등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우선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여 연계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긴급상황에는 ‘선 연계 후 공문 발송’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일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공공기관도 섞여 있고, 민간기관들도 다 섞여 있다 보니까 다 저마다 개인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다르고, 으레 연계하는 그런 방식들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전화를 먼저 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해서 연계를 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조금 간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B4)

“사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관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썩 원활하지는 않더라고요.” (B5)

“중복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전화로 해도 안 알려주시는 데는 공문을 써서 보내달라는 때도 있고.” (A1)

“동행을 요청하면 저희는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의뢰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경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라고 하면 수사 의뢰서 써주세요. 절차들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조현병 아들 때문에 한시가 급한데 결제받고 써서 보내고 그들도 일정을 잡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바빠서 다들 그렇고, 규정이 그런 건 알고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신고 들어오면 경찰이 동행 요청을 하면 최대한 어쨌든 일정 되는 직원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절차들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B3)

반대로 지역 내 네트워크는 구성이 잘 되어 있다거나 시스템상 공동 대응이 가능하는 의견도 있었다. 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업무 과정, 사안별로 필요한 경우 회의 등을 통한 서비스, 기관 연계 등이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그 지역 네트워크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A4)

“지역에서 자원을 연계하는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이거나 정기적인 회의는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잘 연계되고 있습니다.” (D1)

“119 하고 공동 대응하는 거는 또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이제 112 사무실에 공동대응119로 요청하고 반대로 또 119에서 경찰로 요청하죠. (112와 119의) 시스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 딱 요청이 들어가면 그 쪽 시스템에 가서 PC 이제 알림이 딱 뜨고.” (D3)

고령 범죄피해자의 경우, 생애주기 특성상 신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업

무를 진행하는 데 인력, 시간 등이 더 소모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연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는 이러한 인력 부족은 곧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지금 인력이 없어요. 그렇게 행정 업무까지 지원해 줄 만큼 센터에 행정력이나 지원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아요.” (A2)

“대상자를 방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가서 라포를 형성하고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관리할 시간이. 신규는 발굴을 해야 하고.” (C3)

“저희가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은 사례 관리 같은 것을 직원들이 적극적 하죠. 저희는 인력이 사실은 창피한 말씀이지만 지금 저 포함해서 5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사 기관들은 보통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예전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든지 이런 데도 보면 여가부에 등록된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구마다 다 있는데 거기 상근 인원이 7~8명에서 최소 10명이거든요. 인천이 10개 구니까 100명이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5명이 그걸 하고 있어요.” (A5)

전국의 모든 지자체 내 쉼터 등 보호 시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연계 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향후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쉼터 피해 이용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30평대 아파트인데 정원이 5명이예요. 아마 다른 시도도 비슷할 거거든요. 사실 정원이 5명이 부산에 5명이면 상당히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저희가 지금도 항상 계속 풀로 5명이 있는 상황인데 정원이 다 차면 사실 그 어르신들은 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원을 초과해서 일시적으로 한 6명 정도는 받을 수는 있지만 되면 그 좁은 공간에서 부대끼며 살아야 되는 부분도 조금 어려운 점이 고.” (B3)

“서울도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 한 쉼터를 4개의 서울에 있는 기관에서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원은 5명 이다 보니까 이게 항상 저희도 연계를 할 때 입소가 가능한지 어르신이 정원 내에 입소가 가능한지 그런 것을 확인해야 하는 작업들이 있고요.” (B4)

또 한편 범죄피해는 법무부 등 수사기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와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고령 범죄피해자에게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역 내 공공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자원들을 찾아야 하는데 사회복지 영역에서 범죄피해자가 사회복지 영역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해야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 공공보조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범죄 피해자는 제공 영역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회복지 제도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가 상호 연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A2)

한편 노인학대 피해와 관련한 연계 지원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관련 법과 충돌해 연계 과정에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이 인권 관련 법 등 다른 법과 충돌할 경우, 어떤 법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학대의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해 정신질환 관련 기관과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만, 인권 이슈로 한계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사실은 노인학대에서 노인복지법에서는 이게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노인복지법 두 개 다 같은 법령이다 보니까 뭘 따라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애매한 선상이거든요. 개인정보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저희가 자료는 다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강화되고 나서는 자료를 아예 못 받은 경우가 더 많고,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요.” (B1)

“70대 우리 어르신들은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행정기관이나 이런 걸 방문하시는 걸 두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거 어르신들이 많은 편이고 그 어르신들이 범죄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주위에서 이분들을 정말 도와서 여기까지 모시고 온다든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더 잘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A4)

“저희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저희는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니 같이 동행을 요청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일단은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법적으로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갈 때 같이 가주셔도 된다고 해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B2)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학대 행위자들을 많이 연계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학대 행위자가 본인이 스스로 상담을 받아보겠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B4)

2. 서비스 연계상의 개선점

피해자 대상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점은 인력 충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통으로 모든 기관에서 연계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리고 노인의 신체 및 심리 특성상 장거리 서비스 연계가 어렵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등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력이나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사실 조금 더 보충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 (A1)

“인력 지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중략)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매달 들어오는 사례가 50개에서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70~80건까지 들어오는데 그 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가정으로 가서 만나봐야 되는데 그 많은 어르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상의 문제들도 조금 있는 것도 있고 다 만나뵙기도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현장 조사를 하고 나서 어르신들을 안전 모니터링을 위해서 자문 상담 진행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실은 쉽지가 않아요.” (B2)

“인력 부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질적 이런 실적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현장에서 느끼는 다른 개선점이 있을까요?) 일단 실적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를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대상자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도 싶고, 질적으로 다가가고 싶지만 그럴 여유는 되지 않아요.” (C3)

“거기서 작성 도와주고 서류를 가져와서 심의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이런 형태로 하는데 더 인력이 약간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더 찾아가겠죠.” (A5)

“어려운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법률적으로도 저희가 기본적인 건 알고 있지만 다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할 수는 없어요. 더 전문 인력 법률적으로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담은 하고 있지만 심리상담사들은 아니거든요. 학대 피해 어르신이나 학대 행위자들이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더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같이 개입을 해서 사례 관리를 하면 그래도 저희가 다른 기관에 연계를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B4)

일부 기관에서는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처우로 인해 경력을 쌓을 만큼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본 인력을 통해서 교육도 심화시켜서 교육도 제대로 잘하는 강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례 관리 인력도 노인학대 사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야 되는데 2~3년을 버티기 어려워서 다 퇴직을 하게 되면 기껏 다 양성해놨는데 5년 정도 있으면 퇴직해서 다른 데 가버리면 되게 어려움이 있죠.” (B5)

“인건비가 매년 올라서 그거 정도는 올려줘야 되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800만 원 인가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강사를 고용해서 진행하던 프로그램도 사회복지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열악하죠. 진짜 너무 열악합니다.” (B3)

이외에도 연계를 위한 전산 시스템 등이 미흡한 실정이며, 전반적으로 아동 학대 분야와 비교하여 예산, 시설, 서비스 등이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초고령사회 등 인구고령화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으나, 범죄피해 지원에 있어 아동과 비교 시 전반적으로 노인 부문이 많은 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인력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그 직원으로 하여금 가서 모시고 가서 행정 서류도 대신 발급받아오고, 신청서도 발급받아오고, 가서 가정환경 조사도 해오고 해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도 국가가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개선들이 필요한데 노령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는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A2)

“(전략) 저희는 (유관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통합시스템)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는 당사자한테 통보서를 받을 때 픽스로 받거든요. 팩스로 받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서로 정보 공유나 이런 것들도 원활하지 않는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도 전국의 ○○○○○○○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거주지가 이전이 되면 사례를 이관할 경우도 있거든요. 최근에 저도 사례 이관을 해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 같은 경우에는 상담했던 내용들이 다 작성이 된 한꺼번에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저희 ○○○○○○○ 같은 경우에는 상담 일지가 넘어가지는 않고, 개인 인적 사항이나 사회 편성 유형이나 이런 것들만 넘어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B2)

“아동과 노인을 비교했을 때 쉽더라든지 그 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저희랑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긴 하죠.” (B3)

또한 노인학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대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쉼터 등 보호 시설을 증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앞에서 서비스 연계상의 문제점에서 보호 시설의 부족

에 대한 개선으로, 인구고령화시대 노인 학대 증가 수요에 맞춰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학대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자녀분들 중에 정신 이상으로 파병된 분들은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쉼터가 한계가 있지만 요양원에서 한두 달이라도 무상으로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었으면 합니다.” (B1)

“쉼터에는 부랑자와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입소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일주일 뒤에 어딘가 갈 곳이 있는 어르신이다 하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만 입소는 가능한데 그런 어르신이 아니고 나중에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입소가 제한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르신으로 인해서 다른 입소한 학대 피해 어르신이 다른 학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분리가 긴급하게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서 분리를 할 만한 보호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B3)

“쉼터도 그렇고 노인보호전문기관도 그렇고 더 많이 증설되는 게 좋죠.” (B4)

마지막으로 지역 내 기존 자원 연계를 통한 고령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사후적인 범죄피해 보호뿐 아니라 사전적인 범죄 예방 효과 역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원활한 연계는 특히 통합적 서비스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가정 방문하는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됨으로 해서 그분들을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누군가 방문을 한다면 그 횟수가 늘어나서 일주일에 세 번 방

문을 이들에 한 번꼴로 방문을 하게 된다면 그 어르신에 대한 범죄 예방하는 효과는 상당하겠죠.” (A4)

“(전략) 통합해서 그런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보호시설 방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한다거나 그렇게 같이 케어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겠죠. 그게 원스톱인 거죠, 그렇지? 우리가 민원을 하더라도 어디 한 군데 가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잖아요. 그럼 한 방에 딱 갔을 때 여기서 모든 게 해결되면 좋은 거잖아요.” (D4)

3. 기타 사항

여기서는 앞에서 다룬 내용 외의 제도 개선사항과 공공후견인 제도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범죄피해 예방이나 처벌 수위, 노인복지제도 등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범죄피해 보호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후견인 제도는 공식적인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지원 제도는 아니지만, 무연고 저소득 치매노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실제 금전 갈취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활용되고 있었다.

가. 범죄 및 돌봄 관련 제도와의 관계

조사 대상자들은 범죄피해 발생 후 보호 지원, 지원 유형, 지원 규모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범죄피해 예방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조사 대상자들은 사회 변화,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등으로 경제적 사기 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으며, 이러한 고령자 대상 경제적 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사기 예방 교육을 복지관 같은 데서 하나의 정규사업으로 넣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약간 특화 사업처럼 진행이 되는데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게 도와주는 것도 공공에서 교육이 필요하니까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그런 교육도 할 수 있는 제도권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C2)

범죄피해 이후 지원 과정에서 기존 보호 시설은 흔히 ‘건강한 노인’만 입소가 가능할 정도로 기준이 높아 공석이 있음에도 이용 불가한 상황도 발생하는 만큼 입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고령화될수록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오는 질병의 위험이 큰 만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자원봉사자 활용, 일본의 케어매니저시스템 벤치마킹 등 고령자 대상 다양한 돌봄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학대 피해 전용 쉼터는 기본 전제가 사실은 건강한 어르신인 거죠” (B5)

“치매가 있으면 아예 입소가 안 되고, 거동이 불편하면 아예 입소가 안 되고, 사고나 낙상의 위험이 있으신 어르신은 아예 입소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제한을 두고 있어요.” (B3)

“시간을 장기요양 등급에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C1)

“사회적 고립감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지금 현재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돌봄 서비스가 정부 지원을 받는 장

기요양 재원으로만 해서 요양보호사 3시간 이런 식으로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민생위원이라는 것을 추가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원봉사자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시간 아침에 오시고요. 일주일에 이를 정도는 자원봉사자가 화, 목요일날 오게 이렇게 아예 케어 매니저가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안전망이 구축이 될 수 있고, 특히 장기요양 서비스의 특징 중에 방문요양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보통 제공을 안 하니까 그럴 때 자원봉사자가 안부 확인 정도로 하게 하면 더 그런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추상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C2)

또한,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수록, 고령인구의 특성도 한층 다양화될 것이며, 고령인구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차이도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고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대상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좀 더 단계별로 세분화된 지원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식적인 분리가 돼야 되는데요. 인식 분리가 아예 안 되는 게 문제고요.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애매하지만 요양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단체생활이잖아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65~75세까지는 젊은 층이에요. 이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기 답답해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예전에 세종에서 건축 관련해서 지금 잠깐 그분들하고 이야기했지만 어르신들을 원룸에서, 실버타운이라고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실버타운은 아니지만 요양원도 아니면서 원룸에서 어르신들이 계시면서 근거리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분들을 돌봐주고 이 단계를 거쳐서 요양원에 가실 때는 그래도 신체나 정신적으로 다운되신 분들이 요양원 쪽으로 가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요양원에 가시면 답답해 하세요.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B1)

조사 대상자들은 고령자는 특별한 존재가 아닌 자신의 미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인구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부양, 질병 문제 등 개인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의 부양책임을 강화하고, 활발한 사회 교류를 위해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을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실 부양 의무자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사회적 부양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이 커져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5)

“우리의 미래니까 인식적인 면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어르신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랑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자세라든가 혐오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도 노력하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노인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원가 되게 고집스럽고 외골수적이고.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니까 내 자신도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젊은이를 이해하고 함께하고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가지신 넉넉함이 있는 어르신의 그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르신들도 노력은 필요하실 것 같아요.” (B5)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 국민적으로 어떤 정부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인식개선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물론 대처도 중요하고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힘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늙잖아요. 나이가 들잖아요. 근데 나는 늙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지금 어르신들이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도 나중에 늙었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노인에 대한 체험을 해본다든지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B3)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인식 자체에 전환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B1)

“교육도 하고. 예를 들어서 치매가 연속극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걸 보면 치매가 걸려도 괜찮게 지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막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밥도 이상해지고 이런 거 나오면 이상해지는 거죠.” (C5)

나. 공공후견인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사항

공공후견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후견인의 업무 범위가 넓고 책임은 과중하지만, 그에 반해 보수는 상당히 낮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후견인과 요양보호사 간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공공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홀몸, 무연고자 등)이 너무 까다로워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등 의견이 다양하였다. 아직 저소득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인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제도 초기 단계이므로 이와 관련된 표준화 및 체계화가 필요해 보인다.

“20만 원 받으면서 치매환자, 홀몸 치매환자의 보호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면서 플러스 법정 대리인의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사람한테 다 전화가 가요. 주민센터나 각종 복지기관에서 다 후견인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중략)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에 대해서 법원이 계속 관리 감독하고 1년에 한번 보고서도 내야 하거든요. 그거 친족들 못합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 안 돼요. (중략) 3년에 한 번씩 이분들이 못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후견인 선생님들께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만 못 그만뒤요. 그만두고 싶으면 다른 후견인을

구해야지 그만둘 수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20만 원 받고 인생 망하게 생겼네? (후략)” (C2)

“가족도 아닌 제3자가 그 후견을 했을 때 솔직히 지금 후견 활동비가 20만 원인데 세금 때면 18만 원 얼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고, 진짜 보호자처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병원을 더 자주 가게 되고 금융 업무를 더 자주 보게 되고 아니면 주거 관련이나 아니면 복지서비스 신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아질수록 업무의 강도가 높아지니까 이에 따라서 이탈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많은 것 같아요. 보수와 비교해서 너무 막중한 책임인 거죠.” (C1)

“공공후견인 하는 일이란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란 분간을 못하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지. 왜냐하면 공공후견인은 말대로 후견 활동을 하기 때문에 후견 활동이잖아요. (중략)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분간이 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치매 안심 이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한 사람을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책임감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후견인도 모호한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아무리 책에 있지만 모호하게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C5)

“저녁때 어디 가야 된다, 내가 어딜 가야 되는데 공공후견인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힘들어하시는 거죠. 권한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처음 필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라고 필요해요. 공공후견이라는 것을 누가 자녀분들도 자녀분들이 있어도 공공후견을 하겠다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나 이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C3)

“너무 조건이 독거이고 무연고자여야 한다라는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죠.” (C3)

한편 공공후견인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후견인이 대상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신상을 보호해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아직 재산 관리는 한국 정서상 맡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평가가 많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재산을 관리하는 공공 신탁 운영과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외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해 신탁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략) 이러다 보니까 후견인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대신 축소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 후견 법인을 만들자는 얘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C2)

“공공 신탁으로 인해서 무연고자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지금 후견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관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가.” (C1)

“후견 법인이 현재로서는 제일 이상적이고 그게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외국 같은 경우도 거의 법인 형태로 가는 게 제일 많고. 재산 관리는 신탁으로 돌려버리면 관리만 되면 신상보호랑 재산 관리가 되니까 굳이 후견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후견인은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한테 충분히 더 개입을 하면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만 되고 있습니다. 신탁은 작년 말에 신탁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직 신탁에 대한 활성화는 되지 않았고, 아직은 멈춰 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풀어줄 거라는 움직임이 있고, 그거랑은 별개로 신탁을 이런 범죄에 이용하는 것은 타 외국 사례들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중략) 이런 거 해서 시중은행들이 별로 이득도 안 되니까 국민연금에서 가져간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국민연금 쪽에서 현재는 공공신탁하고요.” (C2)

“신상 보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재산 관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누군가가 제3자가 내 재산을 관리를 해준다. 이게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C1)

제5절 소결

고령자 대상 범죄 피해 보호 지원 관련 종사자들은,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인구 집단 내에서도 후기고령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등 고령층의 신체적, 정서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범죄피해자 중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 이들은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신고에 대한 거부감,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 민사에 저촉되는 피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범죄라는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고령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전체적인 범죄 유형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강력(흉악)범죄 피해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는데, 고령자가 가장 많이 당하는 범죄피해는 제2장과 제3장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재산상의 사기 범죄(보이스피싱 등)와 함께 학대 피해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과 학대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고, 범죄의 양상과 피해 수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슈별로 차별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노화에 따른 신체 및 인지 기능의 약화는 고령층의 범죄피해 가능성 자체를 높이기도 하지만, 범죄피해 이후 보호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령층의 어려움을 보완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령층의 피해 보호 지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단기간이라도 금전적 지원과 시설 지원이 충분

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4장의 범죄피해 보호 지원 제도는 강력범죄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수의 범죄피해 노인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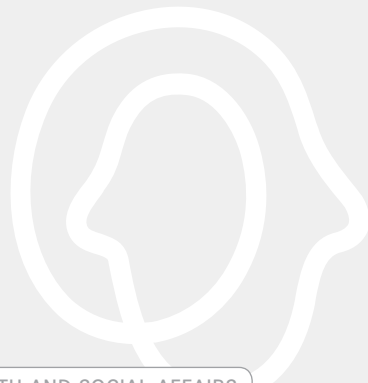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 범죄피해 관련 지원 기관의 현황을 볼 때, 인력 및 예산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을 모두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역량 있는 인력을 공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은 기본적인 행정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인력 이외에도 법률 및 정서 상담 등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인력도 필요하며,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전문성이 쌓인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고령층 범죄피해 보호 지원은 다른 연령의 범죄피해자와 달리, 지역사회 여가복지시설과 돌봄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필요한 돌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층의 경우 범죄피해로 인한 충격이 매우 크고 그 피해 보호 역시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학대의 경우 학대 행위자와 분리 조치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때 고령층의 건강상태, 생활여건(경제활동, 반려가족 등)에 따라 적합한 입소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후견인 제도는 무연고 저소득 치매노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실제 금전 갈취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제도 초기 단계에 있어, 향후 증가하는 수요와 제도 정착에 대비하여 공공후견인의 역할 명료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 대응방안

제 6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최근 고령층의 범죄피해 특성을 분석한 후 고령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사회정책 관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령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기존문헌 고찰 및 연구세미나 개최, 양적 및 질적 분석,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 각 장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인구고령화와 범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범죄피해와 고령자의 관계를 이론과 실증 연구결과들을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은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7%이며,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가입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수준이다(통계청, 2023a; OECD, 2023).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친다. 고령층과 관련해서는 독거노인 가구 증가, 고령인구의 빈곤과 노인인구 집단 내 빈부격차, 후기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능상태 악화와 인지기능의 저하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의 범죄 매력성과 취약성을 높이며 범죄피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다.

범죄피해는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며, 대표적인 범죄피해로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행 등의 강·폭력 범죄를 들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피해 유형은 정신적 피해, 사회적 관계 파괴, 신체적 피해, 경제적 피해 등이 있다. 노인은 범죄피해로 인한 회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디거나 심한 경우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 범죄피해의 심각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범죄피해 요인에 대해 잠재적 범죄가해자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개인과 가구의 특성에 주목하는 미시적 접근이 다수이며, 범죄를 유발하거나 억제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는 거시적 접근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범죄피해 취약성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고령자의 신체적, 정서적 취약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성용은, 2018; 박강우, 2017; 이승현 외, 2017). 그러나 고령자의 범죄피해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고, 범죄피해율을 설명하는 요소인 범죄 대상의 매력성 등이 낮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범죄피해 취약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고령자의 낮은 수준의 사회활동과 긴 자택 거주 시간, 단축된 사회관계 속에 범죄자와의 낮은 밀접성, 인신범죄 중 강간범죄의 경우 젊은 여성에 비해 낮은 매력도 등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박강우, 2017). 그러나 무엇보다 고령층의 범죄피해에 관한 국내의 양적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며, 고령층의 범죄피해 실태는 다른 연령층과 유사하게 재산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현세대 노인보다 경제상태와 건강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윤경 외, 2020), 고령층은 청장년층보다 범죄로 인해 받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는 점(Gay & Thomas, 1975; 박강우, 2017에서 재인용) 등에서 향후 고령자의 범죄 대상으로서의 매력성과 취약성이 확대될 것이 분명하므로, 고령자의 범죄피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고령자의 안전 이슈와 함께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학대, 보이스피싱을 이슈별 범죄피해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최근 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 행위자의 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었다. 보이스피싱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며, 그 발생건수는 감소 추세인 반면,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였다.

제3장은 고령자의 범죄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범죄 발생과 관련된 공식 통계자료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의 2000~2021년 통계를 이용하였다. 우선 전체 범죄에서는 20세 이하와 20대(21세~30세)의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가 다른 연령에 비해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젊은 여성층이 범죄피해를 많이 당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각각 남자와 여자의 전체 피해자 대비 연령별 범죄피해 비율을 보면, 50대(51세~60세)와 61세 이상 고령자에서 남녀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른 연령에 비해 50대와 61세 이상 고령자의 범죄피해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며, 이는 최근의 고령자 범죄피해에 관한 우려를 뒷받침해주는 분석결과이다.

다음으로 전형적인 형법상의 범죄인 ‘일반범죄’를 보면, 전체 피해자 중 50대(51세~60세)와 61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 비율이 증가세를 보여 인구구조 고령화와 맞물려 일반범죄 피해자도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범죄’에서와 같이 남성 61세 이상 고령 피해자가 여성보다 많다. 하지만 여성 고령 피해자는 2000년에 비해 2021년에 약 8배 증가하여 5배 증가에 그친 남성 피해자보다 증가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젊은 층(20세 이하와 20대)과 50대 이상 여성 피해자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일반범죄의 연령별 피해율은 전체 범죄에서와 같이 50대(51세~60세)와 61세 이상 고령자에서 남녀 모

두 뚜렷한 증가세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일반범죄의 하위범주 중 경제적 동기 범죄인 재산범죄에서는 전체 피해자 중 연령별 피해자 비율에서 50대(51세~60세)와 61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 비율이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 피해 비율을 보면, 50대(51세~60세)와 61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범죄 피해 비율이 남녀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여자의 피해 비율 증가세가 (남자에 비해) 더욱 뚜렷했다.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가장 높은 범죄 유형인 강력(흉악)범죄에서는, 20대(21세~30세)의 증가폭이 가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 한편, 전체 강력(흉악)범죄에서 61세 이상 고령 피해자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작았다. 그러나 강력(흉악)범죄의 모든 세부 유형에서 고령층의 피해 비율이 증가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안전 프로그램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강력범죄 유형인 강력(폭력)범죄를 보면, 2000년대에는 일반범죄 및 재산범죄에서와 같이 30대(31세~40세)와 40대(41세~50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20대와 50대가 증가세를 보이며 추월하였다. 20세 이하와 61세 이상 고령층의 피해 비율도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일반범죄 및 재산범죄에서 전체 피해자 중에서 50대(51세~60세)와 61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남녀 모두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되었다. 강력(흉악)범죄 및 강력(폭력)범죄에서도 고령층 피해 비율의 증가세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상이다.

2021년 기준, 44개의 범죄피해 소분류 기준으로 성별 및 연령별 1~15위를 살펴본 결과, 40대 이상 범죄피해자의 경우 성별 및 연령에 상관없이 사기, 절도, 손괴, 횡령 등의 재산범죄로 피해 순위가 높았으며 폭행, 상해 등의 강력(폭력)범죄 역시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고령자는 성별에 상관없이 주거침입(기타일반범죄)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다른 연령대에서 1~15위 순위에 없는 실화(과실범죄) 유형이 있었다. 고령자 중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 성폭력(강력(흉악)범죄)이 11위라는 점에서 여성 고령자 역시 성폭력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고령자의 범죄피해 상위 순위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앞의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령자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기범죄, 폭행·상해·협박 등 강력(폭력)범죄와 관련 있는 학대와 함께 주거침입, 성폭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심층면접조사 및 전문가 자문의견 결과, 주거침입의 경우 다른 범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당수 절도와 병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폭력은 버스, 식당 이용 중 추행이나 음주로 인해 발생하며 과거에 비해 범죄피해의 범위가 확대되어 최근 증가한 경향 역시 있었다. 그런데 고령층의 성폭력 피해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었다. 이 연구의 심층면접조사 과정에서 고령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범죄피해 규모가 매우 작은 상황이며,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이 잡힌 것으로 보며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측면이 있었다. 즉 고령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 성범죄 발생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고령자 간의 이성친구 교제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교제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스토킹 등의 범죄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며, 고령층의 성폭력 피해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역시 있었다. 고령자를 무성의 존재로 보는 과거의 시각에 변화가 요구되며, 고령 범죄피해자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제4장에서는 범죄피해 보호 지원 제도를 살펴보았다. 범죄피해 보호 지원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령 범죄피해자를 배

려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범죄피해 보호 지원 제도는 범죄 유형별로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여성과 아동,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학대에 대응한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장애인, 아동, 청소년의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대해 배려한 제도-진술조력인 제도 등-는 있으나 고령자는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고령층을 독립적인 의사결정자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인지기능의 저하나 정보의 부족 등으로 범죄피해로 인한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전반적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개별법인 노인복지법에서 유일하게 노인학대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연령, 즉 고령자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므로 보호 지원 업무를 위한 매뉴얼이나 범죄피해자 지원 통합 매뉴얼에 고령자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강은영, 2023.6.9.). 노인학대는 중앙 및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보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노인학대와 직접 연관은 아니나 최근에는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기능 및 치매 환자 중 저소득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경제적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범죄피해 이후 보호 지원 차원에서도 공공후견인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학대 이외에도 제2장 이슈별 범죄피해에서 다룬 보이스피싱 역시 경찰청과 유관 부처와 함께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 지원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실제 고령자가 범죄피해를 당한 이후 보이스피싱 당한 금액을 환수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이스피

싱 범죄는 피해예방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하는 지점이다.

최근 정부는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었다. 범죄피해로 인한 보호 지원은 법무, 복지, 보건,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한 기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최근 지역사회 재가노인 대상 돌봄을 공급자 중심의 개별 돌봄에서 통합돌봄체계로 전환하는 보건복지부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원스톱 창구에서 범죄피해가 신고, 확정되는 경우 상담 매니저가 범죄피해자 및 가족과 상담 등을 통해 범죄피해 실태 확인 및 피해자의 욕구 등을 파악하여 보호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범죄피해 보호 지원 제도 현황 파악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의견 결과, 2020년대 들어 미투(me too), N번방 사건, 데이트 폭력 등이 젊은 여성 대상 범죄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키 관련 정책들의 확대가 눈에 띄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성폭력, 데이트 폭력이 고령층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심층면접조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고령자 보호 및 범죄피해 보호 지원 기관 종사자 19명을 대상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최근 고령층의 신체적, 정서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범죄피해자 중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 또한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신고에 대한 거부감,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 민사에 저촉되는 피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범죄라는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고령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범죄피해

신고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범죄 유형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강력(흉악)범죄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는데, 고령자가 가장 많이 당하는 범죄피해는 제2장과 제3장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재산상의 사기범죄(보이스피싱 등)와 함께 학대 피해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과 학대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고, 범죄의 양상과 피해 수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슈별로 차별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노화에 따른 신체·인지 기능의 약화는 고령층의 범죄피해 가능성 자체를 높이기도 하지만, 범죄피해 이후 보호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령층의 어려움을 보완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령층 피해 보호를 지원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며, 이를 위해 단기기간이라도 금전적 지원과 시설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4장에서 살펴본 범죄피해 보호 지원 제도는 강력범죄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경제적 지원 및 주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수의 범죄피해 노인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노인 범죄피해 관련 지원 기관의 현황을 볼 때, 인력 및 예산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을 모두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역량있는 인력을 공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고령층 범죄피해 보호 지원은 다른 연령의 범죄피해자와 달리, 지역사회 여가복지시설과 돌봄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필요한 돌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고령층의 경우 범죄피해로 인한 충격이 매우 크고 그 피해 보호 역시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고령층이 안정적인 유대감을 갖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고령층 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적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대의 경우 학대 행위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해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때 고령층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합한 입소 환경이 마련되어 범죄피해 이전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후견인 제도는 무연고 저소득 치매노인의 사전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실제 금전 갈취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제도 초기 단계에 있어, 향후 증가하는 수요와 제도 정착에 대비하여 공공후견인의 역할 명료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2절 정책 대응방안

이 절에서는 전반적인 고령 범죄피해자 대상 정책 대응방안과 이슈별 정책 대응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그에 앞서 이 연구의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요한 정보를 제공한 2개의 문헌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이승현 외(2017)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의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고령자 관련 범죄의 예방과 단속, 형사처벌 등에 관한 해외 사례를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범죄피해 예방 차원에서 1) 고령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종사자 대상 교육의 필요성, 2) 고령인구에 대한 법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또 범죄피해 노인을 위한 보호 지원 방안으로 1) 노인 범죄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2)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리

한 시사점은 상당 부분 현행 고령 범죄피해 보호 지원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이 연구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두 번째로 김지영(2023.6.2.)은 고령 범죄피해자의 정책 욕구를 6가지로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 대응방안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 범죄피해자의 정책 욕구는 1)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의 적극 행정, 찾아가는 서비스, 2) 경제적 지원의 확대-병원비, 심리치료 등, 3) 피해자의 신변보호, 4) 주거 대책 마련, 5) 주거지 환경의 개선, 6) 시설입소 및 부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욕구는 고령자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범죄피해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는 노후된 주택에 살며 경제적인 이유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많으므로 냉방 시설 설치를 통한 창문 개폐 안전 확보, 창이나 출입문의 안전한 시건장치 등의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을 수 있다. 또한 학대로 인해 가족과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고령자는 정보 확인이나 정책 인지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자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때 다음 사항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노인 범죄피해의 높은 암수성(hidden crime)으로 인해 양적 조사보다는 질적 조사의 필요성, 2) 노인 범죄의 사각지대 관련 조사 부족(요양원 및 요양병원 등 시설학대, 간병인 및 자녀의 경제적 학대 등)(김지영, 2023.6.2.).

1. 전반적 고령 범죄피해 대응방안

가. 효과적인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관련 법제 정비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인권법 등으로 인해 고령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 제도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공급자 중심의 산재된 범죄피해 보호 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일괄 접수하여 맞춤형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통합지원체계의 방향성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질적연구 과정에서 통합지원체계는 부처 간의 업무 칸막이 또는 이권을 넘어서서 법령에 의해 많은 부분이 막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계된 서비스 기관별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상과 니즈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본인의 동의를 기관별로 다시 받아야 하는 과정 등은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데 큰 제약요인이 되며 범죄피해 보호 관련 인력이 부족한 기관 현실에서 행정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도 유발하는 사안이다. 범죄피해는 다양한 영역에 이르며, 이러한 피해 복구는 개별 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관 간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나. 종사자 대상 고령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보편적 교육 제공

범죄 피해 보호 지원 관련 업무 담당자는 사전예방적으로 현장에서 고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자가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식 제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 제5장의 질적 분석 과정에서도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인식 전

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위해 경찰청, 범죄피해지원센터 등 범죄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종사자 대상으로 고령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보호 지원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 요구된다. 이때 종사자 교육은 고령자에 대한 신체적 및 인지적 특성 등 기초적인 이해를 포함하며, 고령자 관련 범죄 위험과 빈도가 높은 범죄피해 유형, 고령자에 대한 배려 필요 지점과 연계서비스 등 업무와 직접 관련성 높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지역 경찰서에 학대예방경찰관을 배치하고, 노인, 아동 등 대상별로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아직까지 고령자에 대한 범죄피해를 다루는 비중이 낮아 고령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 추진 과정에서 노인 대상 전문기관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기관 종사자 간의 노인의 범죄피해, 가령 성폭력이나 주거침입, 실화 등에 대한 이해 차이가 매우 큰 점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수사기관에서 종사자 대상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피해 고령층을 대면할 가능성이 있는 노인복지기관에서도 종사자 대상 고령자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제공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들 노인복지기관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므로, 일반적인 범죄 수사기관이나 범죄피해지원센터 종사자 대상의 교육 제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해외 사례로 미국 일리노이주 검찰청을 참조할 만한다. 모든 법 집행관을 대상으로 고령자 대상 수사관 훈련 프로그램(Elderly

Service Officer Training Program, ESO)을 통해 노인학대, 노인범죄, 노인과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소통, 요양원 문제 등의 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ESO를 이수한 경찰관이 지역 내 법 집행 관련 기관이나 노인 관련 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승현 외, 2017, p.188).

다. 법률, 심리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25%로 소득요건이 높아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령층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연구의 제6장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법률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에 대한 고령 범죄피해자의 수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표적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는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 심리정서 치료, 법률서비스 등 모두 지역 내 다른 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다수라는 점에서 서비스 운영상의 제약이 크다고 느끼고 있었다. 치매안심센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기관 목적에 충실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용 고령층에서는 범죄피해로 인한 지원 과정에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기관의 상당수는 자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담인력이 아니기에 실제 고령 범죄피해자 개개인의 재판과 소송 관련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내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고령 범죄피해자들이 좀 더 손쉽게 원하는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고령층 주거 개선 지원

제3장의 양적 분석결과, 주거침입이 고령층의 범죄피해 유형 상위(여성 7위, 남성 9위)로 나타났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노후하고 방법장치가 미흡한 주택에 거주하며 범죄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 1인 노인 가구의 경우 복지 차원의 주거개선 지원 시 도배, 장판, 안전바 설치와 함께 방법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 나아가 고령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을 주거위생 및 노후상태, 고령 친화성 제고 이외에도 범죄예방 환경을 포함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주거의 범위에는 주택 이외에도 지역사회 치안을 포함하여,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65%만이 지역사회의 치안·교통안전에 만족하고 있어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노인의 치안·교통안전 욕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윤경 외, 2020, p.568).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셉티드(CPTED)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셉티드 사업 내용은 지역별 범죄위험도를 분석하고 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되면 범죄 취약 요소 진단과 치안정책 연계 등을 추진한다. 셉티드 사업의 사례로는 2021~2022년 노후·저층 주택 밀집지로 절도 및 경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높은 지역에 기초지자체의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방법시설 설치, 건물 도색 등을 수행하였으며, 범죄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다(경찰청, 2023, p.142).

이와 같이 주거 개선 등 고령층 대상 주거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범죄피해를 예방한 안전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 사회복지정책 연계 고령자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고령인구 스스로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변화하는 범죄 수법이나 유형, 법 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은 돌봄서비스,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신청, 치매 조기검진 실시 등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정책 수혜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면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방문건강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등의 종사자 교육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포함하여 고령자의 범죄 예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활지원사와 방문요양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며, 독거노인 대상 범죄피해 예방에 관해 반복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이들 종사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자 범죄피해 예방 교육에는 범죄피해 신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데이트폭력, 성폭력, 학대 등 최근 변화하는 범죄유형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청장년 시절에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던 행동들도 사회변화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 법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승현 외(2017)에 따르면 독일의 사례와 같이 생애주기 특성상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배타적인 고령층의 경우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고령인구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은 고령층의 눈높이에 맞춰 고령층이 직면하기 쉬운 범죄피해 분야의 이슈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보이스피싱, 잘못된 인터넷 정보를 통한 사기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범죄피해뿐 아니라 범죄가해로도 이어지지 않도록 실용성 높은 내용을 교육에 담을 필요가 있다.

바. 고령 범죄피해 관련 체계적인 통계생산 및 관리

고령 범죄피해에 대응한 정책적 대응 기반의 일환으로 고령 범죄피해와 관련한 체계적인 통계생산 및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종합적이고 공식적인 통계수치를 구축하고 않고 있다(이승현 외, 2017). 단지 노인학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전문보호기관의 현황보고서를 통해 범죄피해 실태를 매년 생산 및 관리하고 있을 뿐이며, 이 통계도 경찰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노인학대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의 심층면접조사 과정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청에서 생산하는 노인학대 피해 유형 순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죄피해 유형은 보고 과정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 중 1개의 범죄피해를 선정하여 시스템상에서 사전에 분류된 유형에 기록하게 되는데, 이러한 범죄피해의 선정이나 분류 방식이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자 범죄피해에 관한 통계는 연령별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범죄 관련 공식통계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집단을 정의하여 전체적인 수준에서 고령자 범죄피해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고령자 집단 내의 연령에 따른 다양성, 차이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최수형·박미랑, 2021, p.261) 연령 세분화된 통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고령인구의 집계를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실제 고령인구 규모와 전체 인구 대비 구성비 등의 주요 지표에 대해 70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 85세 이상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2. 이슈별 범죄피해 대응방안

가. 노인학대

1) 범죄피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쉼터 서비스의 다양화

쉼터는 고령 범죄피해자의 건강수준, 경제활동 여부, 반려동물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양화된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연구의 질적 연구에 따르면 쉼터 자체의 수가 적어 연계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쉼터는 건강한 고령층만 입소 가능한 상황이라 요보호 고령층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 내 폭력, 신체적 학대의 경우 고령층의 건강수준을 더욱 악화시키며 다른 연령대보다 회복이 더디거나 회복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즉시 분리가 필요한 학대 피해 고령자의 건강수준에 맞춘 쉼터 입소가 가능하도록 시급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쉼터는 대부분 다인실로 운영되어, 갑자기 단체생활을 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의 제약-경제활동 중단, 수면시간 및 활동시간대 차이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죄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가 충분히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개인실로 운영하고, 보호 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같이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생활패턴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가 요구된다.

최근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며, 반려동물을 반려가족으로 바라보려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 추세

에 맞춰 범죄피해자는 반려가족과 함께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2) 노인학대 행위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정비

노인의 학대나 범죄피해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학대 행위자의 동의 없이도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정확한 처방과 그에 따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노인학대는 재발 위험이 높으며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행동 변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중요성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 데에서도 볼 수 있다(제39조의 16).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정신질환이 있는 노인학대 행위자의 상담이나 교육 제공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을 학대하는 성인 자녀의 경우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지만, 성인 자녀의 동의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하여 학대 행위를 막도록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과거 정신질환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인권침해가 심하였던 부분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적 대응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학대하는 행위 등 중한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의 판단만으로도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법령 정비 역시 고려되어야 하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건강 등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사항 역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이러한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예외사항으로 학대 행

위자 등에 대해 특정한 서비스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기관 간 적극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요양병원의 시설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노인의 학대나 범죄피해 등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장소에 상관없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처방, 그에 따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요양병원에서 시설 학대 신고가 있더라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요양시설의 경우 최근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은 이 역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요양병원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한계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요양병원 이외의 의료시설에서도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의 개정, CCTV 설치의 의무화, 의료인 및 간병인 등의 학대 신고 의무화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의 장기이용이 높은 요양병원의 경우 시설 학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양시설뿐 아니라 의료시설 관련 소관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의 종류에 상관없이 고령자의 이용이 높은 곳은 요양기관(요양시설, 요양병원)의 시설 학대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식화할 수 있어야 한다.

4) 가족센터의 역할 확대를 통한 노인학대 예방 가족 프로그램 제공

가족센터는 가족의 평등과 행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설치되어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센터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관계 향상, 의사소통방법, 역할 지원 등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며, 가족원 간의 갈등이나 불화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취약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가족센터, 2024).

즉 가족센터는 가정 내 양성 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젊은 부부의 남성 육아와 가사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비고령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인구고령화 시대에 노인부부 및 노인독거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센터는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족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노인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인식이 강한 고령층의 인식을 전환하여 가정 내 폭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고령가구에 특화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노인학대처벌 특별법 도입을 통한 처벌 규정 강화⁴⁴⁾

독일은 형법으로 피보호자에 대한 학대죄를 두고(제225조)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피보호자를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경우 또는 자신의 보호의

44) 이승현 외(2017), pp.194-195.

무를 악의적으로 태만히 하여 피보호자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자학대방지법을 개별법으로 제정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해결과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의 목적이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동법 제1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노인학대를 부분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독일 및 일본과 비교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범죄피해 대응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특히 이 연구의 전문가 자문 결과, 2000년대 초 노인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며 이를 노인복지법에 포함하는 개정과정에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 관련 부분에서 학대를 규율하고 있으며 금지행위 및 실종과 같이 동질성 없는 규정들과 혼재되어 있는 문제, 교육 관련 규정들의 비일관성과 미흡, 신속 대응 및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요 장치-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사건으로의 전환-의 미구비 등으로 (장민영, 2023, p.186)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위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 학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개별법으로 제정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법도 국내 아동학대 관련 법이나 일본의 개별법과 같이 ‘(가칭)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개입 절차와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1) 피싱 사기에 대한 고령층의 인식 전환을 통한 신고율 제고

고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범죄피해 신고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심혜인, 2022). 이 연구 추진과정에서 진행한 심층면접조사에서도 고령층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범죄를 당한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어리석음과 부주의로 피해를 당했다는 질책을 듣게 될까 봐 신고를 꺼리며, 특히 자녀들로부터 질책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않고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신고를 통해서도 보상받기 어렵기에, 피해 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는 것뿐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의 신고는 범주가해자의 검거 및 범죄피해 유형에 대한 파악 등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의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범죄피해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에 공식적인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야 범죄피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 범죄피해 유형을 신속히 파악하여 이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령층의 범죄피해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의 범죄피해는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2) 디지털 환경 노출에 따른 다양한 피싱 유형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과거 고령층에 비해 교육수준 및 정보역량이 높은 신고령층 역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령층 내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양상의 차이가 있어서, 70대 이상 고령층은 전통적인 방식의 기관 사칭이나 자녀사칭 등 전화 통화로 현금을 편취당하며, 50~60대의 고령층은 이들보다 디지털기기 사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스마트폰의 문자나 SNS의 링크 등을 이용하는 스미싱⁴⁵⁾ 피해를 본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얻어 돈을 송금하게 하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로맨스 스캠은 아직 비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지만(나무위키, 2024), 고령층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지능화된 보이스피싱은 새롭게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이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양한 피싱 사기에 대한 정보제공과 범죄피해 예방에 대한 안내가 우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보이스피싱 예방사업의 고령친화성 제고

모든 범죄는 피해를 입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고령층 대상의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피해 예방 이외에는 정책적 접근이 제한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 사기는 현재 피해예방 차원에서만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45)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해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커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깔리게 되고 해커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하여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소액결제 등을 통해 돈을 빼간다(네이버 지식백과, 2024).

온라인 및 ATM, 대면 금융거래 시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범죄피해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방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고령층의 눈높이에 맞춰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령층의 재산범죄, 특히 보이스피싱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고령층의 상담 문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예방사업은 고령자의 관점에서 보다 접근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가령 교육 장소나 방식의 경우, 고령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 및 민간시설, 고령층이 이용하는 여가 및 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고령층의 이용률이 높은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평생교육센터 등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가상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방법에 대한 공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방법에 대해 신속하게 교육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4) 사기범죄의 처벌 강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예방

보이스피싱은 범죄피해 유형 중 재산범죄, 세부 분류로는 사기범죄에 해당한다. 한국은 ‘사기 공화국’, ‘사기꾼 직업’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기범죄가 많이 발생하며, 관련 법과 제도가 사기범죄에 관대한 편이다. 우리나라 양형 기준에 의하면 사기범죄는 징역 1~4년, 300억 이상의 큰 규모의 사기라 하더라도 징역 6~10년으로 처벌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마저도 감형되는 경우가 많고 초범인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범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있다(KBS 뉴스, 2023.10.31.).

KBS 뉴스에 출연한 변호사가 “사기를 치면 무조건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사기를 친 돈을 차명으로 다 돌려놓거든요. 너무 형량이 약한 거예요”라고 말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며, “사기는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니 죄질이 더 나쁘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KBS 뉴스, 2023.10.31.). 따라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기범죄의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법개정과 함께 현장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어 자료〉

- 가족센터. (2024).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296C297/contents.do>에서 2024.1.30. 인출.
- 강은영. (2023.6.9.).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과 제도. 내부자료.
- 강지현. (2017).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가구 유형별 범죄피해 영향요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8(2), 287-320.
- 경찰청. (2022). 2022 경찰백서.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113&q_searchKeyTy=estnColumn1___1001&q_searchVal=2022에서 2023.8.17. 인출.
- 경찰청. (2023). 2023 경찰백서.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113에서 2024.3.13. 인출.
- 고제원. (2017). 노인범죄 피해 실태. *사법행정*, 58(4), 26-33.
- 곽대경, 송일호. (2012). 노인의 범죄 두려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취약성 가설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5), 181-204.
- 구자숙, 이현희, 원영희, 전영실. (2003). 노인의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사정책연구*, 14(3), 141-173.
- 국가통계포털. (2023). 범죄안전-범죄통계분석-피해자 특성 및 피해결과-피해자 특성-피해자 성별연령.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법률 제193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906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3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92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법률 제194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법률 제190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보호법 [법률 제1458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98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73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4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사업법 [법률 제195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매관리법 [법률 제193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법률 제144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법률 제19582호].

국가지표체계. (2023). 범죄피해두려움.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2&idxCd=4264>에서 2023.5.3. 인출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총괄팀. (2023.4.21.).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27319&menuNo=200218>에서 2023.8.9. 인출.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2024). <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에서 2024.1.15. 인출.

금융위원회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단. (2023.2.28.).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당정협의회 관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79511>에서 2023.8.9. 인출.

김도원, 변재욱. (2021). 외국인 유입과 범죄 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의 13

- 개 광역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69(4), 185-232.
- 김병완. (2021). 한국의 경제범죄에 관한 실증분석: 소득불평등과 노인피해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DIKO0015810401>에서 2023.5.3. 인출.
- 김일중, 변재욱. (2012). 한국의 법집행 및 노동시장 특성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국제경제연구, 18(4), 55-89.
- 김재민. (2021). 피해자학. 서울:박영사.
- 김지영. (2005). 세대간 갈등과 노인학대.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188.
- 김지영. (2023.6.2.). 노인의 범죄 피해와 피해자지원에 관한 고찰. 내부자료.
- 김지영, 박형민. (2009). 강력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피해실태 사례연구. 법무부 인권국.
- 김지영, 황지태, 이태일, 염운호, 윤상연. (2020).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V)-도서산간 및 농어촌지역 안전실태와 개선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42.
- 나무위키. (2023). '강력범죄'. <https://namu.wiki/w/%EA%B0%95%EB%A0%A5%EB%B2%94%EC%A3%84>에서 2023.11.11. 인출.
- 나무위키. (2024). '로맨스 스캠'. <https://namu.wiki/w/%EB%A1%9C%EB%A7%A8%EC%8A%A4%20%EC%8A%A4%EC%BA%A0>에서 2024.1.12. 인출.
- 네이버 지식백과. (2023). '범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0767&cid=47333&categoryId=47333>에서 2023.11.11. 인출.
- 네이버 지식백과. (2024). '스미싱'.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43394&cid=43667&categoryId=43667>에서 2024.1.12. 인출.
-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 <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에서 2023.8.31. 인출.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2024). 성년후견제도. <https://www.scourt.go.kr>

- /nm/min_3/min_3_12/index.html에서 2024.1.2. 인출
- 대한민국정부. (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박강우. (2017). 노인범죄와 노인의 범죄피해, 범죄 두려움에 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25(3), 5-29.
- 박형민, 김연수, 유효은. (2019). 고령 범죄자의 범죄경력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민, 최수형, 김남희, 이선형, 조제성. (2021).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분석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부 (2023).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안내. <http://www.moj.go.kr/cvs/2698/subview.do>에서 2023.8.15. 인출.
- 법무부 인권구조과. (2021).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https://www.moj.go.kr/moj/41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Y0JTJGNTYxMDUzJTJGYXJ0Y2xWaWV3LmRvJTNG>에서 2023.3.15. 인출.
- 법무부 인권구조과. (2022.3.3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이제 한 번의 신청으로!.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jsessionid=gAJbtwR1I9nI3KVX9DaIe6V-grqpbRIfabNNqBXi.wizard-15-8hp5d?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U3NzMwJTJGYXJ0Y2xWaWV3LmRvJTNG>에서 2023.8.16. 인출.
- 법무연수원. (2023). 2022 범죄백서. <https://www.ioj.go.kr/homepage/information/DataAction.do?method=view>에서 2023.7.12. 인출.
-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각 연도.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②.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3).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 성용은. (2018). 한국 노인 범죄피해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8(1), 41-64.
- 심혜인. (2022). 노인의 범죄피해 예측요인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8(1), 69-

86.

우선희. (2018). 범죄 피해 불안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유럽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8(7), 66-80.

위키백과. (2023). '강력범죄'. <https://ko.wikipedia.org/wiki/%EA%B0%95%EB%A0%A5%EB%B2%94%EC%A3%84>에서 2023.11.11. 인출.

윤정숙, 조제성, 성유리, 최수형, 배상균, 조성현, ..., 탁희성. (202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승현, 권수진, 김재현, 이정주, 이인상. (2017). 노인관련 범죄 예방, 단속 및 형사처벌 등에 관한 연구-미국, 독일, 일본 등 고령화 선진국의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지은. (2020). 공공후견과 후견법인의 역할. 법학논총, 47, 293-326.

장민영. (2023). 노인인권규범 형성에 따른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II. 한국법제연구원.

장준오, 유홍준, 정태인, 이완수, 노용준. (2008).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2.

정경희. (2015). 노년기 독거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전략. 보건복지 Issue & Focus, 300, 1-8.

정열. (2022.1.20.). 노인학대·간병살인 증가하는 일본... '한국 등 아시아의 미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9085100501>에서 2023.3.14. 인출.

정주호. (2020). 피해자학-범죄의 조치과정을 유형별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 경기:백산출판사.

제철웅, 김원태, 이용표, 이세희. (2016). 후견법인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제안: 후견제도 운영 주체로 설정할 필요성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30(1), 173-218.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4). <https://noinboho1389.or.kr/>에서 2024.1.1

5. 인출.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4). '노인학대 유형'. <https://noinboho1389.or.kr/child/sub/about/definition.php>에서 2024.1.15. 인출.
- 중앙치매센터. (2022). 대한민국치매현황 2021. 서울:중앙치매센터.
- 최수형, 박미랑. (2021). 고령자의 교통범죄예방을 위한실태조사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치매안심센터. (2024). 치매공공후견사업. https://ansim.nid.or.kr/introduce/custodian_service.aspx에서 2024.1.15. 인출.
-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2022.9.29.). 2022 고령자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20896에서 2023.8.21. 인출.
-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2022.11.16.). 2022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300&bid=219&act=view&list_no=421772에서 2023.8.21. 인출.
- 통계청. (2023a).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onn_path=I2에서 2023.8.3. 인출.
- 통계청. (2023b). e-지방지표. <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index/index.do>에서 2023.8.3. 인출.
- 통계청. (2023c).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A01&conn_path=I2에서 2023.8.3. 인출.
- 통계청. (2023d). 경찰청범죄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TX_132_2009_H1033&conn_path=I2에서 2023.8.3. 인출.
- 통계청. (2023e).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4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

- tisticsListIndex.do에서 2023.7.3. 인출.
- 통계청. (2023f). 범죄분석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conn_path=I2에서 2023.8.3. 인출.
- 통계청. (2023.3.23.), 2022 한국의 사회지표.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500&bid=10820&act=view&list_no=424445&tag=&nPage=1&ref_bid=에서 2023.8.21. 인출.
- 통계청. (2024).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6&conn_path=I2에서 2024.1.15. 인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 허경미. (2004).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432-452.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54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각하].
- 황남희. (2021). 노인의 경제활동과 경제 수준. *보건복지포럼*, 2021(10), 7-21.
- Daigle, L. E. (2022). 피해자학. 이민식(역), 서울: ㈜박영사.
- KBS 뉴스. (2023.10.31.) [뉴스 더하기] “사기 치면 무조건 이익?” …하루 평균 ‘사기 900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6530>에서 2023.11.9. 인출.

〈영어 자료〉

- Akers, R. L., La Greca, A. J., Sellers, C., & Cochran, J. (1987). Fear of crime and victimization among the elderly in different types of communities. *Criminology*, 25(3): 487-506.
- Bursik, R. & Grasmick, H.G. (1992). Longitudinal neighborhood profiles in delinquency: The decomposition of chang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8: 247-263.
- Cohen, L. E.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 A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 Cohen, L. E., Kluegel, J. R., & Land, K. C. (1981). Social inequality and predatory criminal victimization: An exposition and test of a formal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505-524.
- Gay, M. J., Holton, C., & Thomas, M. S. (1975). Helping the victim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19(3): 263-269.
- OECD. (2023). Historical population. <https://stats.oecd.org/>에서 2023. 8.3. 인출.
- Sampson, R. J. & Groves, W. B.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774-802.



[부록 1] 심층면접조사표

1. 도입

○ 연구진 소개

- 기관 및 참여 연구진 소개

○ 면접 취지 및 참여동의 안내

- 참여 동의서 안내 및 서명 접수(이메일, 현장)

○ 인터뷰 진행 설명

- 최근 우리나라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현상과 특성은 어떠하며, 이들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의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여쭙보려고 합니다.
-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 범죄피해 보호 지원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보려고 합니다.
- 맞다 틀리다의 정답이 없는 내용이므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참석자 소개

- 참석자분의 성함, 소속기관, 주요 업무와 경력 등 자기소개를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2.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현황

-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현황은 어떠합니까?
 - 범죄 유형, 규모, 피해 수준(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등
 - 전체 범죄피해 중 고령자의 비중, 고령 범죄피해자의 특성 등
- 선생님께서 직접 하시는 업무는 아니지만, 소속기관이나 관련 업계에서의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현황은 어떠합니까?

○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의 최근 특성

- 최근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의 특징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 직접 업무 관련, 간접적 경험이나 인지,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 등

3.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보호 지원

○ 고령 범죄피해 보호 지원의 우선순위

- 최근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을 고려할 경우, 고령 범죄피해자에게 어떠한 보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요?

○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보호 지원 실태

- 선생님이 소속한 기관에서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보호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일반적인 보호 지원 내용
 -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지원 내용

- 다른 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떤 기관/서비스가 연계되고 있는지와 그 연계 절차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기관별/서비스별
- 연계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4.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보호 지원 개선

○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보호 지원의 문제점

-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보호 지원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까요?
- 일반적인 보호 지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인지?
- 고령 범죄피해자이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인지?
- 선생님께서 직접 하시는 업무는 아니지만, 소속기관이나 관련 업체에서의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보호 지원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까요?
- 일반적인 보호 지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인지?
- 고령 범죄피해자이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인지?

○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보호 지원의 개선 방안

- 앞에서 말씀해주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 직접 업무, 업계 인식 등
- 이러한 해결방안이 실제 제도/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개선 시기(단기/중장기), 관련 부처/추진체계, 예산 등

5. 마무리

- 지금까지 선생님이 하시는 범죄피해 보호 지원 관련 업무에서 고령자에 관한 현황, 문제점,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은 있으신가요?